

행정대학원 요람

2015~2016



Chung-Ang University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 목 차 ❧

중앙대학교

▶ 교 가	3
▶ 교 훈	4
▶ 교육이념	4
▶ 교 목	4
▶ 상 징 물	5
▶ 교육목적	5
▶ 비전 및 발전 목표	6
▶ UI	6
▶ 연 혁	8
▶ 역대 총장, 이사장	20
▶ 조 직 도	21
▶ 학 칙	22

행정대학원

1. 교육목적	91
2. 연 혁	91
3. 역대 원장	92
4. 행정기구	93
5. 교 수 진	94
6. 교과과정	95

▶ 특수대학원 학사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제1장 총 칙	111
제2장 입 학	112
제1절 신입학	112
제2절 편입학	113
제3절 연구생	113
제4절 외국인 학생	114
제5절 입학허가 및 취소	114
제3장 등 록	114
제4장 학적 변동	115
제5장 수업·장학	116
제6장 학위수여	117
제7장 석사학위 청구논문	118
제1절 논문 제출 자격시험	118
제2절 논문지도	119
제3절 논문 심사	119
제8장 연구 보고서	122
제9장 보 칙	122

부 록

▶ 각종 서식	127
▶ 자격증 이수안내	142
▶ 최근 3년간 석사학위 논문목록	144
▶ 학위논문 작성·제책 지침	149
▶ 원우회 구성	163
▶ 원우회 회칙	164
▶ 중앙도서관 이용안내	170
▶ 행정부서 및 교내복지시설 이용안내	189

● ● ● ● ● 중 앙 대 학 교

- ▶ 교 가
- ▶ 교 훈
- ▶ 교육이념
- ▶ 교 목
- ▶ 상징물
- ▶ 교육목적
- ▶ 교육목표
- ▶ 구체적인 교육목표 구현사항
- ▶ UI
- ▶ 교육헌장
- ▶ 약사
- ▶ 역대 교장, 학장, 총장, 이사장
- ▶ 기구표
- ▶ 학 칙



교가 (University Song)

김태오 작사
나운영 작곡

보통빠르기로

남 산 이 영 을 넘 어 바 라 보 이 고
삼 천 리 강 산 에 꽃 을 피 우 려

뒤 로 는 관 악 산 이 높 이 솟 았 네 한
군 세 고 지 혜 록 게 모 여 들 었 네 진

강 수 구 비 치 는 노 들 의 강 - 변 명 수
선 미 거 룡 한 밤 길 러 온 정 - 성 힘 차

대 송 림 속 에 우 뚝 선 중 앙
게 나 라 위 해 몸 바 친 중 앙

의 에 죽 고 참 에 살 이 모 교 의 정 신 세

계 - 에 빛 내 세 우 리 중 앙 대 학 교

교훈 (University Motto)

의에 죽고 참에 살자
Die in Honor, Live for Truth

교육이념 (Educational Philosophy)



중앙대학교는 의와 참의 정신을 대학의 교육이념으로 한다.
의와 참의 정신은 중앙대학교 교육목적과 목표의 원천으로서 진리를 탐구하고 실천적 참여봉사를 통해 사회정의를 구현하고 나아가 국가와 인류공영에 기여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교목 (School Tree)

느릅 나무 (Elm)



느릅나무가 본교의 교목으로 지정된 사연을 살펴보면 193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중앙대학교 흑석동 캠퍼스 최초 건물인 영신관이 준공되자, 고임영신 박사는 교직원들과 더불어 수십 그루의 느릅나무를 영신관 주변에 심었다고 한다. 그 후 느릅나무의 성장은 곧 중앙대학교의 역사 발전을 상징하게 되었는데, 1970년대 들어 교육부의 각 대학상

징물 지정을 계기로 교목(校木)으로 확정하였다. 그러나 불행히도 느릅나무들은 캠퍼스 도로확장과 각종 시설물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당부분 훼손되었고, 지금은 단지 몇 그루만이 남아 고풍스러운 영신관과 함께 자리를 지키고 있다.

상징물 University Identity (UI)



청룡상은 용이 축복을 받으며 지구를 감싸고 승천하여 외기권을 향한 우주에의 달관을 뜻하고 있다. 신성, 위엄, 번영의 상징인 청룡은 대학의 신성성과 권위 및 자유를 나타내며 중앙대학교의 영원무궁한 번영을 뜻한다. 또한 청룡상의 각 부분은 우주개척이라는 원대한 이상, 진리탐구와 수업연마, 학교발전과 번영의 원천을 뜻한다.

중앙대학교 교육 목적

중앙대학교는 의와 참의 정신을 바탕으로 사회지도자로서 갖추어야 할 교양과 국가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적 지식을 기르고, 민족과 인류공영에 기여할 수 있는 열린 세계관을 지닌 인재 양성을 교육목적으로 한다. 이와 같은 교육 목적을 구현하기 위해 5가지 인재상인 자율적 교양인, 실용적 전문인, 실험적 창조인, 실천적 봉사인, 개방적 문화인을 교육목표를 구체화 하였다.



비전 및 발전 목표

CAU2018+ Framework



1

중앙대학교 UI

UI 해설



중앙대학교는 대학의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하고 발전 지향적인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 10개월여의 산고 끝에 2002년 10월 11일 개교 84주년에 새로운 UI (University Identity)를 선포했다. 새로 제정된 중앙대학교의 UI는 세계화·국제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써 영문 워드

마크(Word Mark)를 도입하였다.

중앙대학교 인터넷 도메인(cau.ac.kr)이자 영문이니셜인 CAU를 붓 터치 느낌으로 표현하여 중앙대학교의 젊은 패기를 강조하였고, 새로운 도약을 역동적으로 구현했다.

CAU BLUE	Pantone : 2945C Process Color : Cyan 90% + Magenta 50% RGB : R33%+G85%+B164%
CAU RED	Pantone : 032C Process Color : Magenta 100% + Yellow 100% RGB : R 255%
CAU GRAY	Pantone : Pantone Cool Gray 7C Process Color : Black 55% RGB : R127%+G127%+B127%

1) Red Square

진리를 탐구하며 미래로 나아가는 창 의 모습을 형상화하여 앞으로 뻗어가는 중앙대학교의 활기찬 기상과 냉철한 탐구정신을 표현하였고, 기본 컬러인 블루(Blue)와의 색상 대비로 강한 시각적 임팩트와 첨단적인 느낌을 주고 있다.

2) Blue Color

중앙대학교 캠퍼스 앞을 유유히 흐르는 한강의 넓은 이성과 푸르름을 느끼게 하고 중앙대의 힘차고 진취적인 이미지를 생동감 있게 나타내고 있으며, 세계 수준의 명문대학을 지향하는 중앙대학교의 의지를 담았다.

3) Logo Type

중앙대학교의 고유한 서체로서 중앙대학교만의 표기를 위하여 특별히 디자인되었다. 간결하고 안정된 서체는 중앙대학교의 전문성과 믿음을 상징하고 있으며, 그레이(Gray)컬러를 사용하여 현대적이고 세련된 느낌이 들도록 하였다. 전체적으로 CAU 워드마크와의 통일성과 조합성을 고려하여 균형을 이루도록 표현하였다.

중앙대학교 연혁



창학기
1918~

“새로운 교육의 모색과 중앙의 철학”

- 1916. 정동교회 유치원 분원, 중앙교회 설립
- 1918. 4 중앙교회에 중앙유치원 설립
- 1922. 9 중앙유치원에 유치사범과 설치
- 1928. 9 중앙유치사범과가 중앙보육학교로 승격



시련기
1933~

“발전과 탄압의 시련”

- 1933. 4 임영신 박사 설립자 겸 교장 취임(현재의 중앙대학교 자리로 이전)
- 1938. 4 영신관 준공 : 최초의 신축건물
- 1940. 지원병제도 창설, 조선어과 폐지
- 1944. 신입생 소집불가, 학교폐쇄
- 1945. 9 중앙보육학교를 중앙여자전문학교로 개편



- 1946. 3 사범대학 신설 결정
- 1947. 4 중앙여자대학으로 승격, 학장에 임영신 박사 취임
- 1948. 5 남녀공학의 중앙대학으로 개편
- 1950. 9 제1회 학사학위 수여식, 전쟁중 재등록 실시
- 1951. 1 부산에 중앙대 임시사무소 설치 : 전시연합대학, 중앙대 단독개강
: 송도
- 1953. 2 종합대학교로 승격, 문리 · 법정 · 경상 · 약학대학 설치, 총장에 임영신 박사
취임, 대학원 설립인가
- 1954. 9 제1회 석사학위 수여식



- 1956. 4 파이프홀 준공
- 1959.10 중앙도서관 개관

- 1961. 7 진선관 및 대학극장 준공
- 1961.10 사회과학관 준공, 제2대 총장에 임성희 박사 취임
- 1963. 3 제1회 박사학위 수여식
- 1963. 5 제3대 총장에 임영신 박사 취임
- 1965. 1 문리과대학을 문과 · 이공 · 사범대학으로 개편 : 6개 대학으로 증설,
사범대학에 부속유치원, 초등학교, 남녀중 · 고등학교 설치
- 1967. 2 사회개발대학원 설치
- 1968.10 승당관 건립, 청룡상 건립
- 1968.12 농과 · 경영대학 증설 : 8개 대학이 됨
- 1969. 봄스트홀 준공
- 1970.12 의과대학 신설, 필동소재 성심병원 흡수
- 1972. 5 제4대 총장에 임철순 박사 취임
- 1972. 6 학교법인 서라벌예술학원 인수
- 1972.10 진선관 증축, 서라벌홀 준공
- 1972.12 문과 · 이공대학을 문리과 · 공과대학으로 개편
- 1974. 1 서라벌예술대학을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으로 개편
: 10개 단과 대학
- 1974. 4 자연과학관 준공
- 1976.12 학생회관 준공
- 1977. 2 설립자 임영신 박사 별세
- 1978. 6 의과대학 부속 성심병원 준공
- 1978.10 중앙대학교 60年史 발간, 2부대학 병설
- 1978.11 국제경영대학원 설치
- 1979. 1 안성교사 설치 인가
- 1979.12 교육대학원 설치



- 1980. 5 안성교사에 1차 교사동, 1차 기숙사, 학생회관 준공
- 1980. 5 임철순 총장 퇴임, 이석희 박사 총장 취임
- 1980. 9 이석희 박사 제5대 총장에 정식 취임
- 1980.11 신문방송대학원 설치
- 1980.12 안성교사 2차 기숙사 준공, 의과대학부속 필동병원에 별관 증축
- 1981. 4 안성교사 대운동장 증축
- 1981. 6 안성교사 2차 교사동 준공
- 1981.10 안성교사에 외국어·사회과학·가정대학 설치, 안성교사 제2차 학생회관 준공
- 1982. 3 본교를 제1캠퍼스로, 안성교사를 제2캠퍼스로 명명
- 1982.10 예술대학 음악과를 음악대학으로 개편
- 1982.11 제2캠퍼스 교수연구동·농대실험동 준공
- 1982.12 제2캠퍼스 예술대학 신축건물 준공
- 1983. 5 제2캠퍼스 체육관 준공
- 1983. 8 제2캠퍼스 음악대학 강의동, 강당, 야외수영장 준공
- 1983. 9 농과대학을 산업대학으로 명칭 변경, 건설대학원 설치
- 1984.10 제2캠퍼스에 건설대학 설치
- 1984.12 제2캠퍼스 음악대학건물 증축, 3차 교사동 준공
- 1985. 3 제6대 총장에 문병집 박사 취임
- 1986. 5 승당 임영신 박사 문집 출간



- 1987. 9 김희수 이사장 학교법인 인수
- 1987.10 제8대 김희수 이사장 취임, 제7대 총장에 이재철 교수 취임
- 1988.10 개교 70주년 기념식 거행
- 1988.11 행정대학원 설치
- 1989. 2 제8대 총장으로 하경근 박사 취임, 제2캠퍼스 도서관 준공
- 1989. 5 제1캠퍼스 종합구기장 준공
- 1989. 9 서라벌홀 증축
- 1989.11 제2캠퍼스에 산업기술경영대학원 설치, 공과대학(보스트홀) 건물 증축



- 1990. 4 법과대학 신축건물 준공
- 1990. 7 제2캠퍼스 학생회관 신축건물 준공
- 1991. 2 법인명칭 "학교법인 중앙문화학원"을 "학교법인 중앙대학교"로 변경

- 1991. 4 대학원 신축건물 준공, 동양서 개가식 열람실 개관, 생활관 명덕 3동 신축 개관
- 1991. 5 전산센터 신축건물 준공. IBM 3090 슈퍼컴퓨터 설치
- 1991.10 경영대학 신축건물 준공, 산업대학 실험동 준공, 건설대학 신축건물 준공, 제2캠퍼스 교수회관 B동 준공, 정보산업대학원 설치
- 1992. 6 김민하 교수 총장직무대행 취임
- 1992. 8 예술대학 건물 증축
- 1992.10 '92축전 범중앙인한마당 개최 : 서울올림픽 주경기장
- 1993. 2 제9대 총장에 김민하 박사 취임
- 1993. 2 사범대학 부속중·고등학교 이전 인가
- 1993. 3 의과대학 부속 필동병원 증축
- 1993. 7 제2캠퍼스 학생복지관 신축건물 준공
- 1993. 8 대학장단기발전계획(1993-2002) 발표
- 1994.11 의약식품관리대학원 설치
- 1995. 3 수림과학관(이과대학) 신축건물 준공
- 1995. 4 제1캠퍼스 여학생기숙사 완공
- 1995. 8 공과대학(봄스트홀) 건물 증축
- 1995.10 이과대학을 자연과학대학으로 명칭 변경, 산업기술경영대학원을 산업경영대학원으로 명칭 변경, 예술대학원 설치
- 1995.12 전산센터 증축
- 1996. 1 제2캠퍼스 교문 준공
- 1996. 3 학부제 및 최소전공인정학점제 시행
- 1996.10 제1캠퍼스 학생복지관 준공, 제2캠퍼스 본관 준공
- 1996.11 각 대학원별 총정원제에서 연도별 입학정원제로 변경, 의약식품관리대학원을 의약식품대학원으로 명칭 변경, 국제대학원 설치
- 1997. 2 제10대 총장에 이종훈 박사 취임
- 1997. 3 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포이동으로 이전, 개교
- 1997. 7 정보통신문화관 개관
- 1997. 8 중앙대학교현장 발간
- 1998. 3 가정대학을 생활과학대학으로 명칭 변경, 체육과학대학 설치
- 1998. 9 사범대학부속유치원 이전, 개원, 제2캠퍼스 오수종합처리장 준공

- 1998.10 중앙대학교 80년사 발간
- 1999. 1 제2캠퍼스 대학교회 준공, 건설대학 증축, 예술대학 공연영상관 준공
- 1999. 3 산업대학을 산업과학대학으로 명칭 변경
- 1999. 8 중앙문화예술관 준공
- 1999. 9 첨단영상전문대학원 설치
- 2000. 3 국제대학원을 전문대학원으로 인가(설치)
- 2000. 5 메디칼센터 준공



- 2001. 2 제11대 총장에 박명수 박사 취임
- 2001. 3 국악대학 신설, 첨단영상전문대학원을 첨단영상대학원으로 명칭 변경
- 2001. 5 중앙대학교 장단기발전계획(Vision21) 발표
- 2001. 6 공연영상예술원 매입(동송동 소재), 법과대학 증축
- 2001. 9 수림체육관 준공
- 2002. 3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완료
- 2002. 7 제2캠퍼스 생활관 증축, 착공
- 2002. 8 제2공학관 및 창업보육센터 준공, 제1캠퍼스 교수연구동 및 체육관 신축공사 기공
- 2002. 9 중앙탑 설치 및 정문 담장 철거
- 2002.10 대학발전 세부실행계획 Dragon2018 발표, 새 UI(대학통합이미지) 제정·공포
- 2002.12 제2캠퍼스 교수원룸·선수숙소·승차장 공사 착공
- 2003. 3 국악교육대학원 설치, 교양학부 신설

- 2003. 6 국악대학 신축 기공식
- 2003. 7 대학행정서비스 헌장 제정 및 공포
- 2003.11 가칭 '사회과학관' 신축 착공
- 2004. 2 제2캠퍼스 승차장, 생활관 준공
- 2004. 3 2005년 대학종합평가인정제 준비위원회 발족
- 2004. 4 교수학습지원센터, 학생생활상담센터 확대 개편, 산학협력단 설립
- 2004. 5 제1캠퍼스 종합시설계획(master plan) 발표
- 2004. 9 특수대학원 총정원제 실시, 창업경영대학원 신설(창업컨설팅 전공, 창업경영 전공)
- 2004.10 2004년 중앙일보 대학종합평가 11위, 정보통신부 대학 IT연구센터 선정, 교수연구동 및 체육관 준공, 2004학년도 수도권 특성화 우수대학 선정
- 2004.11 중앙도서관 도서 상호대차 협약 체결(숙명여대, 숭실대), 베트남 하노이 국립대학교와 학술 교류 협정 체결
- 2004.12 법학전문대학원 설립 준비위원회 출범, 2004년 국가고객만족도(NCSI) 종합대학교 부문 4위
- 2005. 2 의과대학 흑석동 메디칼센터 개원, 제11대 박명수 총장 이임



- 2005. 2 제12대 총장에 박범훈 박사 취임, 제2캠퍼스 교수회관 3동 신축 준공, 제2캠퍼스 종합시설계획(master plan) 발표
- 2005. 4 미국 클리블랜드주립대학교와 복수 박사학위 개설, 영등포구청과 MOU 체결
- 2005. 5 2005학년도 수도권 특성화 우수대학 선정 (공연영상특성화/인적자원개발특성화)
- 2005. 6 캘리포니아주립대학교와 자매결연 협정 체결, 중앙사이버뉴스레터 창간, 진도군청과 MOU 체결

- 2005. 7 해양수산부 해운·항만 물류전문인력양성사업자 선정, 제주대학교와 학술교류 협정 체결, 슬로바키아대학교 협정 조인, 평택시청과 교류협정 조인
- 2005. 8 남부대학교와 학술교류 협정 체결, 홈네트워크연구센터(HNRC) 개소
- 2005. 9 산업경영대학원과 창업경영대학원을 산업·창업경영대학원으로 통합, 명칭 변경
- 2005.10 2005년 중앙일보 전국대학평가 종합 11위, 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육개발원·취업률 1위, 중앙대학교 장단기발전계획(CAU2018) 발표, 의과대학 증축 준공 및 청정동물실 설치, 국악대학 준공, 연구중심대학추진단 출범
- 2005.11 국방대학교와 학술교류 협정 조인, 노스캐롤라이나대학교와 자매결연 협정 조인, 미국 아이오아대학교와 자매결연 협정 조인
- 2005.12 강의시간표 전자북(e-book) 운영
- 2006. 2 2005년 제2주기 대학종합평가 최우수대학(원) 선정, 담양군청과 산학협력 조인, (주)K2바이오사이언스와 기술이전 계약 체결
- 2006. 3 글로벌인적자원개발대학원 개원(신설), 외국어대학 불어학과, 독어학과, 사회과학대학 공공정책학부 행정학전공, 건설대학 건축학부 폐지(입학정원 100명 감원), 중국 산둥대학교와 교류협정 체결, 중국 강소성 염성시와 관학협정 체결, 고려대학교와 학술교류협정 체결, 연구중심대학추진단 해단
- 2006. 4 2단계 BK21사업 1개 대형사업단, 8개 핵심사업팀 선정
- 2006. 5 CJ미디어와 산학협력 조인
- 2006. 9 전남 구례군과 관학협정 체결, 대학평의회 출범(11명)
- 2006.10 2006년 중앙일보 대학종합평가 종합 12위
- 2006.11 교육인적자원부 2006년 구조개혁 선도대학 지원사업 선정 (90.51억원 재정 지원)
- 2007. 2 한국대학신문과 클린캠퍼스 캠페인 협정 체결
- 2007. 3 경영전문대학원 개원(신설), 미디어공연영상대학(신문방송학부, 연극영화학부) 신설, 공과대학 도시공학과 신설, 국제경영대학원 폐지, 예술대학 연극학과, 영화학과, 건설대학 도시공학과, 토목공학과 폐지(입학정원 413명 감원, 2004년 대비 523명 감원), 2006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학문분야평가 '최우수' 평가(영어영문학과, 영어학과, 행정학과, 식품영양학과, 음악대학, 간호학과) 1교수 1연구조교 제도 시행, CAU선도연구단 육성사업 추진 및 상시평가체제 구축
- 2007. 4 법학관 준공
- 2007. 5 의무부총장 신설, 행정조직개편 : 팀제 전면 시행
- 2007. 6 양평군과 관학협정 체결, 대학문화바꾸기, 「행정문화 Change-Up!」 운동 실천 선포

2007. 7 덕성여자대학교와 학술교류협정 체결
- 2007.10 2007년 중앙일보 전국대학평가 종합 12위
- 2007.11 하남 글로벌캠퍼스 추진을 위한 MOU 체결 : 하남시청
- 2007.12 진안군과 관·학 협력체결
2008. 1 박범훈 총장 제17대 대통령 취임준비위원장 취임-대통령 취임식 2.25(월)
임기종료
2008. 2 법학전문대학원 설립 예비인가, 글로벌 캠퍼스 추진 자문위원단 구성(7명)
2008. 3 제2기 대학평의원회 출범(민경식 의장 외 10명),
개교 90주년기념 엠블런 확정 공포, 생활과학대학 학과명 변경 :
주거학과→주거환경학과, 국악대학 학부전공 변경-창작음악전공
(창작공연학부→음악예술학부), 타악전공(음악예술학부→연희예술 학부), 학부명
변경 : 창작공연학부→연희예술학부, 전공명 변경 : 타악전공→타악연희전공
2008. 3 일반대학원 정원 증원 793→825명(32명 : 석사 30, 박사 2명), 일반대학원 학과
신설 : 국제관계학과, 일반대학원 학과통합 : 중어중문학과+중국지역학과=중국
지역학과(학과간협동과정) 일반대학원 학과계열변경 : 통계학과(인문사회계열
→자연과학계열), 창업학과박사과정 신설 : 학연산협동과정, 국제대학원 정원조
정- 석사과정 10명 감원(60명→50명), 박사과정 2명 감원(5명→3명), 첨단영상
대학원 정원조정-석사과정 4명 감원(73명→69명), 박사과정 4명 증원(27명→31
명), 첨단영상대학원 모집단위 조정-학과명칭 변경 : 첨단영상학과→ 영상학과
(석·박사 과정 공통), 수업연한 조정 : 제작석사과정 (3년→2년), 수료학점 조
정 : 제작 석사과정(45학점 이상→30학점 이상), 신문방송대학원 전공신설 : 뉴
미디어 전공, 건설대학원 정원 감원 : 100명→90명(10명), 건설 대학원 학과명
변경 : 도시공학과→북한SOC학과, 행정대학원 정원 감원 : 75명→65명(10명),
행정대학원 학과명 신설 : 도시마케팅 학과, 문화예술행정학과, 행정대학원 학
과명 변경 : 도시및지방 행정학과→지방행정학과, 정보대학원 정원 감원 : 55
명→45명(10명)



2008. 5 두산그룹 학교법인 중앙대학교 인수
 2008. 6 제9대 박용성 이사장 취임
 2008. 7 하남캠퍼스 추진단 헌판식(하남시청)
 2008. 8 CAU2018+ 중장기 발전계획 발표(전체교수회의)
 2008. 9 약학대학 및 자연계열 R&D센터, 기숙사 신축 기공식, 개교90주년 기념 '중앙인 한마당'(올림픽 체조경기장)
 2008.10 개교90주년 기념일
 2009. 2 제13대 박범훈 총장 연임, 2009 신입생 전체 입학식 및 환영식 (잠실체육관), 모바일 학생증 발급
 2009. 3 법학전문대학원 개원(50명), 의학전문대학원 개원(43명), 학부 입학정원 : 37명 감원(4,473→4,436명), 자연과학대학 : 120명 증원-물리학과 25명, 화학과 35명, 생명과학과 35명, 수확통계학부 25명, 공과대학-화학신소재공학부 전공(화학공학, 신소재공학) 폐지, 법과대학-200명 입학정원 모집 중지(법학전문대학원 신설), 정경대학-광고홍보학과 5명 증원, 약학대학-120명 입학정원 모집 중지(6년제 전환), 의과대학-간호학과 20명 증원, 미디어공연영상대학-연극영화학부 5명 증원, 신문방송학부 전공(언론저널리즘, 미디어콘텐츠) 신설, 자유전공학부 신설 : 정원 133명, 외국어대학-독어학과, 불어학과 폐지, 사회과학대학-공공정책학부 폐지, 일반대학원 정원조정 : 823명→918명(95명 증원), 일반대학원 학과 폐지 : 건축미술학과, 일반대학원 학과명 변경 : 사학과→역사학과, 학과간협동과정 석사과정 신설-건축미술학과, 재생에너지학과, 학과간협동과정 박사과정 신설-스포츠산업정보학과, 재생에너지학과, 건설대학원 석사과정 10명 감원 : 90명→80명, 교육대학원 전공명 변경-일반사회및윤리교육전공→윤리교육전공, 사회개발대학원석사과정 20명 감원 : 100명→80명, 신문방송대학원 석사과정 15명 감원:85명→70명, 예술대학원 석사과정 25명 감원 : 135명→110명, 정보대학원 석사과정 5명 감원:45명→40명, 행정대학원 석사과정 5명 감원 : 65

- 명 → 60명, 의약식품대학원 석사과정 15명 감원 : 80명 → 65명, 국악교육대학원
모집단위 변경-전공명 변경 : 국악포괄교육전공 → 국악전문교육전공
- 2010 15개 대학원과 18개 단과대학에 4개 계열, 16개 학부, 58개 학과로 구성
2011. 1 학문단위 재조정에 의한 학과명 변경 및 통합
제 12대 박범훈 총장 이임
2011. 3 제 13대 안국신 총장 취임
2011. 6 의과, 간호, 약학대학 및 R&D센터 완공(연면적 38,406m²규모)
2011. 8 중앙대학교(본·분교)와 적십자간호대학 통합 승인(교육과학기술부)
2012. 3 글로벌대학원 신설(90명):국제대학원 및 글로벌인적자원개발대학원 통폐합
단과대학 신설 : 적십자간호대학 간호학과(300명)
2013. 2 제 13대 안국신 총장 이임
제 14대 이용구 총장 취임
2013. 3 글로벌대학원 폐원
국제대학원 신설(43명)
글로벌인적자원개발대학원 신설(80명)
건강간호대학원 신설(35명)
2013. 5 인천시와 '중앙대학교 인천캠퍼스 및 캠퍼스타운 건립을 위한 기본협약'체결
2013. 9 100주년 기념관 및 경영경제관 기공
제 13대 안국신 총장 이임
제 14대 이용구 총장 취임
- 2013.10 개교 95주년 기념식
2014. 1 거버넌스(Governance)체제 변경에 따른 '기능형 부총장 및 학장 중심 경영제' 시행
2014. 3 아시아-태평양 국제교육협회(APAIE) 2014년 컨퍼런스 개최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육성사업 선정
2014. 6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 선정
수도권 대학 특성화 사업(CK-II)선정
미래창조과학부 대학ICT연구센터육성 지원사업 선정
2014. 7 보건복지부 제약산업특성화대학원 선정
- 2014.10 개교 96주년 기념식
다빈치인재개발원 개소
마이크로소프트사(Microsoft)와 상호협력 협정 체결식
- 2014.11 창의ICT공과대학 출범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단 출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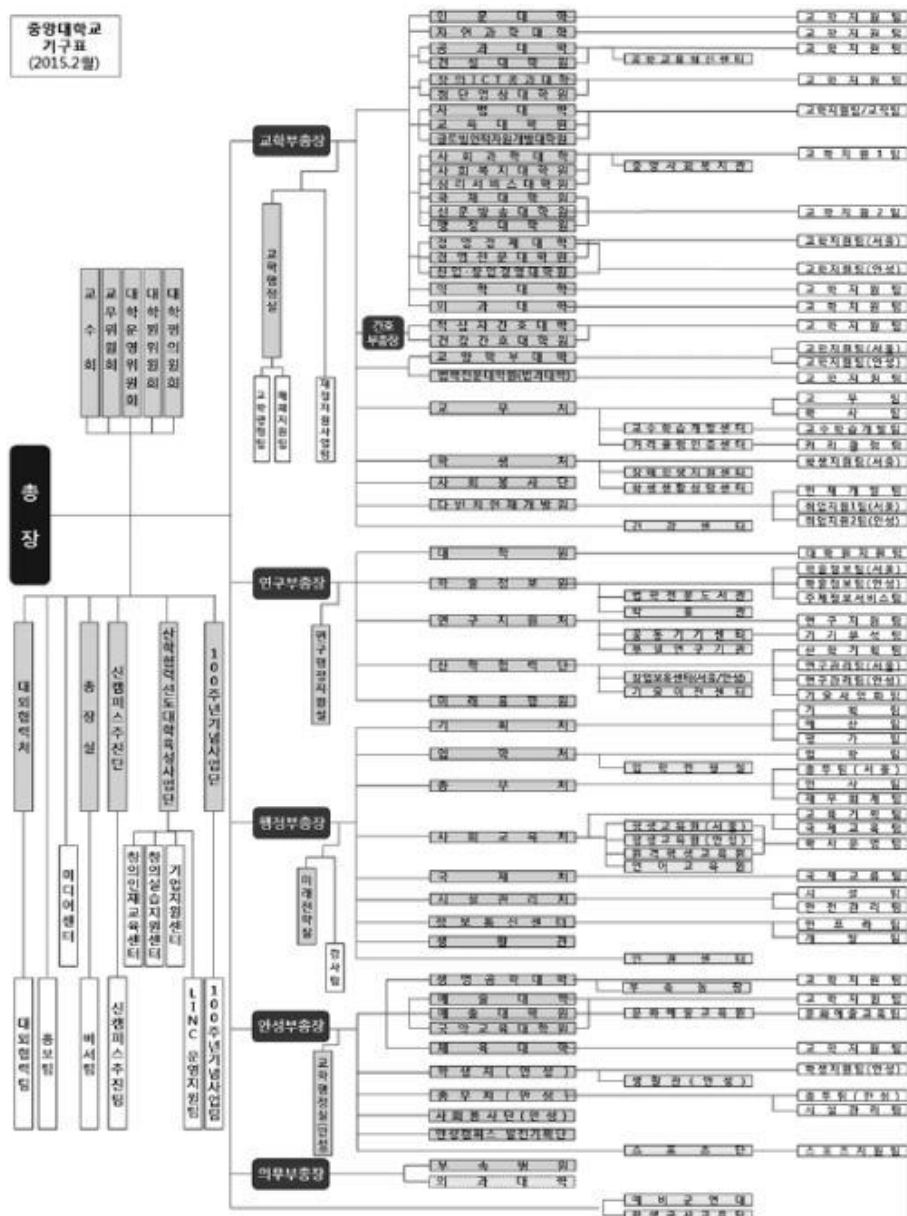
중앙대학교의 역대 총장

1933. 4	중앙보육학교를 인수하여 설립자 겸 교장에 임영신 박사 취임
1947. 4	중앙여자대학의 이사장 겸 학장에 임영신 박사 취임
1953. 2	종합대학교로 승격, 초대 총장에 임영신 박사 취임
1961.10	제2대 총장 임성희 박사 취임
1963. 5	제3대 총장 임영신 박사 재취임
1972. 5	제4대 총장 임철순 박사 취임
1980. 5	제5대 총장 이석희 박사 취임
1985. 3	제6대 총장 문병집 박사 취임
1987.10	제7대 총장 이재철 박사 취임
1989. 2	제8대 총장 하경근 박사 취임
1992. 2	제9대 총장 김민하 박사 취임
1997. 2	제10대 총장 이종훈 박사 취임
2001. 2	제11대 총장 박명수 박사 취임
2005. 2	제12대 총장 박범훈 박사 취임
2011. 2	제13대 총장 안국신 박사 취임
2013. 2	제14대 총장 이용구 박사 취임

중앙대학교의 역대 이사장

초대	임 영 신(任永信)	1947 ~ 1960
2대	황 소 향(黃小卿)	1960 ~ 1961
3대	임 영 신(任永信)	1961 ~ 1963
4대	임 민 규(任珉奎)	1963 ~ 1972
5대	임 영 신(任永信)	1972 ~ 1977
6대	방 우 영(方又榮)	1977 ~ 1980
7대	임 철 순(任哲淳)	1980 ~ 1987
8대	김 희 수(金熙秀)	1987 ~ 2008
9대	박 용 성(朴容晟)	2008 ~ 2015
10대	김 철 수(金喆壽)	2015 ~

중앙대학교 기구표



중앙대학교 학칙

1998. 9. 1. 제 정

2015. 4.27. 개 정

제1장 총 칙

제1절 교육목적

제1조(교육목적) ① 중앙대학교(이하 “이 대학교”라 한다)는 ‘의와 참’의 정신을 바탕으로 사회지도자로서 갖추어야 할 교양과 국가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적 지식을 기르고, 민족과 인류공영에 기여할 수 있는 열린 세계관을 지닌 인재의 양성을 교육목적으로 한다.

② 이 대학교 대학원은 대학원 설립의 기본 정신과 ‘의와 참’의 창학이념을 바탕으로 자아를 실현하고, 국가와 인류사회의 번영을 위해 필요한 학술 이론과 지식을 추구 하며,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는 창의적이며 실천적인 지도자 양성을 교육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08.30.)

제2조(교육목표) “조문삭제”(개정 2005.08.30)

제2절 대학, 대학원, 부속학교, 교육·연구지원시설 및 부속시설

부속시설 제3조(직제) 이 대학교의 직제에 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대학·대학원) ① 이 대학교에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 창의ICT공과대학, 사범대학, 경영경제대학, 약학대학, 의과대학, 적십자간호대학, 예술대학, 체육대학, 생명공학대학을 둔다. <개정 2010.4.8., 2011.8.26., 2014.2.6., 2014.9.25.>

- ② 이 대학교에 일반대학원과 전문대학원으로서 첨단영상대학원, 국제대학원, 경영전문 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으로서 사회복지대학원, 교육대학원, 신문방송대학원, 글로벌인적자원개발대학원, 건설대학원, 행정대학원, 건강간호대학원, 예술대학원, 심리서비스대학원, 국악교육대학원, 산업창업경영대학원을 둔다. <개정 2006.11.15, 2008.11.13, 2010.12.8, 2011.11.17., 2012.11.24., 2014.9.25.>
- ③ 이 대학교 각 대학에 학과 또는 학부(이하 "학과 등"이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11.13, 2010.3.1., 2010.4.8.>
- ④ 이 대학교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에 학과 또는 전공(이하 "학과"라 한다)을 둔다.

- 제5조(부속학교)** ① 사범대학에 부속고등학교, 부속중학교, 부속초등학교, 부속유치원을 둔다.
- ② 각 부속학교 학칙은 따로 정한다.

- 제6조(교육·연구지원시설)** ① 이 대학교에 교육연구 지원을 위하여 국제처, 학술정보원, 정보통신센터, 사회교육처, 의료원 등을 둔다. <개정 2006.11.15, 2009.1.21., 2010.12.8., 2013.4.30., 2014.2.6.>
- ② 교육연구지원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의2(산학협력단)** ① 이 대학교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 연계하여 산 학협력활동을 수행하는 산학협력단을 둔다.<신설 2004.1.1.>
- ② 산학협력단의 조직 및 운영에 대해서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04.1.1.>
- ③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산학협력단 내 학교 기업을 설치, 운영한다.<신설 2013.12.5.>
- ④ 학교기업의 운영과 보상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산학협력단에서 학교기업 운영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신설 2013.12.5.>

- 제7조(부속시설)** ① 이 대학교에 중앙사회복지관, 생활관, 공공기기센터, 건강센터, 교수학습개발센터, 부속농장, 미디어센터 등 필요한 기관을 둔다.<개정 2004.1.1, 2010.12.8., 2014.2.6.>
- ② 부속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각 연구소)** ① 이 대학교 연구지원처 산하에 별표 8과 같이 각 연구소를 둔다.
<개정 2005.7.15, 2006.11.15, 2008.11.13, 2010.3.1., 2013.8.29., 2014.2.6.>
② 각 연구원 및 연구소에 관한 제 규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절 교수의 소속 · 교수시간 · 재임용 등

- 제9조(전임교원의 소속)** ① 이 대학교의 전임교원은 대학(원) 및 학과(부) 또는 대학의 제 기관에 소속된다.<개정 2010.12.8.>
② 총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임교원의 소속을 변경하거나 겸직 근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0조(겸임교수 등)** ① 이 대학교에 겸임교수, 명예교수, 특임교수, 석좌교수, 객원교수, 초빙교수, 강의전담교수, 연구전담교수, 외래교수, 시간강사 등을 각각 임용 또는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04.1.1., 2010.12.8.>
② 겸임교수 등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11조(교원의 교수시간)** 전임교원의 교수시간은 매 학년도 30주 이상의 수업을 기준으로 연간 15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4.8.1.>

- 제11조의2(교원의 재임용)** 전임교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어 재임용되는 경우 그 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05.2.15.>

제4절 교수회 및 위원회

- 제12조(교수회)** ① 이 대학교에 조교수이상의 교원으로 구성되는 전체교수회, 대학별 교수회를 둔다. <개정 2010.12.8., 2014.2.6.>
② 전체교수회는 총장, 대학별 교수회는 학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0.12.8., 2014.2.6.>
③ 교수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④ 교수회는 다음 각 호를 심의한다.

1. 수업 및 연구에 관한 사항
2. 입학·수료·진급 및 졸업에 관한 사항
3. 교과목의 설치,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학생지도 및 상벌에 관한 사항
5. 시험에 관한 사항
6. 공개강좌에 관한 사항
7. 기타 학사에 관한 중요사항

제13조(교무위원회) ① 이 대학교의 교무, 학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무 위원회를 둔다.<개정 2010.12.8.>

② 교무위원회는 총장, 부총장, 대학원장, 각 대학장, 교양학부대학장, 교무처장, 학생처 장(안성/서울), 연구지원처장, 기획처장, 입학처장, 총무처장(서울/안성), 국제처장, 사회 교육처장, 시설관리처장, 대외협력처장, 산학협력단장 및 총장이 지명하는 부서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2.1, 2010.12.8, 2012.4.24, 2014.2.6.>

③ 교무위원회는 총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교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심의한다.

1. 대학(원) 학과 등 및 부속기관의 설치와 폐지에 관한 사항
2. 학칙의 제정·개정·폐지에 관한 사항<개정 2010.12.8.>
3. 입학시험에 관한 사항
4. <삭제 2010.12.8.>
5. 교수회의 안건 중 중요사항
6. 교수·연구에 관한 사항
7. 학생지도 및 상벌에 관한 사항
8.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의 2(대학운영위원회) ① 이 대학교의 경영 및 일반행정(이하 '대학운영'이라고 한다)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1.8.26.>

② 대학운영위원회는 총장, 교학/연구/행정/안성/의무 부총장, 기획처장, 교무처장, 법인 상임이사 및 법인사무처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8.26., 2014.2.6.>

③ 대학운영위원회는 총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1.8.26.>

④ 대학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심의한다. <개정 2011.8.26.>

1. 제 규정의 제정·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2. 각 학문단위 및 부서간 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1.8.26, 2014.2.6.>
3.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대학원위원회) ① 각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일반 대학원에 대학원위원회를 둔다.

② 대학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입학수료 및 학위수여(명예학위 포함)에 관한 사항
2. 학과의 설치·폐지와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4. 대학원에 관한 규정의 제·개정 등에 관한 사항
5. 기타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③ 대학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기타 위원회) ① 이 대학교에 중요사항을 심의 및 논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위원회는 총장의 승인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1.12.8.>

② 기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장 대학 · 대학원 학사일반

제1절 학위과정 및 학생정원

제16조(학위과정) ① 이 대학교의 각 대학에 학사학위과정, 일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에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연구과정과 각 특수대학원에 석사학위과정 및 연구과정을 둔다.

② 일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에 석·박사통합과정을 둘 수 있다. 이에 관한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7조(학생정원) ① 이 대학교의 대학별·계열별·학부·학과 등의 학생정원은 교육과학기술 부장관이 정하는 정원책정기준 범위 내에서 총장이 정하며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6.6.15, 2006.11.15, 2007.11.26, 2008.11.13, 2010.6.30., 2012.4.24.>

② 일반대학원의 학생정원은 별표 2-1과 같이 총정원제로 하며, 그 입학정원은 총정원 내에서 따로 정한다. <개정 2006.6.15, 2006.11.15, 2007.11.26,

2008.11.13, 2010.12.8, 2011.11.17., 2012.4.24.>

③ 전문대학원에 설치하는 각 대학원별 학생정원은 별표 3-1과 같다.

<개정 2006.6.15, 2006.11.15, 2007.11.26, 2008.11.13, 2010.12.8., 2011.11.17.>

④ 특수대학원에 설치하는 각 대학원별 학생정원은 별표 3-2와 같다.

<개정 2006.6.15, 2006.11.15, 2007.11.26, 2008.11.13, 2010.9.1, 2010.12.8., 2011.11.17, 2012.4.24.>

제18조(별도정원)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입학, 학사편입학 또는 재입학 할 경우 그 정원은 고등교육법시행령이 정한 바에 따른다.

1. 대학 : 위탁학생, 재외국민 및 외국인, 학사편입학생, 농어촌지역의 학생, 북한 이탈 주민 및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기타 관계법령에서 규정하는 학생
2.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 : 위탁학생,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 외국에서 16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기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특별교육 과정 학생<개정 2010.3.1.>

제18조의2(계약학과 등) ① 이 대학교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또는 학 부(과)와 산업교육특별과정 등(이하 “계약학과 등”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신설 2004.1.1.>

② 계약학과 등의 명칭,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 학생선발의 기준 및 방법, 학생의 정원, 운영경비, 학생의 수업료, 학기 및 수업일수, 설치·운영 기간 등에 관하여는 총장 이 따로 정하며 제1항에 의하여 설치·운영하는 계약학과는 별표 1-1, 2-2, 3-3과 같다.<신설 2004.1.1, 개정 2010.12.8.>

③ 계약학과 등의 등록금은 산업체가 50% 이상 지원한다.<신설 2013.4.30.>

④ 산업체의 도산 또는 구조조정 등으로 계약 기간 만료 전에 해당 계약학과를 운영할 수 없을 경우 기존 재학생은 졸업까지 학생의 원에 따라 해당 계약학과 의 학적을 유지할 수 있다.<신설 2013.4.30.>

제2절 입학 · 등록 및 납입금

제19조(입학시기) 입학시기는 매 학기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제20조(학생의 선발)

① 학생의 선발은 총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전항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1조(입학허가 및 취소) ① 입학은 총장이 허가하며, 입학이 허가된 자는 지정 기일 내 에 소정의 납입금을 납부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입학허가를 취소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자
2. 소정의 기일 내에 등록을 필하지 아니한 자

제22조(등록 및 납입금) ① 학생은 매 학기초 소정의 기일 내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대학생은 7회 이상, 대학원생은 3회 내지 5회 이상 등록 하여야 한다. 다만, 대학은 9학점, 대학원은 3학점 이내에 한하여 학점등록을 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4.03.1.>

③ 학위과정 수료 후 학위논문을 준비하고자 하는 자가 재학연한 내 학위 취득을 하고 자 할 경우에는 대학원에 연구등록을 해야 한다.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0.3.1.>

④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등록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⑤ 등록은 소정의 납입금(수업료, 입학금, 기타 납입금)을 납부하고 수강신청을 함으로 써 완료된다.

⑥ 휴학원을 제출하여 허가를 받은 자는 당해 학기 납입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입학금 또는 수업료의 반환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여 해당 금액을 반환한다. <개정 2015.2.12.>

제22조2(장애학생 학점등록) ① 총장이 인정하는 장애학생에 대하여는 학점등록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장애학생의 학점등록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04.11.2.>

제3절 휴학 · 복학 · 자퇴 · 제적 및 재입학

제23조(휴학) ① 휴학은 매 학기 개강 4주전부터 개강 후 4주 이내로 한다.

<개정 2004.8.1.>

- ②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계속 4주 이상 수학이 불가능한 자는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한 휴학원을 제출하여 소속 대학장 또는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할 수 있다.<개정 2009.1.21.>
- ③ 휴학은 통산하여 6학기(다만, 편입생은 3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5.12.20., 2012.9.20.>
- ④ 군입대 휴학자의 의무복무기간, 유급으로 인한 학기휴학 및 4학기 이내의 창업으로 인한 휴학은 휴학 횟수 및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4.24.>
- ⑤ 질병 등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다고 총장이 인정하는 자의 휴학 연한은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12.9.20.>

제24조(복학) ① 휴학한 자는 그 기간이 만료되면 소정기간 내에 소속 대학장 또는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 복학하여야 한다. 다만, 병역의무 수행으로 휴학한 자는 전역일로 부터 1년 이내에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증빙서를 첨부하여 복학하여야 한다.

② 복학을 허가하는 시기는 매 학기 개강 4주전부터 개강 후 4주 이내로 한다.<개정 2004.8.1.>

제25조(자퇴)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보호자 연서로 그 사유를 제출하여 소속 대학장 또는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26조(제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한다.

1. 휴학기간 경과 후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매 학기 소정의 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
3. 학사경고를 연속 3회 또는 통산 4회를 받은 자. 다만, 의과대학은 따로 정함
4. 이중학적 보유자
5. 재학연한이 경과하여도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신설 2012.9.20.>
6. 기타 제적사유에 해당하는 제 규정 위반자

제27조(재입학) ① 제적된 자 중 재입학을 원하는 자는 정원에 여석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정해진 기일 내에 총장이 정한 심사 절차를 거쳐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5.2.12.>

② 재입학의 허가는 다른 법령에 의하지 않는 한 제적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어야 한다. 다만, 제26조 1호 내지 2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퇴학자에게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 ④ 제26조 3호에 의하여 제적된 자에게는 재입학을 1회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의과대학은 따로 정한다.
- ⑤ 대통령령 제11292호(1983.12.30.), 동령 제12237호(1987.08.29.), 동령 제13875호(1993.04.02)에 의하여 1980년 5월 17일부터 1993년 2월 24일 사이에 학생활동에 의하여 제적된 자는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 ⑥ 재입학에 대한 여석산출, 자격, 절차 등에 대한 기타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5.2.12.>

제4절 학년도 · 학기 · 수업일수 및 휴업일

제28조(학년도·학기) ①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② 학기는 다음과 같이 나눈다. 다만, 학사운영상 총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 1. 제1학기 :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 2. 제2학기 : 9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
- 3. 계절학기 : 하계 또는 동계방학 중 3주 이상을 개설하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9.1.21.>

제29조(수업일수) ①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30주(매 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② 천재지변 기타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학년도 2주의 범위내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개정 2012.4.24.>

제30조(휴업일) ① 정기 휴업일은 국정공휴일 및 개교기념일로 한다.

- ② 하계방학, 동계방학 기간은 따로 정한다.
 - ③ 입학전형, 졸업식 등 기타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 ④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 <개정 2012.4.24.>

제5절 교육과정 · 이수단위 · 수강신청 및 성적

제31조(교육과정)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2조(이수단위) ① 교과외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매 학기 15시간 이상의 수업을 1학점으로 하며, 실험·실습 및 현장실습은 매 학기 30시간 이상의 수업을 1학점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교과의 경우에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② 제29조 2항의 경우에는 전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3조(강의시간표 및 수강신청) ① 매 학기 강의시간표는 개강 전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학생은 매 학기 강의시간표에 따라 수강 신청하여야 하며, 수강신청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4조(성적평가) ① 학업성적은 시험, 과제물, 출석상황 등을 참작하여 상대평가하며, 그 비율과 방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② 각 과목별 학업성적은 다음과 같이 분류하며 학부의 경우 D급 이상은 급제, F급 이하는 낙제로 하고, 대학원의 경우 C급 이상을 급제로 한다. 다만, 별도로 지정하는 교 과목에 대하여는 급락만 구분하여 급제는 "P"로, 낙제는 "F"로 표시하며, 평점은 부여하지 아니한다.

등 급	A+	A	B+	B	C+	C	D+	D	F
평 점	4.5	4.0	3.5	3.0	2.5	2.0	1.5	1.0	-
득 점	95점 이상	94-90점	89-85점	84-80점	79-75점	74-70점	69-65점	64-60점	60점 미만

제6절 수업, 공개강좌, 시간제등록생 및 학점은행제 등

제35조(수업) 학생의 수업은 주간수업·야간수업·계절수업·방송통신에 의한 수업 및 현장실습수업 등의 방법에 의하여 할 수 있다.

제36조(가상수업) ① 방송·통신에 의한 가상수업을 할 수 있다.

② 가상수업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7조(현장실습수업 등) ① 학생의 현장적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학기 또는 방학 중 전공 유관 기관 등에서의 현장실습, 산학협동인턴십 또는 공공단체에서의 봉사 활동·어학연수 등을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04.8.1., 2009.1.21.>

② 현장실습수업 등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8조(공개강좌 및 특별과정) ① 교육과정 외에 교육연구에 필요한 이론과 그 응용의 습득을 필요로 하는 자를 위하여 공개강좌 및 특별과정을 둘 수 있다.<개정 2012.4.24.>

② 공개강좌 및 특별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증서를 수여한다.

③ 공개강좌 및 특별과정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8조의 2(평생교육) ① 개인의 자아실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출석 또는 원격기반 등 다양한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평생교육시설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12.04.24.]

제39조(시간제 등록생) ① 시간제로 등록하여 수업을 받는 자(이하 “시간제 등록생”이라 한다)를 선발할 수 있다.

② 시간제 등록생의 등록인원은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0분의10이내로 한다.

③ 시간제 등록생은 매 학기 12학점 이내로 수강신청을 할 수 있으며, 연간 24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5.12.20., 2014.4.24.>

④ 시간제 등록생의 모집단위별 등록인원, 등록자격, 선발방법, 교육과정, 학점 인정, 학 력인정, 학위수여 및 납입금의 책정 등 학사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0조(학점은행제) ①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이수한 자 등에게 학점인정을 통하여 학력인정과 학위취득의 기회를 부여하는 학점은행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학점은행제에 있어 학점의 인정범위 및 학위종별 등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총 장이 따로 정한 바에 의하여 시행한다.

제41조(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① 외국의 대학과 공동으로 학사학위과정 또는 대학원의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② 본교와 외국대학간 협약체결에 따라 양교에서 취득한 학점을 상호 인정하여 각각의 학위를 수여하는 공동학위과정 및 복수학위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04.8.1, 개정 2010.3.1.>

③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04.8.1.>

제41조의2(5년제 학석사연계과정) ① 재학 중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여 학사학위 과정과 대학원의 교육과정을 상호 연계하는 5년제 학·석사연계과정을 이수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04.1.1.>

② 학·석사연계과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신설 2004.1.1.>

제3장 대학 학사운영

제1절 입학 · 편입학 및 전과 · 전부

제42조(지원자격) 입학전형의 지원자격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고등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2. 고등학교 졸업학력검정고시 합격자
3. 외국에서 12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4.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전 각 호의 해당자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제43조(편입학) ① 편입학은 일반편입학과 학사편입학으로 구분하며 그 허가는 소정의 전형절차에 의하여 총장이 결정한다.

② 일반편입학은 여석 산정 기준에 의한 그 범위 내에서, 학사편입학은 고등교육법 시 행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③ 일반편입학의 지원자격은 직전학년과정 학점이수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하고, 학사편입학자의 지원자격은 학사학위 소지자로 한다.

④ 기타 편입학의 시행시기와 허용범위, 절차, 선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4조(전과전부) ① 전과 및 전부는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제2학년 또는 제3학년에 허용할 수 있다.

② 전과 및 전부의 시행시기와 허용범위, 절차, 선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5조(서약서 제출) ① 입학이 결정된 자는 보호자 연서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호자는 학생의 재학 중 학비, 기타 신상에 관계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제2절 교과목 및 학점

제46조(교과목 구분) ① 교과목은 교양과목과 전공과목으로 구분하고, 필수와 선택의 구분은 필요에 따라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② 사범대학 및 교직과정이 설치된 대학의 학과 등에 교직과목을 둔다.

제47조(학생의 전공이수 등) ① 이 대학교의 학생은 본인의 선택에 의하여 학과 등이 제공하는 전공을 이수하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전공을 이수할 수 있다.

1. 2이상의 전공
2. 2이상의 학과, 2이상의 학부 또는 학과와 학부가 연계하거나 융합하여 제공하는 전공
3. 학생이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대학의 인정을 받은 전공

② 전항의 시행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8조(이수학점) ① 교양과목의 이수학점은 입학년도별로 정한다. 이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4.8.1, 2009.1.21., 2012.4.24.>

② 전공과목의 이수학점은 대학, 계열, 학과(전공)별로 정한다. 이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9.1.21.>

③ 2이상의 전공 이수에 필요한 학점은 당해 학과 등의 전공이수 학점과 동일하여야 한다.

④ 부전공 이수에 필요한 학점은 21학점 이상으로 한다.

⑤ 부전공을 이수한 자에게는 학위증에 부전공을 표시하고, 2이상의 전공을 이수한 자에게는 소정의 학위를 수여한다.

⑥ 전공, 2이상의 전공 및 부전공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⑦ 공학교육인증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06.11.15, 2009.1.21., 2014.2.6.>

제49조(학기당 수강학점) ① 학기당 수강신청학점은 19 또는 20학점으로 한다. 다만, 유급에 따른 학점보충 및 학점등록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2.4.24.>
② 전 학기 성적 평균평점이 4.0이상인 자는 전학의 학점 외에 3학점까지 초과하여 수강할 수 있다.
③ 약학부 및 의학부는 교과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1항 및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과과정에 편성된 학점을 수강할 수 있다.<개정 2012.4.24.>

제50조(타 대학 취득학점) 재학 중 학생이 국내·외의 타 대학 및 정부가 인정하는 해외 IT 교육기관에서 취득한 학점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이 대학교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51조(과정간 취득학점) ① 학사학위과정 재학생으로서 학과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대학원 교과목에 대하여 한 학기 3학점, 총 6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 <개정 2014.9.25.>
② 전항에 의하여 취득한 학점은 학사학위과정 졸업학점에 포함되며, 학사학위 졸업학점을 3학점 이상 초과하여 이수한 경우에는 대학원 학점에 포함할 수 있다.<개정 2014.4.24., 2014.9.25.>

제52조(기타 취득학점) ① 재입학자의 이전 취득학점은 인정할 수 있다.
② 편입학 또는 전과전부한 자의 전적대학 또는 학과 등에서 이수한 학점은 소정의 심사를 거쳐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절 수업 · 재학연한, 시험, 학사경고 및 유급

제53조(수업연한 및 조기졸업) ①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한다. 다만, 건축학부의 건축학 전공 및 건축설계전공은 5년으로 하고, 약학대학 및 의학부는 6년으로 하되 그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9.1.21.>
1. 약학대학은 다른 학과 또는 학부 등에서 이수하는 기초 · 소양교육 2년, 전공교육 4 년<개정 2009.1.21.>

2. 의학부는 예과과정 2년, 의학과정 4년<개정 2009.1.21.>

② 학칙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정의 전 과정을 조기이수한 후 총 평균성적이 4.00 이상인 학생에 대하여는 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업연한을 한 학기 단축하여 조기졸업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조기 졸업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4.8.1.>

제54조(재학연한) ① 각 대학의 재학연한은 재학기간을 포함하여 6년(12학기)을 초과하지 못하며, 건축학부 건축학전공은 7.5년(15학기), 의학부 9년(18학기)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2.9.20.>

② 외국인, 장애인 및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다고 총장이 인정하는 자의 재학연한은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12.9.20.>

③ 편입학생의 재학연한은 본 대학교에서 수업하여야 할 연한의 1.5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신설 2012.9.20.>

④ 재입학생의 재학연한은 재입학 후 본 대학교에서 수업하여야 할 연한의 1.5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신설 2012.9.20.>

⑤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2.9.20.>

제55조(시험) ① 시험은 매 학기 2회 이상 실시한다.

② 소정의 기간에 응시하지 못한 자는 담당교수의 승인을 받아 추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③ 시험의 시기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56조(수험자격) 매 학기 수업시간의 4분의 1을 초과하여 결석한 자는 그 과목의 수험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할 때에는 학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허용할 수 있다.

제57조(학사경고) 매 학기 성적 평균평점이 1.75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학사경고를 하며 이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9.1.21.>

제58조(유급) ① 학년 또는 학기단위로 교과목 이수요건을 정한 약학부, 의학부 및 간호학과의 성적불량자는 유급시킬 수 있다.<개정 2012.9.20.>

② 유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절 학년수료 및 졸업

제59조(학년수료) ① 해당 학년까지 소정의 등록을 필하고 학점을 취득하였을 때는 학년 수료를 인정한다.

② 학년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4.24.>

구분 학 년	제 1학 년	제 2학 년	제 3학 년	제 4학 년	제 5학 년	제 6학 년
졸업학점이 132학점인 학과 등	33학점 이상	66학점 이상	99학점 이상	132학점 이상		
졸업학점이 140학점인 학과 등	35학점 이상	70학점 이상	105학점 이상	140학점 이상		
졸업학점이 150학점인 학과 등	37학점 이상	75학점 이상	112학점 이상	150학점 이상		
졸업학점이 160학점인 학과 등	40학점 이상	80학점 이상	120학점 이상	160학점 이상		
졸업학점이 162학점인 학과 등 (약학대학)			40학점 이상	80학점 이상	120학점 이상	162학점 이상
졸업학점이 160학점인 학과 등	35학점 이상	70학점 이상	105학점 이상	140학점 이상	160학점 이상	

제60조(졸업학점) ①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132학점 이상으로 한다. 다만, 문과대학, 자연 과학대학(2010학년도 이전)은 140학점 이상, 약학대학은 162학점 이상, 건축학부의 건축 학전공 및 건축설계전공은 160학점 이상으로 하고, 의과대학 의학부의 졸업학점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5.2.15., 2012.4.24.>

② 전향의 학점은 제48조의 규정을 충족시켜야 한다.<개정 2004.1.1.>

③ 학석사연계과정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5.2.15.>

④ 공학교육인증프로그램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06.11.15.>

제61조(졸업 및 학위수여) ① 졸업은 전기졸업과 후기졸업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에게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학위증을 수여한다. 다만, 학위수여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1.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취득한 자

2. 소정학기 등록을 필한 자
 3. 학과 등의 필요에 의하여 부과하는 졸업논문, 졸업종합시험, 실험실습보고, 실기발표, 작품발표 또는 실기고사 등에 합격한 자
 4. 졸업인정제에 따른 대학별 영어능력 인정기준에 통과한 자. 다만, 졸업인정제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5. 전체 학년 평균평점 2.0 이상인 자<개정 2009.1.21.>
- ② 수여학위의 증별은 별표4와 같다.<개정 2006.11.15, 2007.11.26, 2008.11.13.>
- ③ 공학교육인증프로그램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3.4.30.>
- ④ 학위를 받은 자가 해당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에는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신설 2015.2.12.>

제5절 학생자치활동 및 지도

제62조(학생회)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고 지도력과 자치능력을 배양하여 이 대학교의 설립 정신과 교육이념을 실행하기 위하여 중앙대학교 학생회를 두며, 학생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칙과 관련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회칙으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14.4.24.>

제63조(회원자격 및 권리의무) 회원은 재학생으로 하며, 그 구체적 자격 및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은 회칙에 따로 정한다.<개정 2006.11.15.>

제64조(임무 및 기능) 학생회의 임무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창달을 위한 각종 학술, 예술 및 체육활동
2. 의료 및 기술봉사 등 각 분야의 봉사활동
3. 기타 학생자치활동

제65조(활동 및 간행물) ① 학생은 다음의 활동에 대하여 주무부서에 사전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교내·외 50인 이상의 집회
 2. 교내광고, 인쇄물의 부착 또는 배부
 3. 각 기관 또는 개인에 대한 학생활동 후원 요청 및 시상요청
 4. 외부인사의 학내초청
- ② 대학 내에서의 활동은 면학분위기를 해치거나 타인의 권리와 명예를 침해하

는 등 각종 법령 및 학칙과 규정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4.24.>
 ③ 학생단체 또는 학생의 모든 정기, 부정기 간행물은 지도교수의 추천과 총장의 승인을 받아 발행하며 간행물의 편집을 위하여 지도교수를 둘 수 있다.

제66조(학생활동 제한) 학생 교육목적 및 대학의 면학분위기를 저해하는 개인 또는 집단적 행위를 할 수 없다.

제67조(학생지도) 학업 및 학생활동을 지도하기 위하여 지도교수를 둘 수 있다.

제68조(학생지도위원회) ① 학생자치활동을 지도육성하기 위하여 학생지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학생지도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6절 장학금 · 포상 및 징계

제69조(장학금) ① 입학시험성적 또는 재학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하거나 학비조달이 곤란한 학생에 대하여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국가유공자와 그 자녀 및 북한 이탈주민과 그 자녀에게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납입금을 감면할 수 있다.
 ③ 전항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70조(포상)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에게는 포상할 수 있으며, 포 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6.11.15.>

제71조(징계) ① 학칙을 위반하거나, 기타 학생의 본분에 어긋난 행위를 한 학생은 관련 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14.4.24.>
 ② 징계는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퇴학으로 구분한다. 다만, 퇴학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징계시 해당 학생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장 대학원 학사운영

제1절 입학 · 편입학 · 수업 및 재학연한

제72조(지원자격) ① 학위과정별 입학전형의 지원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11.13.>

1. 석사학위과정(석·박사통합과정 포함)은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2. 박사학위과정은 국내·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개정 2008.11.13.>
3. 연구과정은 석사학위과정의 입학자격과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

② 이 대학교에 재직 중인 교직원의 일반대학원 입학은 허가하지 아니한다. 다만, 직원에 대하여는 복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단체협약 기준에 의거 별도의 심사절차를 거친 후 총장의 승인을 얻어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1.11.17.>

③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의 지원학과는 하위 학위과정에서 이수한 학과와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다.

제73조(편입학) ①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에 편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국내·외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에 재학한 자이어야 한다.

② 일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의 박사학위과정에 편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국내·외 대학원의 박사학위과정에 재학한 자이어야 한다.

③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의 학위과정별 편입학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74조(전공변경) 대학원에 입학한 자는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학과를 변경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75조(수업) ① 일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의 수업은 주간에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특수대학원의 수업은 야간에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주간 또는 계절수업을 할 수 있다.

- 제76조(수업연한)** ①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의 수업연한은 석사학위과정 2년, 박사학위과정 2년, 석·박사통합과정은 4년으로 한다. 다만, 법학전문대학원은 법학전문대학원학칙으로 따로 정한다.<개정 2007.11.26, 2009.1.21., 2010.3.1.>
- ② 특수대학원의 수업연한은 주간의 경우 2년, 야간(주말과정 포함)의 경우 2년 6개월, 연구과정은 1년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부 재정지원사업 등으로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야간(주말) 과정도 2년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5.2.12.>
- ③ 일반대학원에서 제78조에서 정한 수료학점을 취득하고, 전교과목 성적이 95점 이상 인 자에 대하여는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은 각 6월을 단축할 수 있다. 다만, 석·박사통합과정은 총 평균평점이 4.0 이상인 경우 1년 이내로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0.3.1.>

제77조(재학연한) 일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의 재학연한은 총장이 따로 정하고, 특수대학원의 재학연한은 두지 아니 한다.<개정 2010.3.1.>

제2절 수료 및 학위수여

- 제78조(수료학점)** ① 일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의 수료학점은 석사학위과정 30학점 이상, 석·박사통합과정 60학점 이상(다만, 자연·공학계열은 57학점 이상), 박사학위과정은 석사학위과정에서 취득한 30학점을 포함하여 60학점 이상으로 하며, 연구학점은 석사학위과정 2학점, 박사학위과정 4학점 및 석·박사학위통합과정 4학점(다만, 자연·공학계열은 6학점)을 별도로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첨단영상대학원의 박사학위과정은 30학점 이상, 경영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은 45학점, 국제대학원은 42학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5.12.20, 2006.11.15, 2007.11.26., 2010.3.1.>
- ② 특수대학원의 수료학점은 석사학위과정 28학점 이상, 연구과정 12학점 이상으로 한다.<개정 2004.11.2.>
- ③ 전항의 수료학점과 이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79조(선수과목이수) 필요에 따라 학부 및 해당 대학원이 지정하는 선수과목을 수강할 수 있으며 이 학점은 수료학점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80조(학점인정)** ① 재학 중 이 대학교의 다른 대학원 또는 협정관계에 있는 다른 대학(교)의 대학원 및 연구기관 등에서 취득한 학점은 석사학위과정 9학점, 박사학위과정 및 석·박사 통합과정은 12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이 대학교와 공동학위 및 복수학위 수여에 관하여 별도의 협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8.11.13., 2010.3.1.>
- ② 입학이전 국내·외 대학원(이 대학원 포함)에서 취득한 학점은 당해 학과장의 추천에 의하여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은 6학점, 석·박사통합과정은 9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 ③ 편입학자의 학점은 전적 대학원에서 이수한 교과목중 이 대학원의 교과목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과목에 한하여 18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채용된 교원의 전적대학에서 지도하던 학생이 편입학한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3.2.1.>
- ④ 이 대학교 대학원의 연구과정을 수료한 자가 동일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에 입학한 경우 연구과정에서 이수한 학과목 및 학점을 석사학위과정 수료학점에 통산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수업연한에는 산입하지 않는다.
- ⑤ 재입학자의 이전 취득학점은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제81조(과정간 취득학점인정)** ① 학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원 교과목을 이수한 학생이 학사학위과정 졸업기준학점을 3학점 이상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석사 학위과정 수료학점에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4.9.25.>
- ② 석사학위과정 학생으로서 학사학위과정 교과목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한 학기에 3학점, 총 6학점까지 학부의 해당 학과장과 대학장의 승인을 받고,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 수강할 수 있다.

- 제82조(학점교환)** ① 이 대학교의 대학원간 학점교환은 석사학위과정은 9학점 이내, 박사 학위과정 및 석·박사학위통합과정은 12학점 이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0.3.1.>
- ② 이 대학원과 학점교환제를 실시하는 타 대학교 대학원의 교과목을 수강코자 하는 자는 해당학과장의 승인과 양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 제83조(수강학점)** 매 학기 수강학점은 일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은 9학점 이내(다만, 선수 과목 제외), 특수대학원 야간의 경우는 6학점(자격증 취득 및 갱신 등에 필요한 선수과목을 수강할 경우 9학점) 이내, 주간인 경우는 9학점 이내를 원칙으로 하고, 국제대학원, 경영전문대학원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석사학

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의 경우 전 학기 성적 평균평점이 4.30 이상인 자는 1회에 한하여 3학점까지 초과하여 수강할 수 있으며, 석·박사학위통합과정의 경우 전 학기 성적 평균평점이 4.0 이상인 자는 횟수에 제한 없이 3학점까지 초과하여 수강할 수 있다. <개정 2010.3.1, 2012.9.20., 2014.2.6.>

- 제84조(학위논문제출 시한, 자격시험 및 심사)** ① 학위논문제출시한은 제77조의 재학연한으로 한다.
- ② 이 대학원의 각 학위과정생으로서 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있는 자는 대학원별로 정한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 ③ 특수대학원의 졸업논문은 학과 등의 필요에 의하여 졸업종합시험, 실험실습보고, 실기발표, 작품발표 또는 실기고사 등으로 대신할 수 있다.
- ④ 각 학위별 논문 제출 자격시험 및 심사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85조(수료의 시기) 학위과정별 수료인정 시기는 매 학기말로 한다.

- 제86조(학위의 종류 및 수여)** ① 이 대학원 학위의 종류는 별표 5, 별표 6 및 별표 7과 같다. 다만, 학위수여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개정 2006.11.15, 2007.11.26, 2008.11.13.>
- ② 이 대학원의 학위과정을 수료하고 학위논문을 제출하여 그 심사에 합격한 후 대학원위원회의 학위수여 결정을 받은 자에게 총장은 별지 제2호 및 별지 제3호 서식의 학위를 수여한다.
- ③ 일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의 석·박사통합과정을 중도에 퇴학하는 자로서 학칙이 정하는 석사학위의 수여기준을 충족한 자에 대하여는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 ④ 학술발전에 특별한 공헌을 하였거나 산업발전 및 인류문화의 향상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지 제4호 서식의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한다.
- ⑤ 연구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증서를 수여한다.

- 제87조(수여학위의 취소)** ① 학위를 받은 자가 해당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 <신설 2015.2.12.>
- ② 명예박사학위를 받은 자가 그 명예를 손상한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5.2.12.>

제3절 협동과정 및 연수연구원

제88조(협동과정) ① 일반대학원에 학과간 협동과정 및 연구기관산업체와 협약에 의한 학·연·산 협동과정을 설치할 수 있다.

② 협동과정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9조(박사후과정생) ①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이 대학교 전임교수가 아닌 자를 박사후과정생(Post doc.)으로 위촉하여 연구하게 할 수 있다.

② 박사후과정생에게는 연구실적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③ 박사후과정생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절 학생지도 및 장학금

제90조(학생지도) 학생은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학업에 전념하여야 한다.

제91조(장학금) ① 각 과정의 입학시험성적 또는 재학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지조가 견고한 자에게는 장학금 또는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장학금 또는 연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92조(징계) 이 대학원 학생으로서 그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대학원 위 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으며, 징계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제 71조의 규정 에 따른다. <개정 2010.12.8.>

제5장 학칙개정

제93조(제안) 각 부서장은 학사운영상 학칙개정이 필요한 경우 개정안을 주무부서를 거쳐 학칙개정 조정부서로 제출할 수 있다

제94조(공고) ① 개정안을 제출받은 조정부서는 그 내용을 검토한 후 특별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이를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총장은 학칙개정안 내용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5조(의견제출) ① 각 부서장은 공고된 학칙개정안에 대하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제출의 기간·제출처 기타 의견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전공고를 할 때에 함께 공고한다.

제96조(심의·공포) 학칙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교무위원회, 대학평의원회 심의를 거친 후 학교법인중앙대학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총장이 이를 공포한다.<개정 2007.11.26.>

제97조(보고) <삭제 2013.4.30.>

제6장 학교기업(삭제 2013.12.5.)

제98조(학교기업 설치) ~ 제103조(운영세칙) <삭제 2013.12.5.>

제7장 대학평의원회(신설 2006.11.15)

제104조(대학평의원회) 이 대학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법인중앙대학교 법인 정관 제9장에 정해진 바에 따라 대학평의원회를 둔다.

제105조(운영규정) 대학평의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8장 자체평가(신설 2009.01.21)

- 제106조(자체평가)** ① 대학의 교육여건개선 및 교육·연구 등의 실적 향상을 위하여 자체 평가를 실시한다.
② 자체평가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9장 등록금심의위원회(신설 2010.12.02)

- 제107조(등록금심의위원회)** ① 대학의 등록금 책정 심의를 위하여 「고등교육법」제11조 제2항에 따라 등록금심의위원회를 둔다.<신설 2010.12.2.>
②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0.12.2.>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1998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되, 국제대학원은 1997년 3월 1일 부터 적용한다.

- 제2조(학칙의 폐지)** 이 학칙의 시행으로 종전의 “중앙대학교학칙, 중앙대학교 대학원 학칙,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학칙, 중앙대학교 국제경영대학원학칙, 중앙대학교 교육 대학원학칙, 중앙대학교 신문방송대학원학칙,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학칙,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학칙, 중앙대학교 산업경영대학원학칙, 중앙대학교 정보산업대학원학칙, 중앙 대학교 의약식품대학원학칙,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학칙”은 폐지한다.

- 제3조(경과조치)** ① 전조의 폐지 학칙중 이 학칙과 상이하여 불리하게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 학칙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소멸될 때까지 종전 학칙을 적용한다.

- ② 이 학칙 제48조 1항 및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996학년도 이전 입학자의 교양 및 전공과목 이수학점은 각각 42학점, 54학점이상으로 한다. 다만, 휴학·군복무·기타의 사유로 1997학년도 이후 입학자와 동일학년에 복학한 자는 이 학칙 제48조 1항 및 2항 을 적용하고, 1996학년도에 학부로 입학한 자 및 1996학년도 이후에 학부로 복학한 자 의 전공과목 이수학점은 이 학칙 제48조 2항을 적용한다.
- ③ 이 학칙 제76조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998년 8월 30일 현재 박사학위 과정에 재적중인 자에 대하여는 그 수업연한을 2년 6월로 한다. 다만, 제76조 3항은 1998년 후 반기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 ④ 별표 6 특수대학원 수여학위 중 예술대학원의 예술학석사는 1997학년도 후 반기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 ⑤ 1998학년도 전반기부터 사회개발대학원 사회문화예술학과와 예술대학원 문화예술학과를 통합 운영함에 따라 1998년 2월 28일 이전에 사회개발대학원 사회문화예술학과로 입학하여 제적 또는 재적하고 있는 자가 동 학과가 통합 운영된 이후 복학 또는 재입학하는 경우 그 입학정원은 예술대학원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규정의 제정) ① 이 학칙 시행 당시 종전 학칙에 의해 제정된 제 규정은 이 학칙에 의해 제정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대학교 제 규정의 내용 중 “대학원”은 “일반대학원”으로, “전문대학원”은 “특수대학원”으로 각각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5조(학위논문제출시한 초과자에 대한 특례) 이 학칙시행 이전 각 대학원 학칙에 정한 학위논문제출시한을 초과한 자에게는 2002년 8월 이전까지 소정의 등록 및 심사절차를 거쳐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199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③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첨단영상전문대학원은

1999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변경학칙 제26조 3호는 2000학년도 신입학자 및 편입학자부터 적용하되, 편입학자의 경우 학점인정 학기는 적용에서 제외한다. 다만, 이 변경학칙에도 불구하고 1999학년도 이전 신입학자 및 편입자에게는 종전 학칙을 적용하되, 편입학자의 경우 학점인정 학기는 적용에서 제외한다.

② 이 변경학칙 제27조 4항은 2000학년도 신입학자 및 편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변경학칙에도 불구하고 1998학년도 이전 신입학자 및 편입자에게는 1회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으며, 1999학년도 신입학자 및 편입자에게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③ 이 학칙 변경당시 모집단위 광역화 또는 학부제 등으로 모집단위가 변경되기 전의 모집단위로 입학한 학생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변경 전 또는 변경 이후의 모집단위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으로 보며, 동 모집단위로 학위를 수여한다.

④ 이 변경학칙 제61조 1항의 4호는 2000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0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학칙 변경당시 모집단위가 학부, 학과 등으로 입학한 학생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변경 전 또는 변경 이후의 모집단위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으로 보며, 동 모집단위로 학위를 수여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0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① 이 학칙 변경당시 종전학칙에 의하여 신(편)입학한 학생의 재학연한 및 재학연한 초과 제적 학생의 재입학에 관하여는 이 변경학칙 제54조 및 제27조 제 1, 2항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2000년 3월 1일 변경학칙 부 칙 제2조 제2항 중 1999학년도 신(편)입학한 학생의 재입학에 관하여는 이 변경학칙 제2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다.
- ② 이 학칙 변경당시 기 수여된 증서, 졸업증서, 학위기, 학위증 등은 이 변경학칙에 의하여 수여된 것으로 본다.
- ③ 이 학칙 변경당시 모집단위가 학부, 학과 등으로 입학한 학생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변경 전 또는 변경 이후의 모집단위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으로 보며, 동 모집 단위로 학위를 수여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0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① 이 학칙 변경 이전에 공개강좌 및 특별과정을 이수한 자라 할지라도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변경서식으로 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 ② 이 학칙 변경 이전의 모집단위인 공과대학 건설·건축계열과 건설대학 건축·도시·토목공학계열로 입학한 학생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변경 전 또는 변경 이후의 모집 단위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으로 보며, 동 모집단위의 학위를 수여한다. 다만, 공과대학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및 건설대학 건축학부 건축설계전공의 경우에는 편제완성연도 이 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변경학칙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0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① 이 학칙 중 제8조 제2호, 제22조, 제48조, 제53조는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48조 제1항 교양교과과정 이수학점 상하한 규정은 2003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개정 2004.8.24.)

이 변경학칙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4.11.2.)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의2(장애학생학점등록)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학칙 중 학칙 제78조(수료학점) 제2항은 2005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② 이 학칙 변경 이전의 모집단위에 입학한 학생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변경 전 또는 변경 이후의 모집단위에 재적하는 것으로 보며, 같은 모집단위의 학위를 수여한다. 다만, (별표5) 일반대학원 수여학위(학술학위) 명칭은 200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5.2.15.)

제1조(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학칙 제59조(학년수료) 제2항, 제60조(졸업학점)는 2005학년도 신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4학년도 이전 입학생의 경우에는 종전 학칙을 적용한다.

부 칙(개정 2005.7.15.)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1항의 연구소 중 해산, 신 설, 통폐합된 연구소에 관한 사항은 해당 연구소 관련 규정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5.8.30.)

제1조(시행일) ① 이 개정학칙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개정학칙 중 제1조(교육목적)는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보며, 제17조 제1항 (별표1) 모집단위별 학생정원표 중 국악대학 타악연희과의 명칭 변경은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③ 이 개정학칙 중 제17조 제2항 (별표2) 학과간 협동과정 학생정원표 중 인적 자원개발 정책학과의 석사학위과정 입학정원 증원 사항은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며, 학과간 협동과정 기록관리학과와 문화학과의 신설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7조 제4항 (별표3-2) 특수대학원 학생정원표 중 산업경영대학원과 창업경영대학원의 통합은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① 이 학칙 변경 당시 통합 또는 명칭 변경되는 대학원의 모집단위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변경 전 또는 변경 이후의 대학원 모집단위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으로 보며, 같은 대학원의 모집단위로 학위를

수여한다.

② 이 학칙 변경 당시 국악대학 타악연희과의 전통춤 전공 및 창작·연희춤 전공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유사전공의 모집단위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으로보며, 같은 모집단위로 학위를 수여한다. 또한 모집단위 명칭이 변경되기 전에 휴학 또는 제적된 학생이 복학 또는 재입학할 때에도 같다.

부 칙(개정 2005.12.20.)

이 개정학칙은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개정 2006.11.15.)

제1조(시행일) ① 이 개정학칙은 2006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개정학칙 중 제4조(대학·대학원) 제1항 및 제2항에서 건설대학, 국제경영대학원 폐지 및 미디어공연영상대학, 경영전문대학원 신설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③ 이 개정학칙 중 제17조 제1항 (별표1), 동조 제3항 (별표3-1), 동조 제4항 (별표3-2) 는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④ 이 개정학칙 중 제17조 제2항 (별표2) 일반대학원 영어교육학과·민속학과, 학과간 협동과정 북한협력개발학과·스포츠산업정보학과·의 석사과정 신설 및 일반대학원 영어 교육학과, 학과간협동과정 기록관리학과·문화연구학과·박사과정 신설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학과간협동과정 및 학·연·산협동과정의 입학정원 조정사항 은 200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대학원 통합·명칭변경·모집단위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변경당시 통합 또는 명칭 변경되는 대학원의 모집단위(일반대학원 생물학과, 학과간협동 과정 과학학과·문화학과, 첨단영상대학원 영상공학과·영상예술학과, 국제대학원 글로벌비즈니스및금융전공·국제관계및통상전공·국제통번역전공, 건설대학원 건설공사관리 학과) 및 폐지되는 모집단위(학과간협동과정 인적자원개발정책학과, 산업·창업경영대 학원 도시행정정보전공·인터넷비즈니스전공·경영컨설팅전공)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변경전 또는 변경 이후의

대학원 모집단위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 으로 보며, 해당 모집단위의 학위를 수여한다.

② (학과 통합·폐지, 단과대학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변경당시 문과대학·공과대학·정경대학과의 통합 및 미디어공연영상대학의 신설로 인해 폐지되는 학과(정경 대학 신문방송학과, 예술대학 연극학과 영화학과, 외국어대학 독어학과 불어학과, 사 회과학대학 공공정책학부 행정학전공, 건설대학 도시공학과 토목공학과 건축학부)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소속 재적생이 졸업하는 연도까지 변경 전 학칙에 따른다.

③ (국제경영대학원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국제경영대학원은 2007년 2월 28일자로 폐지한다. 다만, 2006학년도 이전 입학자로서 동 대학원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소속 재적생이 졸업하는 연도까지 변경 전 학칙에 따른다.

부 칙(개정 2007.11.26.)

제1조(시행일) ① 이 학칙은 2007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이 학칙 중 제17조 제1항 (별표1) 학과명칭 변경(생활과학대학 주거환경 학과), 학부전공교체(국악대학 창작공연학부, 연희예술학부), 전공명 변경(타악연희전공)과 (별표4) 수여학위변경(가족복지학과, 주거환경학과, 식품영양학과)은 2008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② 이 학칙 중 제17조 제2항 (별표2)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정원조정 및 국제관계학과 신설, 학과통합(중국어지역학과), 학과명변경(북한개발협력학과), 연계학과 변경(북한개발협력학과), 학과계열변경(통계학과) 및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정원조정, 학과신설(창업학과), (별표3-1) 전문대학원의 학생정원 조정(첨단영상대학원, 국제대학원), (별표3-2) 특수대학원 학생정원조정(건설대학원, 행정대학원, 정보대학원)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학과간협동과정과 학연산협동과정의 박사과정 정원조정사항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③ 이 학칙 중 제86조 제1항 (별표5), (별표6), (별표7) 학위명변경(가족복지주거환경학과, 식품영양학과, 체육학과, 북한개발협력학과, 북한SOC학과, 지방행정학과), 학과신설(창업학과, 도시마케팅학과)에 따른 학위명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학과통합 및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변경 당시 학과통합(일반대학원 중국지역학과), 명칭변경(문화재학과, 북한개발협력학과, 첨단영상대학원 영상학과, 건설대학원 북한SOC학과, 행정대학원 지방행정학과)으로 변경 전 모집단위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변경된 대학원 모집단위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으로보 며 당해 모집단위의 학위를 수여한다.

제4조(수업연한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변경 당시 첨단영상대학원 제작석사학위 과정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졸업시 까지 변경 전 학칙에 따른다.

부 칙(개정 2009.1.21.)

제1조(시행일) ① 이 개정 학칙은 2009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학칙 중 제8장 자체평가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③ 이 학칙 중 제4절 13조 교무위원회는 200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이 학칙 중 제17조(학생정원) 제1항 대학교의 대학별·계열별 학생정원(별표1)의 입학정원 증원(자연과학대학 : 물리학과, 화학과, 생명과학과, 수학적통계학부, 정경대학 : 광고홍보학과, 의과대학 간호학과, 미디어공연영상대학 : 연극영화학부), 전공 폐지(공과대학 : 화학신소재공학부(화학공학, 신소재공학)), 전공 신설(미디어공연영상대학 : 신문방송학부(언론저널리즘전공, 미디어콘텐츠전공), 입학정원 모집중지(법과대학 : 법학과, 약학대학 : 약학부), 전공학부 신설(자유전공학부), 학과폐지(외국어대학 : 독어학과, 불어학과, 사회과학대학 : 공공정책학부)는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학칙 중 제17조(학생정원) 제2항 일반대학원의 학생정원(별표2)의 학과명 변경(역사학과), 학과폐지(건축미술학과), 박사과정 신설(학과간 협동과정 : 스포츠산업정보학과, 재생에너지학과), 석사과정 신설(학과간협동과정 : 재생에너지학과, 건축미술학과) 및 일반대학원의 석사과정 정원증원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③ 이 학칙 중 제17조(학생정원) 제3항 전문대학원의 각 대학원별 학생정원(별표3-1)의 대학원 신설(법학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은 2009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경영전문대학원의 학생정원조정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 ④ 이 학칙 중 제17조(학생정원) 제4항 특수대학원의 각 대학원별 학생정원(별표 3-2)의 학생정원조정(사회개발대학원, 신문방송대학원, 건설대학원, 행정대학원, 정보대학원, 의약식품대학원, 예술대학원), 전공명 변경(교육대학원 : 윤리교육전공, 국악교육대학원: 국악전문교육전공)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⑤ 이 학칙 중 제61조(졸업 및 학위수여) 제1항 제5호는 2009학년도에 입학한 신입 및 2011학년도 편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 및 2010학년도 이전 편입생은 졸업시까지 변경 전 학칙에 따른다.
- ⑥ 이 학칙 중 제3장 대학 학사운영 제61조(졸업 및 학위수여) 제2항 수여학위종별(별표 4)의 연계전공 신설(국제물류 : 경영학사), 융합전공 신설(공연영상 : 공연영상융합학사)는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⑦ 이 학칙 중 제4장 대학원 학사운영 제72조(지원자격), 제80조(학점인정), 제86조(학위 의 종류 및 수여) 제1항 대학원 학위의 종류(별표 6) 전문대학원 신설(법학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7)의 글로벌인적자원개발 대학원의 수여학위 변경(해운물류학과 : 국제물류학석사)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 제3조(경과조치)** ① 이 학칙 변경 당시 학과폐지(일반대학원 : 건축미술학과), 학과신설(학 과간협동과정 : 건축미술학과)로 인해 변경전 모집단위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변경된 모집단위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으로 보며 당해 모집단위의 학위를 수여한다.
- ② 개정 학칙 제48조(이수학점)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08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변경 전 학칙에 따른다.

부 칙(개정 2010.3.1.)

- 제1조(시행일)** ① 이 학칙은 2010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적용예외)** 제76조 3항 및 제78조 1항, 제83조 중 석·박사학위통합과정과 관련된 규정은 2010년 전반기 입학자부터 적용하고, 2009년 하반기 입학자까지는 구 규정을 적용한다.

- 제3조(경과조치)** 이 학칙 변경 당시 통합 또는 명칭 변경되는 대학의 모집단위(정경계열 행정학과, 자유전공학부)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변경

전 또는 변경 이후의 대학모집 단위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으로 보며, 해당 모집단위의 학위를 수여한다.

부 칙(개정 2010.4.8.)

제1조(시행일) ① 이 개정 학칙은 2011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개정 학칙 제4조 1항은 2011학년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② 개정학칙 제4조 1항 및 3항에도 불구하고 2010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졸업 시까지 변경 전 학칙에 따른다.

부칙(개정 2010.6.30., 2010.12.8.)

제1조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0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 (대학 통합 또는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변경 당시 대학의 통합 또는 폐지되는 대학(문과대학, 정경대학, 경영대학, 미디어공연영상대학, 산업과학대학, 외국어대학, 사회과학대학(안성), 생활과학대학, 음악대학, 체육과학대학, 국악대학)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소속 재적생이 졸업하는 연도까지 변경 전 학칙에 따른다.(신설 2010.12.08.)

② (학과(부) 통합, 명칭변경 및 모집단위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변경 당시 학과(부)의 명칭변경, 통합 또는 폐지되는 모집단위(문과대학 독어독문학과·불어불문학과·일어일문학과·민속학과·사회복지학과·아동복지학과·청소년학과,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과·수학통계학부 수학전공·수학통계학부 통계학전공, 공과대학 건설환경공학과·도시공학과, 정경대학 경제학과·정치외교학과, 미디어공연영상대학 연극영화학부, 글로벌지식학부(서울·안성)와 안성캠퍼스의 산업과학대학·예술대학·외국어대학·사회과학대학·생활 과학대학·음악대학·체육과학대학·국악대학 전(全) 학과(부))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소속 재적생이 졸업하는 연도까지 변경 전 학칙에 따른다. (신설 2010.12.08.)

제3조 (적용례) 이 학칙 중 제17조 (학생정원) 제1항 대학교의 대학별·계열별 학생정원(별표 1)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 (적용특례) 이 학칙(2007. 11.26) 부칙 제2조 제3항에 불구하고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의 학위명은 학칙(2006.11.15)에 따른 학위명을 적용할 수 있다.

부칙(개정 2010.12.8.)

제1조 (시행일) ① 이 개정 학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학칙중 제17조 제2항 별표2(일반대학원 학생정원), 제17조 제4항 별표 3-2(특수대 학원 학생 정원표), 제61조 제2항 별표4(학사학위과정 수여학위), 제 86조 제1항 별표 5 (일반대학원 수여학위), 별표 7 (특수대학원 수여학위)는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③ 이 학칙 중 10조 제1항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된 것으로 본다.

제2조 (대학원 학과 명칭 변경, 학과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학칙 개정 당시 명칭 변경되는 대학원의 모집단위(일반과정 노어노문학과, 민속학과, 정치외교학과, 무역학과, 도시및지역계획학과, 동물자원과학과, 원예과학과, 화학공학과, 기계공학부, 전자전기공학부, 의류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변경 후의 대학원 모집단위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으로 본다. 다만, 학생의 희망에 따라 원적학과에 재적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인정한다.

② 이 학칙 개정 당시 폐지되는 모집단위(일반과정 정보시스템학과 석사학위과정, 국제 계학과 석사학위과정, 생명공학과 석사학위과정, 가족복지주거환경학과 석사학위과정, 토목환경공학과 석사학위과정 및 학과간 협동과정 영어언어과학학과 석박사학위과정, 건축미술학과 석사학위과정)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소속 재적생이 졸업하는 연도까지 변경 전 학칙에 따른다.

제3조(정보대학원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정보대학원은 2011년 2월 28일자로 폐지한다. 다만, 2010학년도 이전 입학자로서 동대학원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소속 재적생이 졸업하는 연도까지 변경전 학칙에 따른다.

제4조(적용례) ① 이 학칙중 제9장 등록금심의위원회는 2010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개정 학칙 중 제6조(교육연구지원시설), 제7조(부속시설), 제12조(교수회), 제13조 (교무위원회), 제13조의 2(교학위원회), 제15조(기타 위원회)는 2011년 1

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개정 2011.3.1.)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약학대학 6년제 시행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개정학칙에도 불구하고 2008학년도 이전 약학대학 입학생은 졸업시까지 변경 전 학칙에 따른다.

부 칙(개정 2011.8.26.)

제1조 (시행일) ① 이 학칙은 2011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학칙 중 제17조(학생정원) 제1항 대학교의 대학별·계열별 학생정원 (별표 1)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대학통합에 따른 승계) 폐지되는 적십자간호대학의 학칙과 제 규정은 중앙대학교가 승계한다.

제3조 (대학 신설, 모집단위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 종전의 의과대학 간호학과 학생은 신설된 적십자간호대학의 해당 학과의 해당 학년에 재적하는 것으로 보되, 교육과정·이수수료 및 졸업요건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폐지되는 모집단위(안성캠퍼스 경영학부·경제학부·지식경영학부)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소속 재적생이 졸업하는 연도까지 변경 전 학칙에 따른다.

제4조 (폐지되는 적십자간호대학 학생에 대한 경과조치) 폐지되는 적십자간호대학은 2014년 2월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 이 학칙 시행 전에 입학한 동 대학 학생의 교육과정·이수수료 및 졸업요건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되, 동 대학의 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그 존속기간 내에 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자가 있을 때는 존속기간 종료 후 중앙대학교에 편입할 수 있으며 정원은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개정 2011.11.17.)

제1조 (시행일) ① 이 학칙은 2011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학칙 중 제17조(학생정원) 제1항 대학교의 대학별·계열별 학생정원(별표 1)의 입학정원 증원(사범대학 : 영어교육과, 경영경제대학 : 경영학부), 입학정원 감원(사범대학: 교육학과, 가정교육과, 체육교육과), 학과폐지(사범대학 : 가정교육과)는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③ 이 학칙 중 제17조(학생정원) 제2항 일반대학원의 학생정원(별표2)의 박사과정 신설(도시공학과, 학과간협동과정 : 융합의약과학과, 분자영상과학과), 석사과정 신설(학과 간협동과정, 융합의약과학과, 분자영상과학과, 해운물류학과), 학과폐지(인적자원개발정책학과) 및 일반대학원의 석사과정 정원증원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④ 이 학칙 중 제17조(학생정원) 제3항 전문대학원의 각 대학원별 학생정원(별표3-1)의 대학원 명칭 변경(글로벌대학원)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⑤ 이 학칙 중 제17조(학생정원) 제3항 특수대학원의 각 대학원별 학생정원(별표 3-2)의 전공명 변경(건설대학원 : 건설시스템 BIM학과, 국악교육대학원 : 국악교육전공, 음악치료교육전공), 학과 폐지(행정대학원 : 문화예술행정학과)는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교육대학원 전공폐지(윤리교육, 컴퓨터교육 전공)는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⑥ 이 학칙 중 제4장 대학원 학사운영 제86조(학위의 종류 및 수여) 제1항 대학원 학위 의 종류(별표 5)는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 (학과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개정 당시 폐지되는 모집단위 (사범대학 가정교육과)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소속 재적생이 졸업하는 연도까지 변경 전 학칙에 따른다.

② (글로벌대학원 통합에 따른 경과조치) 글로벌인적자원개발대학원 2012년 2월 28일자 로 모집 중지한다. 다만 동 대학원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소속 재적생이 졸업하는 연 도까지 변경전 학칙에 따른다.

부 칙(개정 2012.4.24.)

- ① 이 학칙은 2012년 0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② 이 학칙 중 제13조(교무위원회) 제2항 중 교무처장의 위원 추가구성은 201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 ③ 이 학칙 중 제17조(학생정원) 제1항 대학교의 대학별·계열별 학생정원 (별표1)의 입학정원 증원(적십자간호대학 간호학과)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 ④ 이 학칙 중 제17조(학생정원) 제2항 일반대학원의 학생정원 (별표2)의 계약학과 석·박사과정 신설(가스에너지플랜트공학과)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 ⑤ 폐지된 일반대학원 인적자원개발정책학과에 재적 중인 학생의 학과명 및 학위명을 2013년 2월부터 인적자원개발학과(인적자원개발학박사)로 적용하여 시행한다.
- ⑥ 이 학칙 중 제17조(학생정원) 제3항 특수대학원의 각 대학원별 학생정원(별표3-2)의 전공명 변경(건설대학원 : 건축공간환경디자인학과)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 ⑦ 이 학칙 중 제29조(수업일수), 제30조(휴업일), 제48조(이수학점), 제49조(학기당 수강학점), 제59조(학년수료), 제60조(졸업학점)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학칙 시행 당시 법과대학 법학과에 재적 중이거나 자퇴 등으로 인해 제적 중인 학생의 졸업학점은 개정된 학칙에 따른다. 또한 이 학칙 시행일 이전에 이 학칙에 따른 졸업요건을 충족한 학생의 경우 최소한 한 학기 이상을 이수하여야 이 학칙상의 졸업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한다.

부 칙(개정 2012.9.20.)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학칙 중 제17조(학생정원) 제2항 일반대학원의 학생정원 [별표 2-1]의 학과간협동과정 박사과정 신설(인적자원개발학과) 및 제3항 전문대학원의 학생정원 [별표3-1]의 글로벌대학원 정원조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적용하여 시행한다.

② 이 개정 학칙 중 [별표 2-1], [별표 2-2] 일반대학원 정원(석사 156명, 박사 34명)의 안성캠퍼스 분리는 2012년 9월 1일(2012학년도 2학기 대학원 입학)부

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2-2]의 패션예술학과 학과 명칭은 2013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③ 이 학칙 중 제17조(학생정원) 제4항 특수대학원의 각 대학원별 학생정원[별표 3-2]의 석사과정학과 신설(행정대학원 : 경찰행정학과)과 [별표 3-3]의 신문방송대학원 계약학과(차세대콘텐츠기획 전공)은 2012년 9월 1일부터 적용하여 시행한다.

④ 이 학칙 중 제23조(휴학) 제3항, 제26조(제적) 제5호, 제54조(재학연한)은 2013학년도 신입학생, 동 학년도 편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다만, 2012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종전 학 칙에 따른다.

⑤ 이 학칙 중 제86조(학위의 종류 및 수여) 일반대학원 수여학위[별표 5]의 대학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학위명 변경은 2011학년도 3월 이후 입학한 학생부터 적용하며, 2010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변경 전 학칙에 따른다.

부 칙(개정 2012.11.24.)

이 개정 학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며, 2013학년도 1학기 신입생 모집에 적용한다.

부 칙(개정 2013.2.1.)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과대학 조직운영 존속기한 및 이에 관한 경과조치) ① 법과대학의 조직운영 및 명 칭 사용은 2017학년도까지 존속·유지한다.

② 이 학칙 시행일 전 2012년 2월 28일자로 폐지된 법과대학의 조직운영 및 명칭사용 에 대하여는 이 학칙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법학사과정 운영기한, 학위취득 및 이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학칙 시행일 전 2012년 2월 28일자로 폐지된 법학사과정에서 2012년 8월과 2013년 2월에 취득한 법학 사 학위에 대하여는 이 학칙에 따라 법학사학위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② 이 학칙 시행일 전 2012년 2월 28일자로 폐지된 법학사과정에 재적 중에 있거나 자퇴 등으로 인하여 제적한 학생에 대하여는 이 학칙에 따라 재적 또는 제적 학생으로서 학적을 유지한 것으로 본다.

부 칙(개정 2013.4.30.)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개정 학칙 중 제6조 제1항은 201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한다.

② 이 학칙 중 제61조 제3항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한다.

③ 이 학칙 별표 2-1 중 예체능계열의 일반대학원 캠퍼스간 정원조정은 2013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3.6.18.)

이 개정 학칙은 2014년 3월 1일(2014학년도 신입학생)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3.8.29.)

① 이 개정 학칙은 2014년 3월 1일(2014학년도 신입학생)부터 시행한다.

② 이 개정 학칙 중 제8조(각 연구소)는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3.12.5.)

이 개정 학칙은 201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4.2.6.)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제개편사항 반영) 이 개정 학칙 중 직제개편에 따라 변경된 사항은 2014년 1월 15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단과대학 명칭이 변경된 자연과학대학(안성) 학생에 대한 경과 조치) 변경된 직제 중 안성캠퍼스 생명공학대학의 단과대학 명칭은 2015학년도 신입학생부터 적용하고, 2014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생명자원공학부, 식품공학부, 시스템생명공학과 재적학생은 졸업하는 년도까지 변경 전 학칙에 의한 단과대학 명칭을 따른다.

부 칙(개정 2014.4.24.)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별표 4에 대한 개정 사항은 2015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일 전 경영학부 글로벌금융과정으로 입학한 학생에 대하여는 이 학칙에 따라 재적 또는 제적학생으로서 학적을 유지한 것으로 한다.

부 칙(개정 2014.9.25.)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5년 3월 1일(2015학년도 신입학생)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1조 제2항, 제81조 제1항은 2014학년도 1학기 대학원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또한, (별 표4)의 '창업학'융합전공 신설 사항은 2014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제2조(대학원 학과명칭변경, 학과통합, 학과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개정 당시

폐 지되는 모집단위(가정학과 등) 및 명칭 변경, 통·폐합되는 대학원의 모집단위 (독어독문학 과, 불어불문학과, 중국지역학과, 러시아문화학과, 북한개발협력학 과, 비교민속학과, 기록 관리학과, 산업경제학과, 도시공학과, 사진학과, 서양화 학과, 조소학과, 한국화학과, 공예 학과, 패션예술학과, 연극학과, 무용학과, 문예 창작학과 등)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에 대한 학적은 졸업하는 연도까지 변경 전 학칙에 따른다.

부 칙(개정 2015.2.12.)

제1조(시행일) ① 이 개정 학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대학원 학과(전공), 학위 명칭 신설·변경사항은 2015학년도 1학기 입학생부 터 적용한 다. 다만, 일반대학원 학생정원표(별표 2-1)의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 과의 학과명칭 변경사 항은 2015학년도 9월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개정 2015.4.27.)

이 개정 학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하며, 개정 사항은 2016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별 표 1) 2016학년도 모집단위별 학생정원표 <개정 2012.4.24., 2012.9.20., 2013.6.18., 2014.4.24., 2014.9.25., 2015.2.12., 2015.4.27.>

단과대학	입학정원	학부 / 학과 / 전공
인문대학 (서울)	365	국어국문학과 영어영문학과 유럽문화학부(독일어문학전공, 프랑스어문학전공, 러시아어문학전공) 아시아문화학부(일본어문학전공, 중국어문학전공) 철학과 역사학과
사회과학대학 (서울)	435	정치국제학과 공공인재학부 심리학과 문헌정보학과 사회복지학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언론정보전공, 디지털미디어콘텐츠전공) 사회학과 도시계획·부동산학과
사범대학 (서울)	140	
	30	교육학과
	30	유아교육과
	50	영어교육과
	30	체육교육과
자연과학대학 (서울)	170	물리학과 화학과 생명과학과 수학과

단과대학	입학정원	학부 / 학과 / 전공
공과대학 (서울)	470	사회기반시스템공학부(건설환경플랜트공학전공, 도시시스템공학전공) 건축학부(건축학전공, 건축공학전공) 화학신소재공학부 기계공학부 에너지시스템공학부(원자력전공, 발전기계전공, 발전전기전공)
창의ICT 공과대학	407	전자전기공학부 컴퓨터공학부(컴퓨터공학전공, 소프트웨어전공) 융합공학부(바이오메디컬공학전공, 나노바이오소재공학전공, 디지털이미징전공)
경영경제대학 (서울)	785	
	784	경영학부(경영학전공, 글로벌금융전공) 경제학부 응용통계학과 광고홍보학과 국제물류학과 산업보안학과
	1	지식경영학부*
약학대학 (서울)	120	약학부(약학전공, 제약학전공)
의과대학 (서울)	86	의학(예)부
적십자간호대학 (서울)	300	간호학과
예술대학 (서울)	100	공연영상창작학부(연극전공, 영화전공, 공간연출전공)
서울캠퍼스 소계	3,378	

단과대학	입학정원	학부 / 학과 / 전공
생명공학대학 (안성)	356	생명자원공학부(동물생명공학전공, 식물시스템과학전공) 식품공학부(식품공학전공, 식품영양전공) 시스템생명공학과
예술대학 (안성)	621	
	130	공연영상창작학부(문예창작전공, 사진전공, 무용전공)
	90	미술학부(한국화전공, 서양화전공, 조소전공)
	192	디자인학부(공예전공, 산업디자인전공, 시각디자인전공, 실내환경디자인전공, 패션디자인전공)
	124	음악학부(작곡전공, 성악전공, 피아노전공, 관현악전공)
	85	전통예술학부(음악예술전공, 연희예술전공)
체육대학 (안성)	120	스포츠과학부(생활 · 레저스포츠전공, 스포츠산업전공, 골프전공)
안성캠퍼스 소 계	1,097	
총 계	4,475	

주1) 지식경영학부* 정원외 입학정원 중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입학 · 편입학등) 제2항 제14호 다목에 의거하여 실시되는 전형의 입학정원은 고등교육법시행령의 (별표 1)에서 정한 입학정원 허용범위 내에서 별도로 정한다.

(별표 1-1) 계약학과 모집단위별 학생정원표

단과대학	모집단위 계열 및 학과(부)	입학정원				
		2016	2015	2014	2013	합계
약학대학 (서울)		8	8	8	8	32
	▶약학부*	8	8	8	8	32

주) 약학부(계약학과)*설치형태 : 재교육형

(별 표 2-1) 일반대학원 학생정원표 <개정 2012.4.24., 2012.9.20., 2012.11.24., 2013.4.30., 2013.6.18., 2013.8.29., 2014.2.6., 2014.9.25., 2015.2.12.>

□ 서울캠퍼스

석사학위과정 (학생정원 : 984명)		박사학위과정 (학생정원 : 355명)	
일반과정 (53개 학과)		일반과정 (49개 학과)	
계	열	계	열
1. 인문·사회계열	25학과	1. 인문·사회계열	25학과
▶국어국문학과		▶국어국문학과	
▶영어영문학과		▶영어영문학과	
▶일어일문학과		▶일어일문학과	
▶유럽문화학과		▶유럽문화학과	
▶심리학과		▶심리학과	
▶철학과		▶철학과	
▶역사학과		▶역사학과	
▶문헌정보학과		▶문헌정보학과	
▶교육학과		▶교육학과	
▶유아교육학과		▶유아교육학과	
▶영어교육학과		▶영어교육학과	
▶법학과		▶법학과	
▶정치국제학과		▶정치국제학과	
▶행정학과		▶행정학과	
▶경제학과		▶경제학과	
▶경영학과		▶경영학과	
▶무역물류학과		▶무역물류학과	
▶회계학과		▶회계학과	
▶통계학과		▶통계학과	
▶사회학과		▶사회학과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과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광고홍보학과		▶광고홍보학과	
▶도시계획·부동산학과		▶도시계획·부동산학과	
▶체육학과		▶체육학과	
▶산업융합보안학과*			

계	열	학 과 수	계	열	학 과 수
2. 자연과학계열		11학과	2. 자연과학계열		11학과
▶물리학과			▶물리학과		
▶화학			▶화학		
▶생명과학			▶생명과학		
▶수학			▶수학		
▶동물생명공학과			▶동물생명공학과		
▶식품공학과			▶식품공학과		
▶식물시스템학과			▶식물시스템학과		
▶식품영양학과			▶식품영양학과		
▶간호학과			▶간호학과		
▶약학			▶약학		
▶시스템생명공학과			▶시스템생명공학과		
3. 공학계열		9학과	3. 공학계열		9학과
▶토목공학과			▶토목공학과		
▶건축학과			▶건축학과		
▶화학신소재공학과			▶화학신소재공학과		
▶기계공학과			▶기계공학과		
▶전자전기공학과			▶전자전기공학과		
▶컴퓨터공학과			▶컴퓨터공학과		
▶건축공학과			▶건축공학과		
▶가스·에너지플랜트공학과			▶가스·에너지플랜트공학과		
▶융합공학과			▶융합공학과		
4. 의학계열		1학과	4. 의학계열		1학과
▶의학			▶의학		
5. 예술계열		6학과	5. 예술계열		3학과
▶음악학과			▶음악학과		
▶한국음악학과			▶디자인학과		
▶디자인학과			▶공연예술학과		
▶패션학과					
▶조형예술학과					
▶공연예술학과					

표기 학과는 계약학과로서 정원이 따로 있음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학·연·산 협동과정		학·연·산 협동과정	
연 구 소	관련학과	연 구 소	관련학과
▶국립보건원	생명과학과	▶국립보건원	생명과학과
▶식품의약품안전청	생명과학과, 약학과	▶식품의약품안전청	생명과학과, 약학과
▶한국식품개발 연구원	식품공학과	▶한국식품개발 연구원	식품공학과
▶한국기계연구원	기계공학과, 전자전기공학과		
▶한국화학연구원	화학과, 생명과학과, 화학신소재공학과, 약학과	▶한국화학연구원	화학과, 생명과학과, 화학신소재공학과, 약학과
▶국립과학수사 연구원	생명과학과, 화학과, 의학과	▶국립과학수사 연구원	생명과학과, 화학과, 의학과
▶한국전자통신 연구원	컴퓨터공학과	▶한국전자통신 연구원	컴퓨터공학과
▶명문제약(주)	약학과	▶명문제약(주)	약학과
▶한국생산기술 연구원	생명과학과		
▶국립암센터	약학과	▶국립암센터	약학과
		▶한미약품(주)	약학과
▶농촌진흥청	시스템생명공학과	▶농촌진흥청	시스템생명공학과

학과 간 협동 과정 (12학과)	학과 간 협동 과정 (12학과)
학과명	학과명
▶문화재학과	▶문화재학과
▶문화연구학과	▶문화연구학과
▶독일유럽학과	
	▶창업학과
▶에너지공학과	▶에너지공학과
▶문화예술경영학과	▶문화예술경영학과
	▶인적자원개발학과
▶스포츠산업정보학과	▶스포츠산업정보학과
▶동북아학과	▶동북아학과
▶문화예술콘텐츠학과	▶문화예술콘텐츠학과
▶기계시스템엔지니어링 학과	
▶제약산업학과	
▶융합보안학과	▶융합보안학과
	▶예술학과
▶아동청소년학과	▶아동청소년학과

※ 각 학과별 세부 연계학과는 대학원에서 별도 관리함

(별표 2-2) 일반대학원 계약학과 학생정원표 <신설 2012.9.20., 개정 2013.4.30., 2015.2.12.>

대학(원)	과정	학부(과)명	정원(명)	비고
자연공학계열	석사·박사	가스·에너지플랜트공학과	30	재교육형
인문사회계열	석사	산업융합보안학과	10	채용조건형
			10	재교육형

(별 표 3-1) 전문대학원 학생정원표 <개정 2012.9.20., 2012.11.24., 2014.9.25. >

구분	석사학위과정	입학 정원	박사학위과정	입학 정원
첨단영상대학원	▶영상학과	69	▶영상학과	21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전문통·번역학과	52		
경영전문대학원	▶Global MBA ▶CAU-Leader MBA	27 81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50	▶법학과	10

(별 표 3-2) 특수대학원 학생정원표 <개정 2012.4.24., 2012.9.20., 2012.11.24., 2013.6.18.,
2013.8.29., 2014.9.25., 2015.2.12.>

특수대학원명	석사과정	
	학과 · 전공명	입학정원
사회복지대학원 (서울)	▶사회복지학과 ▶아동복지학과 ▶청소년학과	70명
교육대학원 (서울)	▶교육학과 교육행정전공, 국어교육전공, 체육교육전공, 영어교육전공, 일어교육전공, 수학교육전공, 음악교육전공, 미술교육전공, 문헌정보교육전공, 가정교육전공, 유아교육전공, 화학교육전공, 무용교육전공, 역사교육전공, 조기영어교육전공, 생물교육전공, 평생교육전공, 교육공학전공, 상담심리전공*, 영양교육전공 * 표시전공은 현직 교직원에 한하여 입학가능	210명 (교원양성 과정 128명)
신문방송대학원 (서울)	▶신문방송학과	83명
글로벌인적자원 개발대학원 (서울)	▶인적자원개발학과 ▶해운물류학과	80명

특수대학원명	석사과정	
	학과·전공명	입학정원
건설대학원 (서울)	▶방재안전 및 유지관리학과 ▶글로벌 EPC학과 ▶글로벌 건설엔지니어링	75명
행정대학원 (서울)	▶행정학과 ▶다문화정책학과 ▶지방행정학과 ▶복지행정학과 ▶공안·경찰행정학과	50명
건강간호대학원 (서울)	▶간호시물레이션전공 ▶글로벌간호전공 ▶보건학전공 ▶전문간호(종양/노인)전공	50명
예술대학원 (서울)	▶공연영상학과 ▶예술경영학과 ▶미술·디자인학과	125명
심리서비스 대학원 (서울)	▶임상 및 상담심리학전공 ▶안전·리더십·코칭심리학전공 ▶범죄 및 법정심리학전공	50명
산업·창업 경영대학원 (안성)	▶유통산업전공 ▶지식경영전공 ▶창업경영전공 ▶창업컨설팅전공 ▶기후경제전공 ▶글로벌프랜차이즈전공	75명
국악교육대학원 (안성)	▶국악교육전공 ▶국악전문교육전공 ▶음악치료교육전공	40명

(별표 3-3) 특수대학원 계약학과 모집단위별 정원표 <신설 2012.9.20., 개정 2013.4.30.>

대학(원)	과정	학부(과)명	정원(명)	비고
인문사회계열 / 신문방송대학원	석사	차세대콘텐츠기획 전공	12	재교육형

(별 표 4) 학사 학위 과정 수여 학위 <개정 2012.9.20., 2012.11.24., 2013.6.18., 2014.2.6., 2014.4.24., 2014.9.25.>

대 학	학 과	학 위	비 고
인문대학 (서울)	국어국문학과	문학사	
	영어영문학과	문학사	
	유럽문화학부		
	(독일어문학전공)	문학사	
	(프랑스어문학전공)	문학사	
	(러시아어문학전공)	문학사	
	아시아문화학부		
	(일본어문학전공)	문학사	
	(중국어문학전공)	문학사	
	철학과	문학사	
사회과학대학 (서울)	역사학과	문학사	
	정치국제학과	정치학사	
	공공인재학부	정책학사	
		행정학사	
	심리학과	문학사	
	문헌정보학과	문헌정보학사	
	사회복지학부	사회복지학사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언론정보전공)	언론학사	
	(디지털미디어콘텐츠전공)	언론학사	
자연과학대학 (서울)	사회학과	문학사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경제학사	
	물리학과	이학사	
	화학과	이학사	
	생명과학부		
	(생명과학전공)	이학사	
	(의생명과학전공)	이학사	
	생명과학과	이학사	
	수학과	이학사	

대 학	학 과	학 위	비 고
공과대학 (서울)	사회기반시스템공학부 (건설환경플랜트공학 전공)	공학사	※공학교육인증프로그램이수자 토목공학사 건축공학사 화학공학사 기계공학사
	(도시시스템공학 전공)	공학사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건축학사	
	(건축공학전공)	공학사	
	화학신소재공학부	공학사	
	기계공학부	공학사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공학사	
창의ICT 공과대학 (서울)	전자전기공학부	공학사	전자전기공학사
	컴퓨터공학부 (컴퓨터공학전공)	공학사	컴퓨터공학사
	(소프트웨어전공)	공학사	
	융합공학부 (바이오메디컬공학 전공)	공학사	
	(나노바이오소재전공)	공학사	
	(디지털이미징전공)	공학사	
사범대학 (서울)	교육학과	문학사	
	유아교육과	문학사	
	영어교육과	문학사	
	가정교육과	가정학사	
	체육교육과	체육학사	
경영경제대학 (서울)	경영학부 (경영학전공)	경영학사	
	(글로벌금융전공)	경영학사	
	경제학부	경제학사	
	응용통계학과	통계학사	
	광고홍보학과	광고홍보학사	
	지식경영학부	지식경영학사	
	국제물류학과	국제물류학사	
	산업보안학과	산업보안학사	

대 학	학 과	학 위	비 고
약학대학 (서울)	약학부 (약학전공) (제약학전공)	전문약학사 전문약학사	
의과대학 (서울)	의학(예)부	의학사	
적십자간호대학 (서울)	간호학과	간호학사	
예술대학 (서울)	공연영상창작학부 (연극 전공) (영화 전공) (공간연출전공)	연극학사 영화학사 연극영화학사	
생명공학대학 (안성)	생명자원공학부 (동물생명공학전공) (식물시스템과학전공) 식품공학부 (식품공학 전공) (식품영양 전공) 시스템생명공학과	농학사 농학사 이학사 이학사 이학사	
경영경제대학 (안성)	경영학부 경제학부 지식경영학부	경영학사 경제학사 경영학사	
예술대학 (안성)	공연영상창작학부 (문예창작 전공) (사진 전공) (무용전공) 미술학부 (한국화 전공) (서양화 전공) (조소 전공) 디자인학부 (공예 전공)	문학사 미술학사 무용학사 미술학사 미술학사 미술학사 미술학사	

대 학	학 과	학 위	비 고
예 술 대 학 (안 성)	(산업디자인전공)	미술학사	
	(시각디자인전공)	미술학사	
	(실내환경디자인전공)	실내디자인학사	
	(패션디자인전공)	의류학사	
	음악학부		
	(작곡 전공)	음악학사	
	(성악 전공)	음악학사	
	(피아노 전공)	음악학사	
	(관현악 전공)	음악학사	
	전통예술학부		
	(음악예술 전공)	한국음악학사	
	(연희예술 전공)	한국음악학사	
체 육 대 학 (안 성)	스포츠과학부		
	(생활·레저스포츠전공)	체육학사	
	(스포츠산업 전공)	체육학사	
	(골프 전공)	체육학사	
*연 계 전 공	공기업관리	공기업관리학사	
	기술가정	기술가정학사	
	유통관리	유통경제학사	
	외식산업경영	외식산업경영학사	
	게임·애니메이션	정보학사	
	공공규범	공공규범학사	
*융 합 전 공	금융공학	금융공학사	
	문화콘텐츠	문화콘텐츠융합학사	
	창업학	창업학사	

(별 표 5) 일반대학원 수여학위(학술학위) <개정 2012.4.24., 2012.9.20., 2012.11.24., 2013.6.18., 2013.8.29., 2014.9.25., 2015.2.12.>

학과	석사학위	박사학위	비고
국어국문학과	문학석사	문학박사	
영어영문학과	문학석사	문학박사	
유럽문화학과	문학석사	문학박사	
일어일문학과	문학석사	문학박사	
심리학과	심리학석사	심리학박사	
철학과	문학석사	철학박사	
역사학과	문학석사	문학박사	
문헌정보학과	문헌정보학석사 기록관리학석사	문헌정보학박사 기록관리학박사	
교육학과	교육학석사	교육학박사	
유아교육학과	문학석사	문학박사	
영어교육학과	영어교육학석사	영어교육학박사	
법학과	법학석사	법학박사	
정치·국제학과	정치학석사	정치학박사	
행정학과	행정학석사	행정학박사	
경제학과	경제학석사	경제학박사	
경영학과	경영학석사	경영학박사	
무역물류학과	무역물류학석사	무역물류학박사	
회계학과	경영학석사	경영학박사	
사회학과	사회학석사	사회학박사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석사	사회복지학박사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언론학석사	언론학박사	
광고홍보학과	광고홍보학석사	광고홍보학박사	
도시계획·부동산학과	도시계획·부동산학석사	도시계획·부동산학박사	
산업융합보안학과	융합보안석사		
통계학과	통계학석사	통계학박사	
물리학과	이학석사	이학박사	
화학과	이학석사	이학박사	
생명과학과	이학석사	이학박사	
수학과	이학석사	이학박사	

학 과	석사학위	박사학위	비 고
동물생명공학과	농학석사	농학박사	
식품공학과	이학석사	이학박사	
시스템생명공학과	이학석사	이학박사	
식물시스템과학과	농학석사	농학박사	
식품영양학과	이학석사	이학박사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간호학박사	
약학과	약학석사	약학박사	
토목공학과	공학석사	공학박사	
건축학과	건축학석사	건축학박사	
화학신소재공학과	공학석사	공학박사	
기계공학과	공학석사	공학박사	
전자전기공학과	공학석사	공학박사	
컴퓨터공학과	공학석사	공학박사	
건축공학과	공학석사	공학박사	
가스·에너지플랜트공학과	공학석사	공학박사	
융합공학과	공학석사	공학박사	
음악학과	음악학석사	음악학박사	
한국음악학과	음악학석사	-	
디자인학과	디자인학석사	디자인학박사	
체육학과	체육학석사	체육학박사	
패션학과	패션학석사	-	
의학과	의학석사	의학박사	
	미술학석사		
조형예술학과	사진학석사	-	
	예술학석사		
공연예술학과	공연예술학석사	공연예술학박사	
<학과간협동과정>			
문화재학과	문학석사, 이학석사	이학박사, 문학박사	
문화연구학과	문화학석사	문화학박사	
독일유럽학과	문학석사		
스포츠산업정보학과	체육학석사	체육학박사	

학 과	석사학위	박사학위	비 고
창업학과	-	창업학박사	
에너지공학과	공학석사	공학박사	
문화예술경영학과	문화예술경영학석사	문화예술경영학박사	
인적자원개발학과		인적자원개발학박사	
동북아학과	동북아학석사	동북아학박사	
문학예술콘텐츠학과	문예학석사	문예학박사	
기계시스템엔지니어링학과	공학석사	-	
제약산업학과	약학석사, 제약산업경영학석사	-	
예술학과	-	예술학박사	
융합보안학과	융합보안학석사	융합보안학박사	
아동청소년학과	문학석사	문학박사	

(별 표 6) 전문 대학원 수여 학위(전문 학위) < 개정 2012.11.24., 2014.9.25. >

대 학 원	학 과	석사학위	박사학위	비 고
첨단영상 대 학 원	▶영상학과	영상학(제작)석사 ("이수전공명")	영상학박사 ("이수전공명")	
국 제 대 학 원	▶국제학과	국제학석사 ("이수전공명")	-	
	▶전문통·번역학과	통·번역학석사 ("이수전공명")	-	
경영전문 대 학 원	▶Global MBA ▶CAU-Leader MBA	경영전문석사 (MBA)	-	
법학전문 대 학 원	▶법학과	법학전문석사(JD)	법학전문박사(SJD) 법학박사(Ph.D)	

(별 표 7) 특수대학원 수여학위(전문학위) <개정 2012.11.24., 2013.6.18., 2013.8.29., 2014.9.25., 2015.12.2.>

대 학 원	학 과	학 위	비 고
사 회 복 지 대 학 원	▶사 회 복 지 학 과 ▶아 동 복 지 학 과 ▶청 소 년 학 과	사 회 복 지 학 석 사 (사 회 복 지 학) 문 학 석 사 (아 동 복 지 학) 문 학 석 사 (청 소 년 학)	
교 육 대 학 원	▶교 육 학 과	교 육 학 석 사 ("이 수 전 공 명")	
신 문 방 송 대 학 원	▶신 문 방 송 학 과	언 론 학 석 사 ("이 수 전 공 명")	
글 로 벌 인 적 자 원 개 발 대 학 원	▶인 적 자 원 개 발 학 과 ▶해 운 물 류 학 과	인 적 자 원 개 발 학 석 사 국 제 물 류 학 석 사	
건 설 대 학 원	▶방 재 안 전 및 유 지 관 리 학 과 ▶글 로 벌 EPC 학 과 ▶글 로 벌 건 설 엔 지 니 어 링 학 과	공 학 석 사 ("이 수 전 공 명") 공 학 석 사 (글 로 벌 EPC) 공 학 석 사 ("이 수 전 공 명")	
행 정 대 학 원	▶행 정 학 과 ▶다 문 화 정 책 학 과 ▶지 방 행 정 학 과 ▶복 지 행 정 학 과 ▶네 트 워 크 비 지 니 스 행 정 학 과 ▶도 시 마 케 팅 학 과	행 정 학 석 사 (행 정 학) 행 정 학 석 사 (다 문 화 정 책 학) 행 정 학 석 사 ("이 수 전 공 명") 행 정 학 석 사 (사 회 복 지) 행 정 학 석 사 ("이 수 전 공 명") 행 정 학 석 사 ("이 수 전 공 명")	
산 업·창 업 경 영 대 학 원	▶유 통 산 업 전 공 ▶지 식 경 영 전 공 ▶창 업 경 영 전 공 ▶창 업 컨 설 팅 전 공 ▶기 후 경 제 전 공 ▶글 로 벌 프 랜 차 이 즈 전 공	유 통 학 석 사 (유 통 산 업) 지 식 경 영 학 석 사 (지 식 경 영) 창 업 학 석 사 ("이 수 전 공 명") 창 업 학 석 사 ("이 수 전 공 명") 경 제 학 석 사 (기 후 경 제) 프 랜 차 이 즈 경 영 학 석 사 (글 로 벌 프 랜 차 이 즈 전 공)	
건 강 간 호 대 학 원	▶간 호 시 무 레 이 셴 전 공 ▶글 로 벌 간 호 전 공 ▶보 건 학 전 공 ▶전 문 간 호 전 공	간 호 학 석 사 간 호 학 석 사 보 건 학 석 사 간 호 학 석 사	
예 술 대 학 원	▶공 연 영 상 학 과 ▶예 술 경 영 학 과 ▶미 술· 디 자 인 학 과	예 술 학 석 사 예 술 경 영 학 석 사 예 술 학 석 사	

대 학 원	학 과	학 위	비 고
심리서비스 대 학 원	▶임상 및 상담심리학전공 ▶안전·리더십·코칭심리학전공 ▶범죄 및 법정심리학전공	심리학석사	
국악교육 대 학 원	▶국악교육전공 ▶국악전문교육전공 ▶음악치료교육전공	교육학석사("이수전공명")	

(별표 8) 교내 부설 연구소 <신설 2013.8.29., 2014.2.6., 2015.2.12.> (※ 가 나 다 순)

순번	연구소명	순번	연구소명
1	간호과학연구소	28	스포츠정보테크놀로지연구소
2	건설산업기술연구소	29	신기능이미징연구소
3	경영연구소	30	심장혈관연구소
4	경제연구소	31	약학연구소
5	광고PR연구소	32	언론문화연구소
6	교양교육연구소	33	에너지변환소프트소재연구소
7	국가대전략연구소	34	에너지안전연구소
8	국가정책연구소	35	에너지환경연구소
9	국익연구소	36	영어교육연구소
10	기초과학연구소	37	예술문화연구원
11	데이터과학연구소	38	외국학연구소
12	도시·부동산연구소	39	융합기술연구소
13	독일유럽연구센터	40	의약업경제정책연구소
14	동북아물류유통연구소	41	의학연구소
15	마이크로바이옴믹스연구소	42	인문과학연구소
16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43	일본연구소
17	미래신기술연구소	44	정보통신연구원
18	민족통일연구소	45	중앙사학연구소
19	방재연구소	46	중앙사회학연구소
20	법학연구원	47	중앙철학연구소
21	사회과학연구소	48	통역번역연구소
22	산업경영연구소	49	학교체육연구소
23	생명의학연구원	50	한국교육문제연구소
24	생명환경연구원	51	한국문화유산연구소
25	생분자시스템연구소	52	한국인적자원개발전략연구소
26	스토리텔링콘텐츠연구소	53	한국전자무역연구소
27	스토리텔링연구소	54	회계연구소
		총 54 연구소	

(별지 제1호 서식)

학 제 호

학 위 증

성 명 :
19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이 대학교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여 아래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 학위증을 수여함

제1전공 : ○○○○대학 ○○○○학과(부) ○○○○전공
학위명 : ○○○○학사

제2전공 : ○○○○대학 ○○○○학과(부) ○○○○전공
학위명 : ○○○○학사

제3전공 : ○○○○대학 ○○○○학과(부) ○○○○전공
학위명 : ○○○○학사

부 전 공 : ○○○○대학 ○○○○학과(부) ○○○○전공

년 월 일

중 앙 대 학 교 총장 (학위) ○ ○ ○(직인)

학위번호 : 중앙대 ○○○○ 학 ○○○○

(별지 제2호 서식)

석 제 호

학 위 기

성 명 :

19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이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학과 전공)을 이수한 후 소정의 시험에 합격하고
논문심사에 통과하여 ○○○학 석사의 자격을 갖추
었으므로 이를 인정함

년 월 일

중앙대학교 ○○○○대학원장 ○○○박사 ○○○(직인)

위의 인정에 의하여 학 석사학위를 수여함

중 앙 대 학 교 총장 ○○○박사 ○○○(직인)

학위번호 : 중앙대○○○○ 석○○○○

(별지 제3호 서식)

박 제 호

학 위 기

성 명 :

19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이 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과정
(학과 전공)을 이수한 후 소정의 시험에 합격하고
논문심사에 통과하여 ○○○학 박사의 자격을 갖추
었으므로 이를 인정함

년 월 일

중앙대학교 ○○○○대학원장 ○○○박사 ○○○(직인)

위의 인정에 의하여 학 박사학위를 수여함

중 앙 대 학 교 총장 ○○○박사 ○ ○ (직인)

학위번호 : 중앙대○○○○ 박○○○○

(별지 제4호 서식)

명박 제 호

학 위 기

성 명 :

19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인류문화발전에 지대한 공적을 쌓았을 뿐만
아니라 에 공헌하였으므로 이 대학교 총장은 대학원
장의 추천에 의하여 명예 박사 학위를 수여함

년 월 일

중앙대학교 대학원장 ○○○박사 ○ ○ ○(직인)

중앙대학교 총 장 ○○○박사 ○ ○ ○(직인)

학위번호 : 중앙대○○○○ 명박○○○○

(별지 제5호 서식)

○ ○ 원
제 호

증 서

성 명 :
19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이 대학교 ○○대학원 ○○분야에 관한
소정의 연구과정을 이수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중앙대학교 대학원장 ○○○박사 ○ ○ ○(직인)

중앙대학교 총 장 ○○○박사 ○ ○ ○(직인)

(별지 제6호 서식)

○ ○ 원
제 호

증 서

성 명 :
19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이 대학교 (부설) ○○대학원
(○○교육원) ○○ 과정(○학점)을 수료하였음을 증명함

년 월 일

중앙대학교 ○○○○대학원장 ○○○박사 ○○○(직인)

[중앙대학교 부설 ○○○교육원 원 장 ○ ○ ○(직인)]

중앙대학교 총장 ○○○박사 ○ ○ ○(직인)

● ● ● ● ●
행정대학원

- ▶ 교육목적
- ▶ 연혁
- ▶ 역대원장
- ▶ 행정기구
- ▶ 교수진
- ▶ 교과과정
- ▶ 학사내규



행정대학원

1. 교육목적

"의에 죽고 참에 살자"라는 교훈으로 중앙대학교의 창학 정신에 입각하여 우리 사회의 변동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 새로운 시대에 요구되는 참신한 이념과 방향을 정립하고 각 분야에서 요구되는 개혁과 발전을 위한 제 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유능한 행정 관리자 양성을 목적으로 함.

2. 연 혁

1988년 11월	행정대학원 설립인가
1989년 3월	초대 원장에 한영환 교수(법대 행정학과)취임
1990년 1월	교육부로부터 20명 증원을 인가 받음 (총정원 80명)
1990년 5월	학생회관 5층으로부터 신축 법과대학 건물로 이전
1990년 10월	문교부로부터 10명 증원을 인가 받음 (총정원 90명)
1991년 12월	[행정연구] (년 1회 발간)창간
1992년 3월	제2대 원장에 김규정 교수(법대 행정학과)취임
1992년 9월	고위정책과정(6개월 과정) 개설
1993년 2월	교육부로부터 20명 증원을 인가 받음 (총정원 110명)
1993년 5월	[정책연구] (년 1~2회 발간) 창간
1994년 3월	고위정책과정(1년과정) 개설
	제3대 원장에 구광모 교수(법대 행정학과) 취임
1994년 9월	[행정대학원 소식] (학기별 3~4회 발간) 창간
1995년 3월	[행정대학원 요람] (격년발간) 창간
1995년 10월	교육부로부터 10명 및 국제행정학과 신설인가 받음 (총정원 120명)
1996년 3월	제4대 원장에 이상윤 교수(사회과학대 행정학과) 취임
1998년 3월	제5대 원장에 서헌제 교수(법대 법학과) 취임
1998년 9월	제6대 원장에 황윤원 교수(사회과학대 행정학과) 취임
1999년 2월	자치행정학과를 지방행정학과로 명칭변경, 북한행정학과 폐지, 복지행정학과 신설
2000년 10월	제7대 원장에 이규환 박사(법대 행정학과) 취임
2001년 3월	석사과정 6개학과 학생정원 220명 재학중
2004년 3월	지방행정학과와 도시환경행정학과를 통합하여 도시환경 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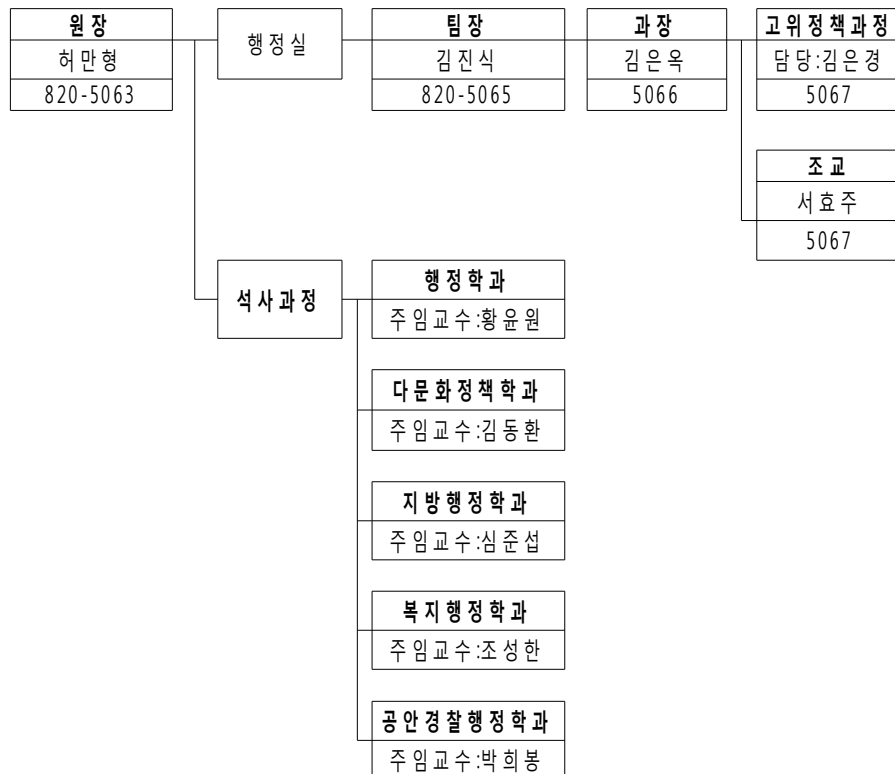
		지방행정학과로 명명, 네트워크비즈니스행정학과 신설
2005년	3월	제8대 원장에 이용규 박사(정경대 행정학과) 취임
2005년	8월	사법행정학과 폐지
2006년	8월	네트워크비즈니스행정학과 모집중단
2007년	2월	제9대 원장에 박흥식 박사(정경대 행정학과) 취임
2007년	3월	영등포구 고위정책과정 신설
2008년	2월	도시환경 및 지방행정학과를 지방행정학과로 명칭 변경, 도시마케팅학과, 문화예술행정학과 신설
2009년	1월	제4기 영등포구 고위정책과정 수료
2009년	2월	제10대 원장에 이규환 박사(정경대학 행정학과) 취임
2009년	3월	강서최고지도자과정 개설
2009년	12월	개원20주년 기념 송년의 밤 개최
2010년	8월	제3기 강서최고지도자과정 수료
2011년	2월	제11대 원장에 이규환 박사(공공인재학부) 취임
2011년	8월	제41회 석사과정 학위수여식(석사935명 배출)
2011년	8월	제38기 고위정책과정 수료식
2012년	2월	문화예술행정학과 폐과
2012년	9월	경찰행정학과 신설
2012년	12월	고위정책과정 개설 20주년 기념식 개최
2013년	2월	네트워크비즈니스학과 폐지
2013년	2월	도시마케팅학과 폐지
2013년	3월	경찰행정학과를公安경찰행정학과로 명칭 변경
2014년	3월	정책학과 명칭변경(다문화정책학과)
2014년	1월	제12대 원장 김동환 박사(사회과학대학 공공인재학부) 취임
2015년	3월	제13대 원장 허만형 박사(사회과학대학 공공인재학부) 취임

3. 역대원장

1989년	3월	초대원장에 한영환 박사(법대 행정학과) 취임
1992년	3월	제2대 원장에 김규정 박사(법대 행정학과) 취임
1994년	3월	제3대 원장에 구광모 박사(법대 행정학과) 취임
1996년	3월	제4대 원장에 이상윤 박사(사회과학대 행정학과) 취임
1998년	3월	제5대 원장에 서헌제 박사(법대 법학과) 취임
1998년	9월	제6대 원장에 황윤원 박사(사회과학대 행정학과) 취임

2000년 10월	제 7대 원장에 이규환 박사(법대 행정학과) 취임
2005년 3월	제 8대 원장에 이용규 박사(정경대 행정학과) 취임
2007년 2월	제 9대 원장에 박흥식 박사(정경대 행정학과) 취임
2009년 2월	제 10대 원장에 이규환 박사(정경대 행정학과) 취임
2011년 2월	제 11대 원장에 이규환 박사(공공인재학부) 취임
2014년 1월	제 12대 원장 김동환 박사(사회과학대학 공공인재학부) 취임
2015년 3월	제 13대 원장 허만형 박사(사회과학대학 공공인재학부) 취임

4. 행정기구



5. 교 수 진

● 전임교수

성명	전공분야	최종학력	e-mail	연락처
김동환	다문화정책학	고려대학교	sddhkim@cau.ac.kr	02)820-5831
박치성	행정학	University of Pittsburgh	csp7111@cau.ac.kr	02)820-5458
박홍식	조사방법론	Florida International University	hspark@cau.ac.kr	02)820-5446
박희봉	행정학	Temple University	hbpark@cau.ac.kr	02)820-5451
심준섭	행정입법고시반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Albany	jsshim@cau.ac.kr	02)820-5833
이규환	행정학	중앙대학교	leekh@cau.ac.kr	02)820-5444
이용규	행정학	Florida International University	james@cau.ac.kr	02)820-5443
조성한	행정학	University of Chicago	johanju@cau.ac.kr	02)820-5512
허만형	정책학	University of Colorado, Denver	mhhur@cau.ac.kr	02)820-5878
홍준현	공기업관리연계	University of Pittsburgh	jhhong@cau.ac.kr	02)820-5832
황윤원	행정학	University of Pittsburgh	ywhwang@cau.ac.kr	02)820-5990

● 비전임교원

구분	성명	전공분야	최종학력	e-mail
석좌교수	김덕중	현대사회와조세	서울대학교	dkim59@yahoo.com
강의전담교수	백선아	다문화사회교수 방법론	중앙대학교	100_sunah@hanmail.net
	송용찬	도시행정론	중앙대학교	syc2070@naver.com

6. 교과과정

학 과	구 분	교 과 목
행 정 Public Administration	전공분야	행정관리전공,공기업전공,사법행정전공,병원행정전공
	전공과목 I	한국행정론,인사행정론,조직관리론,재무행정론
	전공과목 II	전략기획론,정부회계론,행정혁신론,공기업론,행정사례연구,자료분석론,정책형성및결정론,정책평가론,지방자치론,문화예술행정의이해,지역문화정책론,정치학개론,한국정치론,현대사회와법,행정과공법,리더십론,시스템사고,협상론,NGO론,가족관계법,행정통제론,미래정부론,현대사회와조세,국제개발협력론,행정정보체계론,정책사례연구
지 방 행 정 Local Administration	전공분야	도시행정전공,환경행정전공,지방자치전공
	전공과목 I	지방자치론,지방재정론,도시행정론,지역개발론
	전공과목 II	지방경영론,지역문화정책론,도시마케팅론,행정혁신론,전략기획론,조직관리론,인사행정론,정부회계론,정책형성및결정론,정책평가론,자료분석론,관광산업정책론,투자유치론,문화예술행정의이해,문화예술산업론,문화소비자론,현대사회와법,공법과행정,리더십론,시스템사고,협상론,NGO론,현대사회와조세,국제개발협력론,정책사례연구
복 지 행 정 Welfare Reward Administration	전공분야	사회복지전공
	전공과목 I	사회복지개론,인간행동과사회환경,사회복지정책론,사회복지법제,사회복지실천론,사회복지실천기술론,사회복지조사론,사회복지행정론,지역사회복지론,사회복지현장실습 (택6)
	전공과목 II	아동복지론,청소년복지론,노인복지론,장애인복지론,여성복지론,가족복지론,산업복지론,의료사회사업론,학교사회사업론,정신건강론,교정복지론,사회보장론,사회문제론,자원봉사론,정신보건사회복지론,사회복지지도감독론,사회복지자료분석론,프로그램개발과평가,사회복지발달사,사회복지윤리와철학 (택2)
공 안 / 경 찰 행 정 Department of Public Security & Police Administration	전공분야	경찰행정전공,범죄과학수사전공,경호비서전공
	전공과목 I	범죄수사론,사이버포렌식론,범죄학론,경호관리론
	전공과목 II	경호현장운용론,범죄학개론,경찰학세미나,범죄예방론,범죄자프로파일링,범죄예방론,범죄과학수사론,범죄심리학,사회문제론,범죄자프로파일링,경호경비관계법,경호경비기획론,경호경비산업론,경호경비실무론,경호정보보안론,기계경비운용론,위기및재난관리론,경호학세미나,테러범죄의이해,포렌식과법률,범죄수사기법,경찰조직관리,경찰행정법,사이버범죄수사론,범죄학론,소송절

학 과	구 분	교 과 목
		차법,안전관리론,경호기획론,테러리즘대책론,리더십론,시스템사 고,안보정책론,자료분석론,전략기획론,사이버보안기술론,민간산 업경비론
다 문화 정책 Department of Multicultural public policy	전공분야	다문화정책전공
	전공과목 I	이민정책론,이민법제론,다문화사회교수방법론,한국사회의다문 화현상 이해,이민/다문화가족복지론,국제이주와노동정책,이민/ 다문화현장실습
	전공과목 II	아시아사회의 이해,해외동포사회의 이해,지역사회와사회통합,이 주노동자상담과실제,다문화가족의상담과실제,다문화(사회)교육 론,노동법,국제인권법,가족법,국제이주와사회통합,(이주민을위 한)한국어교육론,이중언어교육론,다문화교육현장사례연구,석사 논문연구,국제이주와젠더
공 통	공통필수	현대국가와행정,현대사회와정책,정보사회와행정,조사방법론 논문작성법

현대국가와 행정

이 과목은 행정학에 대한 학문적 기초를 다지는데 의의가 있다. 행정을 국가라는 맥락에서 이해하고 국가란 무엇이며 현대국가는 행정에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에 대하여 탐구한다.

현대사회와 정책

본 과목에서는 정책 결정과 집행 및 정책 평가에 관련된 기초 개념과 이론들을 종합적으로 학습한다. 또한 정책학의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고, 이러한 개념이 현실의 정책을 이해하는데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를 살펴본다.

정보사회와 행정

본 과목에서는 공공부문 연구 및 실천에 필요한 컴퓨터 이론과 정보정책, 정보기술, 정보시스템 개발, 정보사회 등에 대하여 배운다. 특히 행정 정보화 및 국가 간 데이터 통신 등을 논의함으로써 정보사회에 대한 현실적 대응력을 배양하는 데 초점을 둔다.

조사방법론

행정현상을 분석함에 있어서 어떻게 문제를 구성하고, 조사 설계를 하며, 구체적으로 이에 대한 자료수집 활동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이론과 방법들을 학습한다.

논문작성법

석사학위 논문작성에 필요로 하는 체계와 논문작성 시 착안사항을 지도한다. 석사학위논문의 수준제고를 위하여 주제별 논문작성의 목적과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을 사례중심으로 작성요령을 지도하며, 특히 문헌연구방법과 실증적 조사연구의 차이점과 논문작성 시 활용방안 등을 지도한다.

한국행정론

한국정부의 구조적, 제도적 측면과 실제적 운영 실태를 통시적으로 고찰한다. 특히 한국의 행정체제를 역사적, 문화적, 생태적 기반을 토대로 이해하고 이를 통하여 한국 행정학의 토착화 가능성을 탐색한다.

인사행정론

이 과목에서는 인사행정기관, 인사행정과 환경의 문제뿐만 아니라 정부 각 부처 공무원들의 선발, 근무의욕, 능력개발, 신분보장 및 처우개선 등에 관한 내용이 강의된다.

조직관리론

이 과목은 조직관리론과 조직에 대한 기본이론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직의 구조적 특성과 구성원의 행태를 분석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배양하는데 초점을 둔다.

재무행정론

본 강의에서는 예산 관련 기초이론, 예산과정 및 제도개혁에 관하여 논의한다. 특히 정부예산상의 문제점들에 대한 경제적, 정치적, 기술적 접근을 통하여 현실적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대안과 관련한 기준 제시능력 등의 배양에 초점을 둔다.

전략기획론

정책기획의 개념, 기획의 형태, 작성과정, 기획가의 역할을 논의하고, 최근의 기획이론 동향을 소개한다. 미래예측 방법과 공공프로그램의 분석기법 등을 알아봄으로써 분석적 사고를 키우고, 이러한 기법들을 실제로 활용하여 정책기획을 수행하는 방안들에 대해 논의한다.

정부회계론

본 정부회계론 과목은 최근 정부가 도입하고 있는 복식부기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 예산제도, 정부회계변천 과정 및 재무제표에 대한 이해를 통해 정부회계에 관한 기초 개념을 배운다.

행정혁신론

본 과목은 공공관리적 혁신 접근방법을 소개한다. 한국과 외국의 대표적인 행정혁신 사례를 분석적으로 논의하고, 혁신이론, 행정의 리더십, 정책결정체제의 합리화, 행정의 효율성, 정보기술의 활용 및 세계적 흐름을 조망하며, 분야별 개혁내용을 검토한 후, 사례분석을 통해 행정실무에 대한 시사점 등에 대해 강의한다.

공기업론

이 강의에서는 공기업의 책임경영과 민영화사례 등을 알아보고, 우리나라와 주요국들의 공기업 제도와 운영을 비교함으로써, 21세기 국제화와 지방화시대에서의 경영혁신 전략 및 민영화 문제를 검토한다.

행정사례연구

행정학의 일반이론들을 기초로 개별 사례들을 분석하고, 과학적인 분석과 연구를 통하여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자료분석론

본 과목은 행정 자료를 계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기초적 분석이론을 습득하고, 이를 바탕으로 t-test, 분산분석(ANOVA), 공분산분석(ANCOVA), 카이제곱검증, 단순회귀분석, 다중회귀분석 등의 분석기법에 대해 배운다.

정책형성 및 결정론

정책형성의 문제의식, 조사연구, 정책입안, 참여, 심의과정과 정통성 부여 등을 연구하며, 이와 함께 합리적 선택의 논리구조를 검토한다. 특히 정책의 복잡성, 불확실성, 모호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구하며, 학습과정으로서 정책결정의 개선과 진화의 조건을 탐구한다.

정책평가론

본 과목은 공공정책에 대한 평가능력을 향상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공공정책 평가에 이용되는 다양한 계량적 기법과 이론들을 익히고, 나아가 정책평가 기법들이 실제 사례들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공공정책 평가의 현실과 문제점을 탐구한다.

지방자치론

본 강의는 우리나라의 중앙 정부와 지방 자치단체간의 관계,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정책의 개발, 집행과 재정 등에 대하여 논의한다. 특히 현실적으로 당면한 지방자치 관련문제들을 중점적으로 토의하여 참여자의 현실 대응력을 배양시키는데 초점을 둔다.

문화예술행정의 이해

문화예술의 사회적 기능과 현대사회에서 문화산업이 갖는 의의를 살펴보고, 문화예술에 대한 정부개입의 정당성, 목적, 범위, 정책수단 등에 대해 분석한다. 또한 문화정책의 논리를 이해하며 부문별 정책의 내용을 파악하고자 한다.

지역문화정책론

지역문화정책의 역할 및 중요성, 관련이론을 학습하고, 국내·외의 동향들을 고찰하며, 향후 지역문화정책의 발전 방향에 대해 연구한다.

정치학개론

본 과목에서는 현대정치에서 발견되는 주요 정치현상에 대하여 비판적 이해를 도모하고, 정치사상, 정치이론, 국제정치, 한국정치 등 정치학에서 다루는 정치학의 핵심개념 및 주제들에 대해 연구하고 토론한다.

한국정치론

본 과목은 한국정치에 대한 연구, 분석을 통해 한국정치의 주요 쟁점을 이해하고, 한국정치 및 사회발전을 위한 체계적인 사고와 대안을 논의한다.

현대사회와 법

본 과목에서는 공공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핵심을 차지하는 법률에 대해 공공서비스 제공 관련 갈등과 최근의 법 적용 사례들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현대사회의 이해관계의 갈등이 어떻게 일어나고, 법적으로 어떻게 해결되는지 살펴본다.

행정과 공법

강의는 현대행정에 대한 공법적 규율의 내용을 행정법이론을 중심으로 행정법의 의의, 기본원리에 대해 고찰하고, 판례를 중심으로 현대행정에 대한 법적 규제의 기준과 방법을 파악함으로써 법치행정의 원리가 구현되는 법적 메커니즘에 대하여 논의한다.

리더십론

본 과목은 리더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성품과 자질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논의하며, 선진국과 한국의 리더들이 발휘한 리더십을 익히고, 현대사회에서 요구하는 리더가 가져야하는 준비사항에 대하여 탐구한다.

시스템 사고

시스템 다이내믹스(System Dynamics)와 시스템을 변화시킬 수 있는 피드백 루프를 탐색하고, 현실 정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략을 발견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협상론

본 과목에서는 현대사회에서 정부와 이익집단들 간의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수단, 즉 협상에 대한 이론적 기반을 탐구하고, 실제적인 틀과 경험적인 사례를 연구·분석 및 검토한다.

NGO론

본 과목은 현대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NGO의 등장 배경, 정부와 관계, 유형, 활동 분야, 글로벌 시민사회에서의 이들의 역할과 의미 등을 탐구한다. 또한 NGO의 다양한 역할을 분석하고 NGO부문의 활성화에 따른 정책적인 이슈와 함께 한국 및 각국의 NGO의 탄생과 활동에 대하여 논의한다.

가족관계법

가족법은 재산법과 더불어 민법의 양대 영역을 이루고 있는 법으로서 특히 신분관계를 규율하는 가족법의 특성을 인식하고 오늘날 발생하는 가사사건(혼인관계·이혼·양육권·상속·유언 등)의 예 대한 실제적인 사례 분석을 통하여 과목전반의 체계적 이해를 지향한다.

미래정부론

국가운영의 주요한 한 축인 정부의 바람직한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인접한 정치와 시장 그리고 시민사회 등과 관련한 이론과 개념을 살펴보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추구할 바람직한 미래의 정부모습을 고찰하고자 한다.

행정통제론 행정통제의 의미와 행정통제의 이론모형, 행정기관 자체의 내부통제와 입법 및 사법통제 등의 전통적인 외부통제, 시민통제 등 최근 행정통제 경향 등을 학습하고 관련 사례들의 분석을 통해 행정통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행정통제이론의 발전을 탐구한다.

국제개발협력론

ICT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물리적 국경이 없어지고 정치, 경제, 문화적 상호의존이 심화되는 작금의 글로벌 환경에서 국제개발협력의 전반적인 학문적 영역을 다루어 세계시민의 글로벌 역량을 함양하는데 본 과목의 목적이 있고 국제개발협력의 실증적 역사를 통하여 본연의 목적과 분야 그리고 역사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이를 통한 글로벌 인류의 핵심가치를 고찰한다. 특히 현재의 정부와 기업 그리고 시민단체를 통한 다양한 국제개발협력의 사례를 살펴보고 국제개발협력의 명확한 가치진단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행정정보체계론

행정공무원이나 민간기업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현재 사용되고 있는 정보기술을 비롯하여 정보시스템, 정보통신정책 등에 대하여 논의하고자함. 특히, 대학을 졸업하시고 수년이 흐른 분들이 새로운 정보통신기술 자체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통신과 정보처리와 관련된 다양한 기술에 대하여 논의한다.

현대사회와 조세

현대사회에서 조세는 다양한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동서고금의 국가재원 조달의 핵심적인 수단, 민주시민으로서 당연히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과목이며 조세제도의 형성과 세무행정의 실상을 이해하도록 실무경험을 학생들과 공유하는 등 토론식 수업도 병행한다.

정책집행과 평가

정책 집행 및 평가에 관한 이론을 소개하고 현실에서 어떠한 쟁점이 있는지를 논의한다. 본 과목을 통하여 정책 집행 및 평가에 있어서 어떠한 핵심적인 개념이 있는지를 이해함으로써, 현실에서 정책을 논의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운다. 정책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고, 정책 뿐만 아니라 기업의 의사결정에도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한다.

지방자치론

본 강의에서는 우리나라의 중앙 정부와 지방 자치단체간의 관계,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정책의 개발, 집행과 지방 재정 등에 대하여 연구한다. 특히 현실적으로 당면한 지방자치 관련 문제들을 중점적으로 토의하여, 참여자의 현실 대응력을 배양시키는 데 초점을 둔다.

지방재정론

본 과목은 지방자치제도 하에서의 지방재정을 이해하고, 국가재정과 지방재정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지방자치단체의 세입과 세출의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 등을 검토 한다. 또한, 지방재정의 구조와 특성을 밝히고 중앙정부재정과의 관계(자립도 정도)를 규명하고, 토론한다.

도시행정론

본 강의에서는 도시 정부의 형태, 도시 행정 서비스의 공급, 인사, 재무행정, 도시권 광역행정에 관한 이론과 현실 문제에 대한 분석을 통해 도시정책의 입안, 평가에 대하여 탐구한다. 이를 위해 도시 및 도시화, 도시성장과 관련된 제반 이론과 더불어 도시문제를 분석하기 위한 분석기법을 습득하고, 도시주택, 도시빈곤, 도시교통, 도시환경 등 각 부문별 도시정책에 대해 논의한다.

지역개발론

지역성장과 개발정책과 관련된 제 이론을 살펴봄으로써 지역개발의 역할과 기능을 정립 하고, 정책적 차원에서 우리나라와 외국의 경험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지역개발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지방경영론

본 과목은 효율성과 생산성의 제고를 추구하는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지방행정을 경영의 관점에서 접근하여 지방경영의 의미와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방행정 서비스의 다양한 제공 방식들에 대해 탐구하며, 지방정부의 제도 및 관리, 정책형성을 통한 지역경영의 논리를 개발, 분석한다.

지역문화정책론

지역문화정책의 역할 및 중요성, 관련이론을 학습하고 국내·외의 동향들을 고찰하며, 향후 지역문화정책의 발전방향에 대해 연구한다.

도시마케팅론

본 과목에서는 행정기관에서 적용 될 수 있는 마케팅 이론과 기법, 적용분야, 경영마케팅과의 차이, 지역도시 마케팅 환경의 특수성, 각국의 성공적 사례 등에 대하여 연구한다.

관광산업정책론

관광산업정책의 기본이념과 목적, 필요성, 과정 및 분석, 집행, 평가에 대해 학습하고, 국내·외 관광산업정책의 고찰을 통하여 향후 수행해야 할 관광산업정책을 연구한다.

투자유치론

본 과목은 지방자치의 본격적인 실시와 더불어 강조되고 있는 지방정부의 발전전략으로서의 투자유치에 관하여 논의한다.

문화예술산업론

본 과목에서는 문화산업의 특성과 환경분석, 가치사슬(창작기획·제작·유통·소비)의 이해, 각 산업장르별 이해(애니메이션, 게임, 캐릭터, 만화, 음악 등), 국내외 문화산업 동향, 정부의 정책 등에 대해 논의한다.

문화소비자론

본 과목에서는 문화소비자의 인지, 태도, 행동에 이르는 과정에 대한 기초이론들을 학습 하고 이를 통하여 현상을 분석한다. 또 문화브랜드에 대한 설계와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문화소비자의 심리와 행동을 분석한다.

사회복지개론

사회사업과 사회복지의 개념을 탐색하고, 사회문제와 개인의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한다.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인간의 행동 및 사회환경을 설명하는 기초적 이론들을 학습한다. 또한 인간발달에 있어서 각 단계의 특징과 과업에 대해 이해하고, 각 단계에서 경험하게 되는 문제에 대해 연구 및 학습한다.

사회복지정책론

사회정책을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기본적 가정, 이론, 가치를 검토하고, 정책 프로그램과 정책사례를 비교 및 분석한다.

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법의 본질과 법적 지위에 대해서 학습하고, 다른 법과의 관련성을 고찰하며, 이를 바탕으로 현행 한국의 사회복지법을 종합적으로 분석 및 검토한다.

사회복지실천론

개인과 가족, 나아가 집단의 사회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회복지사가 숙지해야하는 다양한 실천기술, 기법, 지침 등을 중점적으로 학습한다.

사회복지실천기술론

개인상담, 가족상담, 집단상담의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기술에 대해 학습하고, 나아가 이와 같은 실천기술을 직접적인 임상실습을 통해 연습한다.

사회복지조사론

사회현상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 및 이해를 가능하게 하는 방법과 조사절차를 학습하고, 이를 통해 사회문제를 발견해내고 사회복지 분야에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의 대상자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 기관 및 조직의 의사결정, 계획통제, 예산 자원동원 등의 기술을 학습한다.

지역사회복지론

지역사회 조직의 개념, 목적, 요소 및 과정에 대해 폭넓게 이해하고, 지역사회의 지도체계와 인간관계에 대해서 연구 및 검토한다.

사회복지현장실습

직접 사회복지 현장에 투입되어 실무를 경험함으로써 전공 과정에서 학습한 사회복지 관련 지식 및 기술을 현실에 적용하고 체계화하는 기회를 갖고, 이를 통하여 전문 사회복지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아동복지론

아동에 대한 행복감과 잠재력의 극대화 및 건강한 성장을 위한 사회적, 경제적, 보건적 제반 대책, 그리고 이의 수립에 필요한 철학, 이론 방법 및 기법을 연구한다.

청소년복지론

청소년의 복지와 관련한 이론과 전문적인 접근방법에 대해 소개하고, 국내외 청소년복지의 동향에 대해 학습하며, 향후 과제에 대해 연구, 토론한다.

노인복지론

노인문제의 발생과 그 문제의 성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사회복지 차원에서의 해결법에 대해 연구한다.

장애인복지론

장애인의 문제와 욕구를 해결할 수 있고, 장애인의 재활을 통해 향후 사회에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며 실천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해 연구한다.

여성복지론

여성문제와 복지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이론적 배경 및 실천 방안에 대해 학습하고, 국내외 여성복지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향후 여성복지 분야의 사회복지사로 활동,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가족복지론

가족의 복지적인 기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가족 및 가족복지에 대한 관점, 가족문제의 고찰, 가족복지의 방법, 가족지원 대책에 대해 등에 탐구하고 논의한다.

산업복지론

조직 내 인간관계, 개인적응 문제. 노사관계와 관련된 이론을 고찰하고, 효율적인 기업 운영과 근로자를 위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대해 연구, 토론한다.

의료사회사업론

보건의료 분야에 전문 사회복지사 참여의 필요성에 대한 이론적 근거, 관련제도, 참여 영역, 기능 및 역할에 대해 학습한다.

학교사회사업론

학교를 아동 및 청소년의 사회복지를 실천하는 전문적인 영역으로 설정하고, 이에 따른 학교 사회사업의 필요성과 개념, 실천대상과 방법 및 관련 기술들을 학습한다.

정신건강론

정신건강 및 장애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돕기 위해 심리·정신적 측면과 사회복지적 시각에 의한 다양한 정신장애의 유형을 살펴보고 치료적 접근을 모색해 본다.

교정복지론

교정복지의 개념과 필요성, 행형 및 교정제도 등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함께 교정제도와 정책 프로그램에 대한 사회복지의 관련성 및 중요성을 학습하고 교정복지의 실천 방법에 대해 연구한다.

사회보장론

사회보장의 발전과정과 이론, 원칙, 제도에 대해 학습하고, 이를 통하여 국내 사회보장 제도의 문제점과 향후 개선방향에 대해 연구한다.

사회문제론

사회현상이 어떻게 사회문제로 규정되는가 하는 사회학의 기본적인 문제를 탐구하고, 빈곤, 범죄, 불평 등 다양한 사회문제의 원인, 과정, 결과에 관한 지식을 갖추도록 돕는다.

자원봉사론

사회복지 영역에서 자원봉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고, 자원봉사자 활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및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의 배양을 돕는다.

정신보건사회복지론

정신건강 영역에서 정신질환자나 그 가족 및 공동체를 원조하는 정신보건사회복지사의 역할을 파악하고,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재활을 증진시키는 전문적인 지식을 학습한다.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사회복지기관에서 상당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회복지사가 기관의 초임 사회복지사나 실습생을 지도하는데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학습한다.

사회복지자료분석론

사회현상을 과학적으로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는 방법 및 조사과정을 학습하고, 이를 통해 사회문제나 현상을 측정하고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프로그램개발과 평가

사회복지사가 프로그램을 통해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기획, 운영 및 평가 등과 관련한 내용을 학습한다.

사회복지발달사

역사적인 관점에서 사회복지의 발전과정을 고찰하고, 이를 통해 사회복지의 이념, 철학과 대책, 방법 등에 대해 연구한다.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사회복지이론과 실천에 기본이 되는 가치와 철학, 그리고 윤리를 학습하고, 실천현장에서 갖추어야 하는 전문가로서의 가치와 윤리에 대해 탐구, 토론한다.

경호현장운영론

공안경찰행정학과 전공1

이 과목에서는 경호업무에 적용되는 개념을 이해하고 공경호 민간경호에서 적용하는 기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며 경호 현장의 산재한 위해 위험 요인을 분석 평가하여 경호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

범죄학개론

범죄학에 대한 개념, 범죄원인의 해명, 발생범죄검거,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범죄, 그리고 범죄통제를 위한 형사사법기관등의 활동들에 대하여 학습케하여 원활한 사회생활과 직무수행을 하도록 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

경찰학세미나

경찰의 이념 및 역사,조직,인사,작용,근거법령,외국의 경찰제도등에 대한 심층적인 학습 및 시민지향적인 경찰작용을 모색한다.

범죄예방론

성폭력 범죄, 문지마 범죄, 지역사회 경찰활동, 학교 폭력예방, 주택 등 주거환경 설계에 의한 범죄예방 등의 경찰활동의 주요한 활동에 대해 학습한다.

범죄자 프로파일링

범죄의 재구성, 피해자의 신체 및 심리상태 분석, 수사면담기법 등을 다루는 학문으로 범죄자 프로파일링에 관한 전반적인 것을 학습한다.

사이버보안기술론

IT가 일상 생활 속에 함께하는 시대 속에서 IT기기로 인한 다양한 보안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정보보호의 필요성과 정보보호의 영역을 알아본다. 또한 정보보호에 대한 기술적인 세부영역에서 다루고 있는 특징들을 살펴봄으로 비 전공자들이 정보보호 영역에 대한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발전시켜야 할지를 고민해 본다.

민간경비산업론

경찰의 부족한 치안 업무역량을 민간경비업무와 연계방안을 검토하는 등 한국민간경비 산업의 질적성장과 국민안전을 위한 치안업무강화를 위한 방안, 한국민간경비산업의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민간경비산업의 양적 질적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과목이다.

경호경비관계법

경호경비업무수행을 위한 법적인 제반사항과 경호경비 관계법의 특성과 법원에 대하여 검토하고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경찰관계법, 경비업법 등의 내용과 민간경호경비업체의 사건, 사고 처리절차와 결과를 중심으로 연구한다.

경호현장운용론

경호임무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 연구하고, 첩보와 정보수집을 통한 위해분석 및 대처방안을 모색하고, 경호계획서 작성방법, 현장답사와 안전대책, 우발상황발생 시 조치요령, 경호 실시 후 결과의 평가와 보고서 작성방법 등과 같은 경호운용 시 필수 내용에 관하여 강의하기로 한다.

경호경비기획론

경호경비업체 운영에 따른 경비업법과 연계를 바탕으로 경호경비원의 배치, 신고 및 업무수행 방법과 절차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경호경비임무 수행 중 발생 될 수 있는 문제점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경호경비산업론

민간경비의 현황 및 운영실태를 분석하여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공경호경비의 비교 분석 및 외국 경호경비 산업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경호비서실무론

현대사회에서 경호는 의전과 예절을 바탕으로 경호대상자의 신변보호 뿐만 아니라 참모와 비서의 임무를 수행하는 보좌기능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본 강좌에서는 인간관계, 의사소통, 사무자동화, 의전과 예절등의 비서업무에 대하여 학습함으로써 경호와 비서 임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경호 교육에 목적을 둔다.

정보정보보안론

현대사회는 정보화시대라고 부른다. 정보화가 산업전반의 효율성을 높여 국가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으며 최소의 비용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가장 유효한 수단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보의 수집에서 정리·평가·확인·통합·보관·활용·교류에 이르는 정보관리에 관한 지식을 습득시킴으로써 정보화시대를 살아야 할 정보맨의 기본자세를 양성하고, 아울러 리포트 및 논문 작성과 시험준비 등 학문방법론에 도움이 되는 각종 정보활용법에 대해 강의하기로 한다.

기계경비운용론

기계경비운용이란 경비대상에 경비를 제공하는 도입단계부터 운영까지 경비대상물의 입지조건, 건물구조, 취약부분을 관찰하고 위협을 분석하여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안전시스템을 입안하여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본 강좌에서는 경비진단, 기획의 사고와 방법, 현장조사 방법, 조사서의 작성요령을 철저하게 습득하기로 한다.

위기 및 재난 관리론

각종 범죄와 재난으로 인해 현대사회의 안전을 저해하는 태풍, 홍수, 지진 등의 자연재해와 가스폭발, 화재, 붕괴사고 등과 같이 인간의 실수나 기술실패의 결과로 발생하는 각종 사고의 원인을 검토 분석하여 각종 사건, 사고의 사례를 분석하여 원인과 예방책을 과학적으로 접근하여 효율적인 대응방법에 대하여 연구한다.

범죄학론

범죄의 일반적인 증가경향과 광역화, 도시화, 전문화 현상에 대처할 수 있도록 범죄현상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원인의 이해, 각종 범죄이론의 재적작용, 대책론 등에 걸쳐 사회병리현상으로써의 범죄에 대해 연구한다.

사회문제론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발생하는 노인문제, 다문화가정문제, 북한이탈 주민문제 등 사회불평등 문제와 사회제도 및 일탈문제 등에 대하여 학습을 통하여公安경찰행정업무 수행의 원활화를 기할 수 있는 과목이다.

범죄과학수사론

고도의 신종범죄, 지능범죄 등 발전하는 범죄를 유전자감식, 사이버 범죄 수사기기법 등 과학적인 방법으로 접근, 범인검거율을 높여서 평온한 치안을 확보하는 데 있다.

테러범죄의 이해

북한의 대남테러, 지구상의 테러문제, 미래의 대 테러정책 등을 이해함으로써 국가안보와 피경호자(VIP) 안전확보에 큰 도움이 될것으로 판단.

이민정책법제론

이민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측면과 특성을 이해하고, 이민정책결정과정의 이해관계자에 대한 이해 및 정책의 형성, 집행, 평가과정을 학습하며, 다문화사회의 담론, 한국의 이민정책과 사회통합정책의 이해, 세계각국의 사회통합정책을 비교 이해한다. 「출입국관리법」, 「국적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 「다문화가족지원법」등 우리나라 이민관련 법제를 학습하고, 비교법적 시각에서 세계주요 이민국가 이민법의 역사적 배경과 변천 과정을 이해한다.

다문화사회교수방법론

강의법 이론과 강의법 모형 등을 학습하고, 다문화사회교육 이론을 익히며 해외 및 한국의 다문화교육사례를 연구/분석한다. 이민자 대상의 교수법, 강의안 작성법 등을 학습하고 실습 및 평가한다.

한국사회의 다문화현상 이해

이주의 초국가적 이해를 통해 한국사회가 다문화사회로 변형되고 있는 과정을 총체적으로 탐구하고, 다양한 배경의 이민자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한다. 가족, 공동체, 민족, 국민국가, 절대주권, 시민권, 인권, 노동권, 거주권, 문화적 권리 등에 대한 기존의 개념들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으며, 이를 조화/수용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탐구한다.

이민/다문화 가족복지론

가족 이론 등 가족과 사회복지, 가족복지의 개념에 대해 이해하고, 한국의 다문화가족 정주실태와 다문화가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녀양육/교육/건강 및 경제 문제를 이해하고 한국의 다문화가족복지제도 및 정책 현황을 이해한다. 이민자의 특수한 상황과 정서를 고려한 상담기법 이론을 학습하고 사례를 연구한다.

국제이주와 노동정책

국제이주의 발생 원인 등 이민의 기제와 정착과정에 대하여 학습하고, 이민에 따른 국가와 이주민의 정체성, 공동체의 특성을 학습하며, 세계 각국의 이주민 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제반 제도를 이해한다. 외국인근로자, 전문인력 등의 우리나라 노동시장 유입 기제와 문제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이주가 노동시장, 국가재정, 산업정책 등 우리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한다.

이민/다문화 현장실습

(Pass 학점)

지역사회 이민/다문화 관련 시설에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참여함으로써 지역 현실에 밀착된 이민/다문화사회의 현장을 이해하고 다문화사회통합의 실재를 이해한다.

다문화(사회)교육론

체계적인 학문적 접근을 바탕으로 국내 다문화(사회)의 전반적인 측면을 이해하고 다문화 전문가로서의 역량개발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 및 이해하는 능력을 배양한다.

다문화 가족의 상담과 실제

다문화 가족의 정치, 경제, 문화, 교육, 가족간의 갈등에서 오는 문제들을 이해하고 상담으로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을 모색한다.

특수대학원 학사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2014. 5. 15. 제정

주무부서 : 특수대학원 교학행정실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중앙대학교 학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시행세칙이 적용되는 특수대학원의 범위는 학칙 제4조 제2항의 적용을 받는 특수대학원으로 한다.

제3조(과정) 특수대학원은 석사학위과정과 연구(수) 과정 및 특별과정을 둔다.

제4조(학과 및 정원) 특수대학원에 설치된 학과의 각 전공 및 정원은 중앙대학교 학칙에 따른다.

제5조(학과장 및 전공주임교수의 직무) 학과장 및 전공주임교수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해 학과 및 전공의 교과목 설정 및 담당 교·강사 추천
2. 논문 지도교수 및 논문 심사위원 제청
3. 기타 해당 학과 및 전공의 주요 학사업무

제6조(자문위원회의 목적) 특수대학원 운영의 중요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각 특수대학원에 자문위원회를 둔다.

제7조(자문위원회의 구성) ① 각 특수대학원 자문위원회는 원장, 학과장 및 전공주임교수, 팀장을 포함하는 5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각 특수대학원의 원장이 위원장

이 된다.

② 간사는 각 특수대학원 실무자로 한다.

제8조(자문위원회의 기능) 각 특수대학원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학생의 입학, 징계, 퇴학, 수료 및 졸업에 관한 사항
2. 학생지도 및 상벌에 관한 사항
3. 논문 심사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4.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5. 공개강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장학생 선발에 관한 사항
7. 기타 특수대학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2장 입 학

제1절 신입학

제9조(모집 시기) 학생 선발은 년 2회 학기별로 모집함을 원칙으로 하며, 시기는 전반 기 와 후반기로 한다.

제10조(지원 자격) 각 학위과정의 입학전형에 응시를 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지원 자격을 구비한 자이어야 한다.

1.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2. 연구과정은 석사학위과정의 입학자격과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

제11조(구비서류) 입학 전형에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입시요강에 명시된 구비서류를 정해 진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학과·전공별 모집인원) 학과·전공별 모집 인원은 학칙에 정한 정원 범위 내에서 각 특수대학원 자문위원회의 자문과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정한다.

제13조(전형방법 및 평가 기준) 석사학위과정 입학전형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특수대학원 자문위원회의 자문과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결정한다.

제14조(합격자 결정) 합격자 결정은 입학시험 결과를 근거로 각 특수대학원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원장이 결정한다.

제2절 편입학

제15조(지원 자격) 국내·외 대학원에서 동일(유사) 학과(전공)의 학위과정을 1학기 이상이 수하고, 6학점 이상 취득한 자 또는 취득예정자로 한다.

제16조(구비서류) 편입학 전형에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입시요강에 명시된 구비서류를 정해진 기일 내에 해당 특수대학원 지원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전형방법 및 평가 기준) 전형방법 및 평가 기준은 각 특수대학원 자문위원회의 자문과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정한다.

제18조(학점인정) 국내·외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 중 12학점 내에서 각 특수대학원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원장의 승인을 받아 취득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제19조(전형 시기) 편입학 전형은 년 1회 이상 시행할 수 있으며, 그 시기는 각 특수대학원 자문위원회의 자문과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정한다.

제20조(합격자 결정) 합격자 결정은 입학시험 결과를 근거로 각 특수대학원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원장이 결정한다.

제3절 연구생

제21조(연구생) ①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연구생으로 입학을 원하는 자는 정해진 절차를 거쳐 원장의 허가를 얻어 각 과정(전공)의 연구생으로 입학할 수 있다.

② 연구생으로서 교과 학점 12학점을 이수한 자에게는 수료 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제4절 외국인 학생

제22조(외국인 학생의 범위) 이 시행세칙에서 규정하는 외국인 학생은 제10조의 지원 자격을 가진 자로서 외국 국적 소지자를 말한다.

제23조(정원) 외국인 학생은 학칙 제18조(별도 정원)에 의하여 정원 외 입학할 수 있다.

제24조(전형방법) 외국인 학생의 입학 전형은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서류전형만으로도 선발할 수 있다.

제5절 입학허가 및 취소

제25조(입학허가 및 취소) ① 입학이 허가된 자는 지정된 기일 내에 정해진 등록금을 납부하고 등록하여야 입학이 확정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입학허가를 취소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자
2. 정해진 기일 내에 등록을 필하지 아니한 자

제3장 등 록

제26조(등록) 석사학위과정 학생은 개설된 교과목을 이수하기 위해서 등록을 해야 하며, 정해진 이수 학점을 모두 취득한 후라도 주간의 경우 4회 이상, 야간의 경우 5회 이상 등록을 필하여야 석사학위 논문 제출 자격을 얻는다.

제27조(등록금) 학생은 매 학기 초 정해진 등록기일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미 납부한 등록금의 반환은 학칙 제22조(등록 및 납입금)에 의한다.

제4장 학적 변동

- 제28조(휴학)** ①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매 학기 정해진 기한 내에 휴학원(중앙대포탈 이용)을 제출하여 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 ② 휴학은 학기 또는 1년 단위로 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통산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병역의무기간과 공적인 해외파견 근무기간은 휴학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③ 질병 등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다고 원장이 인정하는 자의 휴학 연한은 전항의 규정 예도 불구하고 연장할 수 있다.

제29조(복학) 복학은 매 학기 정해진 기한 내에 복학원(중앙대포탈 이용)을 제출하여 원장의 허가를 받아 복학할 수 있다.

- 제30조(자퇴)**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자퇴원을 제출하여 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 제31조(제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한다.
1. 매 학기 정해진 기일 내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2. 휴학 기간이 경과하여도 복학하지 아니한 자
 3. 대학원생의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각 특수대학원 자문위원회에서 계속 수학이 부적당하다고 판정 받은 자
 4. 기타 제적 사유에 해당하는 제 규정 위반자

- 제32조(학과 및 전공 변경)** ① 3차 학기 등록 이전까지,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학과 및 전공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교육대학원은 예외로 한다.
- ② 학과 및 전공을 변경코자 하는 자는 정해진 기한 내에 소속 학과 및 전공 학과장 또는 전공주임교수의 허가를 받아 전공(과) 변경원을 해당 특수대학원 지원팀에 제출하여 야 한다.
- ③ 학과 및 전공 변경 이전에 취득한 학점은 모두 인정한다.

- 제33조(재입학)** ① 제적된 자 중 재입학을 원하는 자는 정원에 여석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원장의 허가를 받아 재입학할 수 있다.
- ② 재입학은 재학 연한 이내에 학점 이수가 가능하여야 허가할 수 있다. 단, 징계로 인하여 제적된 자에게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제5장 수업·장학

제34조(수업) 특수대학원 수업은 야간에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주간 또는 계절수업을 할 수 있다.

제35조(수업연한) 특수대학원의 수업연한은 주간과정과 주말과정의 경우 2년, 야간과정의 경우 2년 6개월, 연구과정은 1년으로 한다.

제36조(교과과정) ① 교과과정은 각 특수대학원 자문위원회의 자문과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결정한다.

② 모든 교과목은 과목당 2시간 2학점 단위로 개설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격증 취득 등 특별한 경우에는 3시간 3학점 단위로 개설할 수 있다.

제37조(이수 학점) 졸업에 필요한 이수 학점은 석사과정 석사학위논문 제출자는 28학점 이상, 주말과정 석사학위논문 제출자는 32학점 이상, 연구 보고서 제출자는 30학점 이상, 연구과정 이수자는 12학점 이상으로 한다.

제38조(수강 학점) ① 학기별 야간과정의 경우는 6내지 8학점(자격증 취득 및 갱신 등에 필요한 선수과목을 수강할 경우 9학점) 이내, 주간과정과 주말과정의 경우는 9학점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② 타 전공 개설과목을 이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석사과정은 2과목, 연구과정은 2학점 (1과목) 범위 내에서 이를 이수 학점으로 인정한다.

제39조(성적 평가) 출석 점수를 10% 이내 반영하며 과제물, 중간시험과 기말시험 성적을 합산하여 결정 성적을 산출한다.

제40조(휴강 및 보강) 부득이한 휴강의 경우 강의 1주일 전에 휴강 및 보강 계획서를 해당 특수대학원 지원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1조(폐강 기준) 수강생이 5명 미만인 교과목은 폐강한다. 다만, 재학생 수가 5명 미만 인 전공의 경우 원장의 승인을 받아 개설할 수 있다.

제42조(인정 학점) 특수대학원에서 제적된 자가 재입학 하였을 경우에는 그 이전에 취득한 학점을 인정한다.

제43조(학점 교환) ① 각 특수대학원 간 석사학위과정은 2과목 내 학점 교환을 허가할 수 있다.
② 본 대학교 특수대학원과 학점 교환제를 실시하는 타 대학교 특수대학원의 교과목을 수강코자 하는 자는 해당 학과장의 승인과 양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44조(장학금) ① 입학성적이 특히 우수하거나 재학생으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장학금 지급이나 연구비 보조 결정은 장학금 지급규정 시행세칙에 의한다.

제6장 학위수여

제45조(기준) 특수대학원의 모든 학과(전공)는 정해진 기준과 절차에 의한 학위논문을 제출함으로써 학위를 수여한다.

제46조(학위수여) 석사학위는 주간과정은 4학기 이상, 야간과정은 5학기 이상, 주말과정은 4학기 이상의 등록을 필하고, 석사학위 논문 제출 자격시험을 통과한 후, 전 제37조(이수 학점)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각 특수대학원 자문위원회의 자문과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수여한다.

제47조(학위수여 보고) ① 학위의 수여는 각 특수대학원 자문위원회의 자문과 대학원 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총장에게 이를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석사학위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학위기를 총장이 수여한다.

제48조(우수논문 시상) ① 특수대학원 원생들의 연구 분위기 진작과 졸업논문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석사학위 청구 논문 제출자 중 우수논문을 선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
② 우수논문 선정은 각 특수대학원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원장이 선정한다.

- ③ 우수논문 수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졸업 시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할 수 있다.

제49조(수여학위 취소) 학위를 받은 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학위를 취득하였을 때에는 시 효에 상관없이 각 특수대학원 자문위원회의 자문과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위를 취소할 수 있으며, 학위를 취소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교육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장 석사학위 청구논문

제1절 논문 제출 자격시험

제50조(목적) 석사학위 청구 논문(이하 '논문'이라 칭한다) 제출 자격시험은 학생의 각 전공 분야와 연구 방법에 대한 기초 지식이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시행한다.

제51조(시험) '논문' 제출 자격을 얻기 위해서 '논문' 제출 자격시험을 통과하여야 한다.

제52조(응시자격) '논문' 제출 자격시험은 일정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하여 각 특수대학원 자문위원회의 자문과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결정한다.

제53조(시기) '논문' 제출 자격시험은 년 2회, 매 학기 중에 실시한다.

제54조(응시 절차) '논문' 제출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 원서를 정해진 기일 내에 해당 특수대학원 지원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5조(과목) '논문' 제출 자격시험 과목은 각 특수대학원 자문위원회의 자문과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정한다.

제56조(출제위원) '논문' 제출 자격시험 출제위원은 학과장 또는 전공주임교수의 추천에 의하여 원장이 위촉한다.

제57조(합격기준) ① '논문' 제출 자격시험은 과목별 8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② 외국어(영어) 시험을 치르는 대학원의 경우 별도로 정한다. 다만, '논문' 제출 자격시험(영어) 대체과목을 이수한 자는 합격으로 본다.

제58조(시험방법 및 소요시간) '논문' 제출 자격시험은 공히 필답시험으로 하며, 시험 시간은 과목당 50분을 원칙으로 한다.

제2절 논문지도

제59조(지도교수 배정) 각 특수대학원의 '논문'지도 교수 배정 기준 자격을 갖춘 자는 '논문'지도교수 배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원장의 승인을 얻어 '논문'지도교수를 배정 받을 수 있다.

제60조(지도교수 자격) '논문'지도교수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 대학교의 교수, 부교수 및 박사학위를 소지한 조교수
2. 박사학위 소지한 본교의 강사, 대우교수, 객원교수, 명예교수, 겸임교수, 연구 전담교수, 타 대학 전임교수 및 기타 논문지도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연구 경력자로서 원장의 승인을 받은 자

제61조(지도교수 변경)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도교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전·후임 지도교수의 승인을 얻은 후 원장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제62조(논문지도비) '논문'지도교수에게는 '논문'지도비를 교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63조(논문체제) '논문'은 전공분야에 대한 견실한 기본 지식이 바탕이 되고, '논문'의 주제가 학술적 논리로 서술되어야 한다.

제3절 논문 심사

제64조(제출 자격) '논문'을 제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하여 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석사학위과정 수료자 또는 수료 예정자
2. 석사학위 논문 제출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3. “연구 윤리 및 논문 작성법 특강” 수업을 이수한 자
4. 연구 윤리서약서를 제출한 자

제65조(제출 서류) ‘논문’ 제출 자격을 갖춘 자는 다음의 서류를 해당 특수대학원 지원 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지도교수 배정 신청서 1부
2. 석사학위 청구 논문 제출 승인서 1부
3. 석사학위 청구 논문-스프링 제본(심사용) 3부
4. 석사학위 청구 논문 수정 보고서 1부
5. 논문(하드커버) 2부(1부에는 반드시 심사위원 3인의 인정 날인 또는 사인을 받아 제출)
6. 도서관 홈페이지 업로드(www.lib.cau.ac.kr) 후 확인서 1부

제66조(작성 용어) ‘논문’은 국문으로 작성 시 영문으로 작성된 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지도교수의 승인을 얻어 ‘논문’을 외국어로 작성할 경우에는 국문 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67조(작성과 제책) ‘논문’ 작성 및 제책 지침은 따로 정한다.

제68조(심사위원회) ‘논문’이 접수되면 1인의 심사위원장을 포함한 심사위원 3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논문을 심사한다.

제69조(심사위원) 심사위원은 해당 학과장 및 전공주임교수의 추천에 의하여 원장이 위촉한다. 단, ‘논문’지도교수는 심사위원장이 될 수 없다.

제70조(심사위원 교체 금지) ‘논문’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은 ‘논문’심사가 개시된 이후에는 교체할 수 없다. 다만, 심사위원이 질병, 출국 등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논문’심사를 계속할 수 없을 경우에는 원장의 승인을 얻어 교체할 수 있다.

제71조(심사방법 및 절차) ‘논문’심사 방법과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논문' 심사본을 심사위원 전원에게 심사 1주일 전에 배부하여 예비심사를 거치도록 한다.
2. '논문' 심사는 일정한 장소와 시간에 행하며, 심사 상 필요한 때는 '논문' 제출자에게 부분 또는 모형, 기타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3. '논문' 심사는 내용과 형식이 학위논문으로서 결함이 있는지를 질의응답 식으로 진행하여 논문 합격 여부를 판정한다.
4. '논문' 심사는 정해진 기일 내에 완료되어야 한다.

제72조(평가) '논문' 심사는 '논문' 및 구술 점수 각 80점 이상인 자로서 심사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한다.

제73조(재심사) '논문' 심사에서 불합격된 자는 '논문' 제출 기한 내에 1회에 한하여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74조(심사의 불합격) 심사위원회에서 '논문' 내용이 불충분하거나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심사가 불가능하다고 결정하였을 때에는 '논문' 심사를 불합격 처리한다.

제75조(심사 결과 보고) '논문'의 심사가 완료되면 심사 위원장은 석사학위 청구 논문 종합심사 보고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6조(심사 시기) '논문'의 심사는 전반기와 후반기, 년 2회로 한다.

제77조(최종 작성) '논문' 제출자는 제책 이전에 반드시 '논문' 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수정 보완하여 심사위원장의 최종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78조(학위논문 제출) 학위논문 심사에 합격된 학위 청구자는 정해진 기한 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1. 논문(하드커버) 2부 (1부에는 반드시 심사위원 3인의 인정 날인 또는 사인을 받아 제출)
2. 도서관 홈페이지 업로드(www.lib.cau.ac.kr) 후 확인서 1부

제8장 연구 보고서

제79조(기준) 특수대학원의 모든 학과(전공)는 정해진 기준과 절차에 따라 석사학위 청구 논문을 대체하여 연구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제80조(지도) 석사학위 청구 논문지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81조(제출 자격) 석사학위 청구 연구 보고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하여 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석사과정 5학기 이상 등록을 필하고 30학점 이상 이수(예정) 한 자
2. 석사학위 논문 제출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제82조(제출) 연구 보고서 제출 자격을 갖춘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당 특수대학원 지원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석사학위 청구 연구 보고서 제출 승인서 1부
2. 석사학위 청구 연구 보고서-스프링 제본(심사용) 1부

제83조(심사위원회 및 평가) 지도교수가 심사하며, 연구 보고서의 평가가 80점 이상인 자로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장 보 칙

제84조(준용규정) 본 시행세칙에 특별히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학칙을 준용한다.

부 칙 <제정 2014. 5. 15>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4년 9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 규정) 이 시행세칙의 시행으로 종전의“사회개발대학원 학사 내규, 교육대학원 학사 내규, 신문방송대학원 학사 내규, 건설대학원 학사 내규, 행정대학원 학사 내규, 예술대학원 학사 내규, 국악교육대학원 학사 내규, 글로벌인적자원개발대학원 학사 내규”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시행세칙 부칙 제2조에 의하여 구 학사 내규가 폐지됨에 따라 이학칙 시행세칙의 시행 이전의 각 특수대학원 재학생에게 구 학사 내규를 적용할 수 있다.



● ● 부록

- ▶ 각종 서식
- ▶ 자격증 이수안내
- ▶ 최근 3년간 석사학위 논문목록
- ▶ 학위논문 작성·제책 지침
- ▶ 원우회 구성
- ▶ 원우회 회칙
- ▶ 중앙도서관 이용 안내
- ▶ 행정부서 및 교내복지시설
이용안내
- ▶ 찾아오는 길
- ▶ 배치도

각종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결 재	담 당	팀 장	원 장

휴 학 원

N0. _____

성 명		생년월일	
		입학년도	년 전·후 반기
학 과		학 번	
등록회수		휴학회수	금회포함 총 회
현 주 소	우편번호 ☎ :		
휴학사유			

위 본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_____년 _____월까지(_____학기간) 휴학하고자 원서를 제출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 _____년 _____월 _____일

신청인 : (인)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장 귀하

휴 학 원 서 접 수 증

N0. _____

학 과		전 공		생년월일	년 월 일
성 명		휴학사유		휴학기간	

201 _____년 _____월 _____일

담당자 : (인)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장

※절차 : ① 원서교부(대학원홈페이지or해당 특수대학원 지원팀) → ② 도서관(해당 특수대학원 지원팀에서 확인) → ③신청서접수(해당 특수대학원 지원팀)

(별지 제2호 서식)

결 재	담 당	팀 장	원 장

복 학 원

N0.

성 명		생년월일	
학 번		입학년도	201 년 전 · 후 반기
학 과		전 공	
학 차	복교예정학차: 차	전화번호	H-P
병역사항	미필 · 군필 · 면제 (군복무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위와 같이 복학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비군 대상자 전입신고는 (중앙대포탈 → 학사정보 → 신청조회 → 예비군 전입신청)

201 년 월 일

신청인 :

①

중 앙 대 학 교 행 정 대 학 원 장 귀 하

복 학 허 가 서

N0.

성 명		학 번		생년월일	년 월 일
학 과		전 공		복교예정학차	
휴학기간	일반 · 군휴학 : 년 월부터 년 월까지				

20 년 월 일

담당자 :

①

중 앙 대 학 교 행 정 대 학 원 장

☞절차 : ① 원서교부(대학원홈페이지 or 해당 특수대학원 지원팀) → ② 신청서접수(해당 특수대학원 지원팀) → ③ 등록 금고지서(중앙대포탈)

(별지 제3호 서식)

경	학 과 장
유	

결	담	팀	원
재	당	장	장

자 퇴 원

N0. _____

성 명		생년월일	
학 과		입학년도	201 년 전·후 반기
등록회수		학 번	
현 주 소	우편번호 ☎ () -		
재적(재학)기간	년 월 입학. 1차학기 : 년 월 2차학기 : 년 월 3차학기 : 년 월 4차학기 : 년 월 5차학기 : 년 월		
자퇴사유			
자퇴일자			

위 본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자퇴하고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 년 월 일

신청인 : ①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장 귀하

자 퇴 허 가 서

N0. _____

성 명		학 번		주민등록번호	
학 과		자퇴사유		경력사항	

201 년 월 일

담당자 : ①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장

(별지 제4호 서식)

결 재	담 당	팀 장	원 장

전 공 (과) 변 경 원

학 과			학 번		
성 명			학 차		
입학년도	년 전·후반기		비 고		
변경사항	현 전 공		전공주임교수	①	
	변경전공		전공주임교수	①	
학점취득 현 황	과 목 명	(학점)	과 목 명	(학점)	
	과 목 명	(학점)	과 목 명	(학점)	
변경사유					

본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전공 변경원을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 년 월 일

신청인 : ①

중 앙 대 학 교 행 정 대 학 원 장 귀 하

(별지 제5호 서식)

결 재	담 당	팀 장	원 장

재 입 학 원

N0. _____

성 명		생년월일	
학 번		입학년도	201 년 전 · 후 반기
학 과		전 공	
제적구분	미복학제적 ☐ 미등록제적 ☐	전화번호	
재학기간	1차학기 : 년 월 2차학기 : 년 월 3차학기 : 년 월 4차학기 : 년 월 5차학기 : 년 월		
병역사항	미필 · 군필 · 면제 (군복무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위와 같이 재입학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비군 대상자 전입신고는 (중앙대포탈 → 학사정보 → 신청조회 → 예비군 전입신청)

201 년 월 일

신청인 :

(인)

중 앙 대 학 교 행 정 대 학 원 장 귀 하

재 입 학 허 가 서

N0. _____

성 명		학 번		생년월일	년 월 일
학 과		전 공		재입학예정학차	
제적구분	미복학제적 ☐ 미등록제적 ☐			제적기준일자	년 월 일

20 년 월 일

담당자 :

(인)

중 앙 대 학 교 행 정 대 학 원 장

※절차 : ① 원서교부(대학원홈페이지 or 해당 특수대학원 지원팀) → ② 신청서접수(해당 특수대학원 지원팀)
→ ③ 등록 금고지서(중앙대포탈)

(별지 제6호 서식)

결	담	팀	원
재	당	장	장

휴 · 보 강 계 획 서

학 과 (전 공)	학 과				전 공
과 목 명					
휴강일시	20 년 월 일 (요 일)		교 시		
보 강 계 획	일 시	20 년 월 일 ~		까 지	
	장 소				
※휴강 사유					

위와 같이 휴 · 보강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1 . . .

담당 교수 : ⑨

작성 후 휴강 일주일전에 해당 특수대학원 지원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 앙 대 학 교 행 정 대 학 원 장 귀 하

(별지 제7호 서식)

결 재	담 당	팀 장	원 장

학 점 인 정 서

No. _____

과 정	석사	전 공		
성 명	학 번			
입학년도	년 전 · 후 반기	취득학점	학점	
출신교	_____대학교 _____대학원 _____학과 _____학위(취득,수료)			
인정사유	연락처			
인정 요청 내역				
석사학위 학점 인정	위학생의 타 대학(원) 개설과목 수강신청 학점() 학점을 본교 행정대학원 전공학점으로 인정함 _____학과장/전공주임교수 (인)			
학점 대체인정 시				
인정과목명	학점	성적(백분율점수)	인정사유	비고
합 계			_____학점	

첨부 : 성적증명서(대상과목 붉은펜으로 표기요망) 1부.

위 과목을 학점등록 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 년 월 일

신청인 :

㉠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장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석 제 호

학 위 기

성 명 :

년 월 일 생

위 사람은 이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학과 전공)을 이수한 후 소정의 시험에 합격하고 논문심사에
통과하여 ○○○학 석사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를 인정함

년 월 일

중 앙 대 학 교 ○○○○대학원장 ○○○박사 ○○○(직인)

위의 인정에 의하여 학 석사학위를 수여함

중 앙 대 학 교 총 장 ○○○박사 ○ ○ ○(직인)

학위 번호 : 중앙대○○○○ 석○○○○

(별지 제9호 서식)

석사학위 논문 제출 자격시험 응시원서

학년도 (전 · 후)반 기

수험번호	*	학위과정	석사
성명		학과	
학번		휴대전화	
등록	회	취득학점	
응시과목 (전공)	(담당교수 :)		
	(담당교수 :)		
	(담당교수 :)		

※ 응시자격 : ()차학기 이상 등록필자, ()학점이상 취득자

본인은 위와 같이 응시하고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 년 월 일

신청인 : 인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장 귀하

(별지 제10호 서식)

논	문 ()	지도교수배정신청서
연구보고서 ()		

201 - 전 · 후반기

성명		학과		전공	
학번		학차		휴대전화	
				e-mail	
논문 제 목					
희망 교수	①	②	③		
※ 제출자격 - ()회 이상 등록을 마치고 ()학점 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차생)					

위와 같이 논문(연구보고서) 지도교수 배정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 년 월 일

신청인 : ㉠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장 귀하

(별지 제11호 서식)

논문지도교수 변경원

학 과		전 공		학 차	
성 명		학 번			
학 번	년 전 · 후 반 기		졸업 예정 년 도	년 전 · 후 반 기	
변 경 사 유					
전임지도교수명 : 인			후임지도교수명 : 인		

본인은 상기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논문지도교수 변경원을 제출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 년 월 일

신청인 : 인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장 귀하

제 출 자	학 과/전 공	_____학 과 _____전 공	과 정	석 사
	학 번		성 명	
지도교수	소 속		성 명	

논 문 제 목	국 문 :	
	영 문 :	

201년말

138

(별지 제13호 서식)

학위논문 제출 승인서

성명				학과	-
전공		학번		휴대번호	
				e-mail.	
제목					
※ 제출자격 - 1. 졸업에 필요한 학점 취득자 또는 논문심사 학기에 미취득 학점을 수강신청한 자 2. 논문제출자격 전공시험 PASS자 또는 논문심사 학기에 시험에 응시한 자					

위와 같이 석사학위 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 년 월 일

신청인 : ①

지도교수 : ①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장 귀하

확인 내용	석사	1. 수료학점(학점)
확인자 ()		2. 전공시험(P)

(별지 제14호 서식)

(학생용)

석사학위 청구논문 수정보고서

논문 제출자 : 학과 전공 성명
논문 제목 :

심사위원 지시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수정하였기에 수정논문을 첨부하여 보고합니다.

페이지	수정지시내용	수정상황	비고

201 년 월 일

위 사실을 확인함.

심사위원장 : 인)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장

(별지 제15호 서식)

석사학위 청구논문 종합심사 보고서

지도교수 :

작성일자 : 201

구 분	소 속	학 위	직 위	성 명	평 가					
					논문점수	구술시문 점수				
심사위원장										
심사위원										
논문제출자	학과		전공 학번	성명						
논문제목										
논문 평균점수		구술시문 평균점수		판 정	합 격 · 불 합 격					
※ 총 평										

※ 참고사항

학위수여규정 : 제72조 - '논문' 심사는 '논문' 및 구술 점수 각 80점 이상인 자로서 심사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한다.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장

자격증 이수안내

■ 사회복지사 자격증 ■

1.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 필수 이수 과목 (6과목)·선택 과목 (2과목)

- ①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10개 필수 과목 중 6과목과 선택과목 중 2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하여야 한다.
- ② 단, 2004년 2학기 신입생부터는 필수 6과목 중 반드시 '사회복지현장실습'과목을 이수해야 하며, 2010년 1학기 신입생부터는 학교에서 지정한 필수 6과목과 선택 2과목(과목당 3학점)을 각각 이수하여야 한다.

● 필수과목

- ▶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사회복지조사론 ▶ 사회복지개론 ▶ 사회복지실천론
- ▶ 사회복지실천기술론 ▶ 지역사회복지론 ▶ 사회복지정책론 ▶ 사회복지행정론
- ▶ 사회복지법제 ▶ 사회복지현장실습

● 선택과목

- ▶ 아동복지론 ▶ 청소년복지론 ▶ 노인복지론 ▶ 장애인복지론 ▶ 여성복지론
- ▶ 가족복지론 ▶ 산업복지론 ▶ 의료사회사업론 ▶ 학교사회사업론 ▶ 정신건강론
- ▶ 교정복지론 ▶ 사회보장론 ▶ 사회문제론 ▶ 자원봉사론
- ▶ 정신보건사회복지론 ▶ 사회복지지도감독론 ▶ 사회복지자료분석론
- ▶ 프로그램개발과 평가 ▶ 사회복지발달사 ▶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2.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 국가시험 8과목

- ①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
- ② 사회복지사 국가시험은 과목 변경에 따라 아래의 8과목을 모두 시험 보아야 한다.
(2004년 7월 31일부터 시행)
 - (1) 사회복지기초(▶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조사론)
 - (2) 사회복지실천(▶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
 - (3) 사회복지정책과제도(▶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법제론)
- ③ 다만 아래의 사항은 국가시험 합격여부와 관계없이 1급 취득 가능
 - 1998. 7. 1. 현재 사회복지사 2급 또는 3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 실무경력이 3년 이상 경과 시 1급 취득 가능
 - 1998. 7. 1. 기준 사회복지(사회사업)학과 재학 중인 자

- 2002. 12. 31. 기준 사회복지학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3. 필수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에 관한 기준

가. 실습 기관 :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법인·시설, 기관 및 단체로 한다.

나. 실습지도자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3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5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가 실습을 지도하여야 한다.

다. 실습 시간 : 현장실습시간은 120시간 이상으로 한다.

※ 자격증 발급기관 및 문의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www.kasw.or.kr. 또는 사회복지사 자격관리센터 <http://lic.welfare.net/>

최근 3년간 석사학위 논문목록

제 44 회 (2013년 2월 졸업)

학과	성명	논문제목	지도교수
복지행정학과	강명옥	대도시와 지방중소도시 노년기 여성의 여가활동에 대한 비교 연구	심준섭
복지행정학과	강주희	유·초 교육과정 연계에 대한 인식 분석	심준섭
복지행정학과	강지영	창의적 체험활동이 청소년의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심준섭
복지행정학과	국균호	준고령 직장인 퇴직후 연금급여 수준에 관한 연구	허만형
복지행정학과	김경자 A	지역문화축제의 주민참여와 만족에 관한 연구	김동환
복지행정학과	김경자 B	민간 어린이집 운영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이규환
행정학과	김미숙	대학 행정직원의 직무만족 요인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박흥식
행정학과	김유경	공기업 민영화의 성과에 관한 연구	박흥식
지방행정학과	김용연	민간투자예 의한 경전철 사업의 발전방안	이규환
복지행정학과	노병주	노인복지예산 분야별 증감 추세에 관한 연구	허만형
복지행정학과	명순희	영유아 무상보육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동환
행정학과	박예진	수도권 광역교통행정체계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홍준현
복지행정학과	박정화	농촌 노인 사회학습 활동 참여가 자아효능감 및 생활만족도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박흥식
복지행정학과	신희팔	노인 일자리사업이 노인들의 삶의 만족도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이규환
복지행정학과	심제천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관한 연구	김동환

학 과	성 명	논문제목	지도교수
행정학과	윤정영	우리나라 도시공공디자인 정책에 관한 연구	황윤원
복지행정학과	이상빈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희망·판정·기관 서비스의 비교 연구	허만형
정책학과	이인용	기금의 국회심의를 따른 재정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동환
복지행정학과	장윤정	보육정책이 둘째자녀 출산의도에 미치는 영향	심준섭
복지행정학과	장재원	주택연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이규환
복지행정학과	정명헌	노인 일자리사업 만족도에 관한 연구	이규환
복지행정학과	최상학	경제적 요인이 한센병 유병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 관한 연구	이용규

제 45회 (2013년 8월 졸업)

학 과	성 명	논문 제목	지도교수
복지행정학과	김숙희	중앙공무원의 퇴직준비교육제도 인식에 관한 연구	홍준현
행정학과	김우종	자유무역협정(FTA)체제에 따른 우리나라 세관의 경쟁력 강화방안에 관한 연구	황윤원
문화예술 행정학과	김유미	마을미술프로젝트를 통한 지역문화 활성화 방안	박흥식
문화예술 행정학과	김태순	자치회관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주민의 삶의 질	박흥식
복지행정학과	박교순	신용협동조합(신협)의 기업이미지가 조합원의 만족도 및 거래의사에 미치는 영향	심준섭
복지행정학과	박행단	웃음치료프로그램의 노인 우울증 개선 효과에 관한 연구	심준섭
복지행정학과	서우순	대학생의 사회복지의식 및 자원봉사활동과 고의적 자해의 관계에 관한 연구	조성한
복지행정학과	안기환	영구임대주택 거주 독거노인가구의 주거복지서비스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조성한

학과	성명	논문 제목	지도교수
도시마케팅학과	이민경	효과적인 정부 R&D사업 추진 프로세스에 관한 연구	박희봉
복지행정학과	이혜경	지적장애인의 일상생활 상호지원 네트워크에 관한 연구	허만형

제 46회 (2014년 2월 졸업)

학과	성명	논문 제목	지도교수
행정학과	김미란	노인주거정책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조성한
행정학과	김민경	우리나라 과학기술인력의 양성과 확보에 관한 연구	황윤원
복지행정학과	민현옥	다문화 교육정책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이규환
행정학과	송병준	노인주거정책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이규환
복지행정학과	신동일	고령화시대 도시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연구	심준섭
복지행정학과	윤여원	가정환경이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	심준섭
복지행정학과	임성수	저소득층 주거복지의 효과성 분석; 민간기관 주거복지사업 대상자를 중심으로	허만형

제 47회 (2014년 8월 졸업)

학과	성명	논문 제목	지도교수
복지행정학과	고남식	대순진리회 사회복지사업과 실천체계에 관한 연구 - 타 종교와의 비교적 관점에서 -	이용규
지방행정학과	송지현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방안 연구 - 서울특별시 동작구를 중심으로 -	이규환
복지행정학과	최용환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의 소득계층별 이용 현황에 관한 연구	허만형

제 48회 (2015년 2월 졸업)

학 과	성 명	논 문 제 목	지도교수
공안경찰 행정학과	김성겸	해양경찰의 교육훈련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이용규
복지행정학과	김종원	노인 주거시설의 편의성 향상에 관한 연구	이규환
복지행정학과	김희재	다문화 가정 자녀의 교육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동환
복지행정학과	박상환	노인요양시설의 표준화된 돌봄서비스가 고객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김동환
복지행정학과	박선영	노인 주·야간보호시설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에 관한 연구	박홍식
행정학과	손재권	통일한국의 국회의원선거 실시에 관한 연구	황윤원
복지행정학과	최복경	양육유형이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허만형
복지행정학과	최미정	특별재난지역에서의 지역사회복지관의 역할	심준섭
공안경찰행 정학과	홍문자	비영리 공공기관 기부금 모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이규환
복지행정학과	홍성숙	다문화가정 아동의 학교 및 사회 적응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이규환

제 49회 (2015년 8월 졸업)

학과	성명	논문 제목	지도교수
공안경찰 행정학과	경미라	수사단계에서의 인권침해 실태와 인권옹호에 미치는 영향 (수사기관을 중심으로)	황윤원
복지행정학과	김진선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학교생활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인	심준섭
복지행정학과	노지혜	기업 유형별 사회공헌활동에 관한 연구	허만형
공안경찰 행정학과	박상호	청소년의 자위비행 경험이 학교폭력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	박희봉
행정학과	박소진	구강보건의료정책 욕구에 관한 연구 -노인의 구강보건사업 인식에 관한 연구-	황윤원
복지행정학과	서인원	가정폭력 중박발생 원인에 대한 분석 -서울시 OO구 지역을 대상으로-	허만형
공안경찰 행정학과	송태화	법곤충학을 활용한 과학적 수사기법향상 방안 (경찰과학수사 기법을 중심으로)	심준섭
문화예술 행정학과	신상미	통합문화이용권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정책결정자와 수혜자의 관점 비교를 중심으로-	이용규
지방행정학과	이종학	도시어메니티를 위한 도시재상 전략 연구: 서울시 금천구를 중심으로	이규환
정책학과	정지현	대학입시 정책이 교육과정에 미치는 영향: 중등학교 교육과 정을 중심으로	김동환
복지행정학과	하문숙	경로당 활용 노인의 사회관계망에 관한 연구	허만형

학위논문 작성 · 제책 지침

1. 학위논문 구성 요소 (첨부 양식 참조)

- 가. 겉표지 (제본 방법 참조, 별표1 참조)
- 나. 속표지 (별표2 참조)
- 다. 제출서 (별표3 참조)
- 라. 인정서 (별표4 참조)
- 마. 논문 목차 또는 차례 (작성 체제 및 별표5 참조)
- 바. 그림, 표 목차 (다수의 표나 그림 등이 포함되었을 때, 작성 체제 및 양식 참조)
- 사. 본문 (작성 체제 및 별표6 참조)
- 아. 참고 문헌 (작성 체제 참조)
- 자. 부록, 색인, 기타 (필요한 경우)
- 차. 국문초록 및 핵심어 (별표7 참조)
- 카. **ABSTRACT** 및 핵심어 (별표8 참조)
- ※ 감사의 글 (필요할 경우)-쪽 번호 없이

2. 학위논문 작성 체제

- 가. 학위논문은 형서로 국문, 국한문 혼용으로 작성하되 학과의 특성에 따라 외국어로 작성할 수도 있다. 단, 표지의 논문 제목이 외국어일 경우에는 국문을 병기하여야 한다.

나. 워드 프로그램에 따른 작성 요령

- ① 아래아 한글 프로그램 기준
 - 용지여백 : 위, 아래 여백 20mm, 좌, 우 여백 25mm, 머리말, 꼬리말 10mm
 - 들여쓰기 : 문단 시작은 2칸 띄움
 - 줄간격 : 160%-200%
 - 정렬방식 : 혼합
 - 글씨체 및 크기
 - 큰제목 (16 point, 명조, 신명조, 바탕체, 굴림체, 함초롱바탕체 중 사용), 진하게
 - 중간제목 (13 point, 명조, 신명조, 바탕체, 굴림체, 함초롱바탕체 중 사용), 진하게
 - 본문 (10 또는 11 point, 명조, 신명조, 바탕체, 굴림체, 함초롱바탕체 중 사용)
 - 각주 (9 point, 명조, 신명조, 바탕체, 굴림체, 함초롱바탕체 중 사용)
- ② MS word 프로그램 기준

용지여백 : 위, 아래 여백 2cm, 좌, 우 여백 2.5cm, 머리말, 꼬리말 1cm
 들여쓰기 : 문단 시작은 2칸 띄움
 줄간격 : 1.5 - 2
 정렬방식 : 혼합
 글씨체 및 크기
 큰제목 (16 point, 명조, 신명조, 바탕체, 굴림체 중 사용), 진하게
 중간제목 (13 point, 명조, 신명조, 바탕체, 굴림체 중 사용), 진하게
 본 문 (10 또는 11 point, 명조, 신명조, 바탕체, 굴림체 중 사용)
 각 주 (9 point, 명조, 신명조, 바탕체, 굴림체 중 사용)

다. 목 차 (내용 목차 및 도표 목차)

- ① 목차는 3단법(편·장·절)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로마자(I, II, III...)와 아라비아 숫자(1, 2, 3), 한글(가, 나, 다) 등을 혼용하여 작성할 수도 있다.
- ② 항목구분을 세분하여 번호를 표시할 때는 한 칸씩 안으로 하여 들여쓰기로 작성한다.

(예)	제1편	제1장
	제1장	1.1
	제1절	1.1.1

- ③ 그림 및 표의 목차는 인문사회계열의 경우에는 [그림 1], [그림 2], [그림 3], 또는 [그림 1-1], [그림 1-2]의 순서로 표는 [표 1], [표 2], 또는 [표 1-1], [표 1-2]...로, 자연계열의 경우에는 Fig.1, Fig.2...Table 1, Table 2...로 일련번호를 붙이고 **제목과 수록된 페이지 수**를 기입한다.

- ④ 목차의 페이지번호는 로마자 소문자(i, ii, iii)로 부여한다.

라. 본 문

본문은 (서론, 본론, 결론) 또는 (서론, 방법, 결과, 논의) 등 각 분야에 맞는 양식에 따라 구성한다.

① 서론

- 서론은 제1편 또는 제1장으로 하고 서론 첫 장에서부터 1쪽이 시작된다.
- 서론에서는 연구의 이론적 배경(선행 연구 개괄 포함)과 목적, 가설 등을 다룬다.
 이를 서론으로 묶어서 통틀어 기술하거나 하위 제목을 붙여 분리하여 기술하여도 좋다.
- 서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연구의 목표와 필요성이 뚜렷하게 드러나도록 기술하는

것이다.

② 본론 (혹은 연구 방법 및 결과)

- 본론은 논문의 핵심이 되는 부분으로 확실하고 충분한 증거를 기반으로 하여 비판, 견해, 해석, 주장 또는 반론 등을 논리적, 조직적, 체계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 실증 연구의 경우, 연구 대상, 연구 방법과 범위 등을 상세히 기술하여야 하고, 연구 결과의 기술도 객관적 자료를 중심으로 서술하며, 중요한 통계자료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결론 (혹은 논의 또는 종합 논의)

- 논문을 마무리 짓는 부분으로 연구의 주요 목표를 재요약하고, 목표와 관련하여 연구에서 발견한 결과를 요약하여 제시하고, 결과가 가지고 있는 의미와 함의 등의 해석을 기술한다. 이때 연구의 제한점 등에 대해 논의하고 추후 연구를 제안하여도 좋다.

* 본문에서 인용문헌 작성 요령 : 타 자료에서 빌려와 인용한 내용은 반드시 모두 인용문헌 제시를 통해 출처를 밝혀야 한다. 여기에는 서적, 논문, 기관 자료, 잡지, 인터넷 자료뿐만 아니라 타 학자의 구두설명(대개 개인 서신 또는 personal communication으로 표기함)도 포함되어야 한다. 분야에 따라 인용문헌 제시 양식은 다른데; (1) 각주로 하여 아라비아 숫자로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해당 면의 아래에 기재하거나, (2) 본문에는 위첨자로 일련번호만 제시하고(예, ^[1] ^[2] ^[3]), 참고문헌에 동일 번호를 이용하여 상세 출처를 제시할 수도 있으며, (3) 저자명과 출판 연도를 괄호에 넣어(예, (홍길동, 1968)) 제시할 수도 있다.

*각 분야별로 공통적으로 따르는 인용문헌 양식의 지침을 따라야 하며, 분야별로 참고할 만한 자료는 (마. 참고문헌)을 참조한다.

* 본문에서 보충설명 작성 요령 : 각주로 하여 일련번호를 붙이고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한다. 각주의 설명은 해당 면의 아래에 기재한다. 지나친 각주의 사용은 가독성을 떨어뜨리므로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하도록 하고 되도록 내용을 본문의 기술에 포함하도록 할 것을 권장한다.

* 출간된 논문의 내용이 학위논문에 포함되는 경우 : 이미 출간하였으나 논문의 내용이 학위논문의 전체 연구에 포함되는 연구이며,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통합될 수 있을 경우, 학위논문에 출간된 논문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위 논문 체제와 양식

에 따라 수정하여 포함시켜야 하며 출간된 논문의 인용문헌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한다.

마. 참고문헌 (APA,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기준)

-본문에 인용된 문헌(책, 논문, 잡지, 기관 자료, 인터넷, 개인 서신 등)은 반드시 모두 참고문헌에 제시하여야 한다.

이 때 본문에서 인용되지 않은 논문은 참고문헌에 포함될 수 없다.

-참고문헌의 배열은 국내 문헌, 국외 문헌의 순서로 배열하며 가, 나, 다 또는 알파벳 순으로 배열하고 동저자의 경우 출판 연도의 순서(오래된 것부터 최신의 순서)로 배열한다. 동일저자가 같은 해에 출간한 논문의 경우 홍길동 (2011a)와 홍길동 (2011b)와 같이 a, b로 나누어 배열하고, 본문에서도 이를 포함하여 출처를 인용하여야 한다.

-참고문헌은 본문과 달리 첫 줄 내어쓰기(15-20pt)를 한다.

-국내 문헌의 경우 저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저자명 사이에 쉼표만 사용하고, "&"부호를 쓰지 않는다. (예, 강동단, 김천란 (1970). 단서주기가 작업기억용량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7, 23-41.)

-국외 문헌의 경우 저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저자명 사이에 쉼표와 "&"부호를 사용하고, 저자의 성을 앞에 제시하고, 이름은 첫 자만 제시하고 마침표를 찍는다. (예, Musen, G., & Treisman, A. (1990). Implicit and explicit memory for visual patterns.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Learning, Memory and Cognition*, 16, 127-137.)

* 상세한 참고문헌 양식은 다음의 지침서들을 참조하도록 한다. 해당 분야에서의 공통 지침서가 없거나 이를 따르지 않는 분야일 경우 지도교수의 지침에 따라 작성한다.

❖ 인문계열, 예체능

-『MLA Style Manual and Guide to Scholarly Publishing』 (7th ed. Modern Language Association of America, 2011년 8월 기준)

-『논문 잘 쓰는 방법』 (움베르토 에코 지음; 김운찬 옮김, 2008, 부록에 국내 학위 논문의 체제와 작성법이 수록되어 있음)

-『글쓰기 1』 (이찬규 외 지음, 중앙대학교 출판부, 2010), 제 8장 보고서 쓰기 참조

❖ 사회계열

-『APA Publication Manual』 (6th ed.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11년 8월 기준)

-『학술논문 작성 및 출판지침』 (시그마 프레스, 2001, 한국심리학회, 2011년 8월 기준)

❖ 자연계열

-『ACS style guide: effective communication of scientific information』 (2006, 3rd ed. American Chemical Society 발행, 2011년 8월 기준) : 화학 분야에서 널리 사용됨.

-『Scientific style and format : the CSE manual for authors, editors, and publishers』 (2006, 7th ed. Council of Science Editors, 2011년 8월 기준) : 생물학 및 자연 과학 분야에서 널리 사용됨.

❖ 온라인 참고문헌 포맷 프로그램 (Refworks): 중앙대 도서관에서는 세계적으로 널리 쓰이는 온라인 참고문헌 관리 프로그램인 Refworks를 제공하고 있다. 이 도구는 분야별로 상이한 참고문헌의 양식에 따라 리스트 출력이 가능하므로 논문 작성에 매우 유용하다. 도서관에서 매학기 몇 차례에 걸쳐 이 관리 프로그램 안내 워크숍 등을 하고 있으므로, 이에 참석하고 사용법을 익혀두는 것도 매우 유용할 것이다.

바. 부록

-부록을 추가한 경우에는 머리말에 부록이라고 기록하고 일련번호를 붙인다 (예, [부록 1]).

-부록에 담은 사항은 부가적 설명, 조사양식, 설문지, 측정도구, 법조문, 연표, 지도, 문서 등이다.

사. 초록 (국문, 영문)

- ① 초록은 논문의 내용과 결론에 관해서 간략하게 구체적인 개요를 수록해야 한다.
- ② 초록의 표현은 완전히 연결된 문장 형식으로 쓰여야 하며, 개조 형식의 나열이어서는 안된다.
- ③ 모든 논문은 국문과 **ABSTRACT**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④ 초록의 아래에는 논문의 핵심어(주요어, 키워드)를 10개의 단어 이내로 기입한다. (양식 참조)

아. 기타 상세한 것은 지도교수 및 심사위원의 지침에 따른다.

3. 학위논문 제본 및 인쇄

가. 논문 제책 규격 및 인쇄 요령

- ① 제판종류 : 4·6배판(18cm x 25.5cm)
- ② 지질 : 80g 이상 모조지(구: 80파운드 이상 모조지)
- ③ 본문 인쇄 : 마스터, 워드프로세서, 전산식자 또는 활판인쇄
- ④ 표지 색 및 인쇄
 - (1)하드 : 질은 남색 또는 흑색 표지에 금박 글자로 인쇄한다. 표지의 인쇄방식 및 활자의 크기는 (별지 양식)에 따른다.
 - (2)제본 : 클로스 양장
- ⑤ 논문의 편철순서 : 학위논문 구성 요소의 순서를 따른다.
- ⑥ 규격 및 양식
 - 1) 논문표지에 졸업 횟수(박사:00회, 석사:000회) 및 지도교수명 필히 표기
 - 2) 논문제목이 영문일 경우에는 반드시 국문을 병기하여야 함.
 - 3) 학과명 및 전공명은 반드시 대학원에 등재되어 있는 명칭대로 표기
 - 4) 책본의 표지 졸업날짜는 20xx년 2. 8월로 표기

(별 표 1)

겉 표 지

(논문제목이 외국어일 경우 한글제목 반드시 병행 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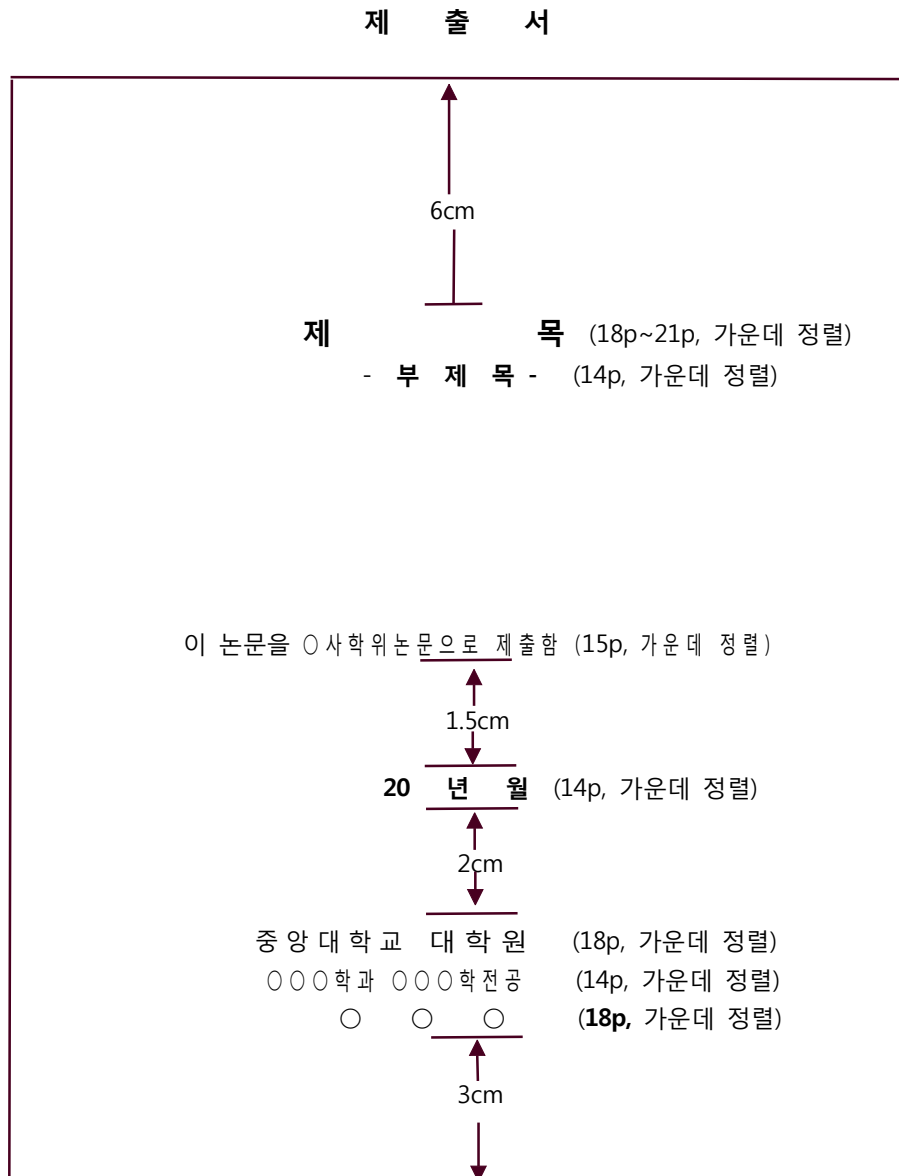
제 회	○ 사학위 논문 제 목	제 회 ○사학위 논문 (14p)	지도교수 ○○○ (14p)	제 목 (18p~21p, 가운데 정렬)	부 제 목 (14p, 가운데 정렬)	성 명	중 앙 대 학 교 대 학 원 (18p, 가운데 정렬)	○○○학과 ○○○학전공 (14p, 가운데 정렬)	○○○ (18p 가운데 정렬)	20 년 월 (가운데 정렬)	① 8월 졸업자 : 년 8월 표기 ② 2월 졸업자 : 년 2월 표기
--------	--------------------------	-------------------------------	----------------------	-----------------------------	------------------------------	--------	---	----------------------------------	---------------------	--------------------------	--

(별 표 2)

속 표 지

3cm 3cm → 제 회 ○사학위 논문 (14p) 지도교수 ○ ○ ○ (14p)		26cm
제 부 제 목 (18p~21p, 가운데 정렬) 부 제 목 (14p, 가운데 정렬)		
중 앙 대 학 교 대 학 원 (18p, 가운데 정렬) ○○○ 학 과 ○○○ 학 전 공 (14p, 가운데 정렬) ○ ○ ○ (14p, 가운데 정렬) 20 년 월		① 8월 졸업자 : 8월 표기 ② 2월 졸업자 : 2월 표기
3cm 19cm		

(별표3)



(별표4)

인 정 서

(제출 제책본 4부중 1부만 아래 심사위원 날인 또는 서명하여 제출)

4cm

○○○의 ○사학위논문으로 인정함 (21p, 가운데 정렬)

심 사 위 원 장	_____ (인)		(14p, 가운데 정렬)
심 사 위 원	_____ (인)	석사	
심 사 위 원	_____ (인)	박사	
심 사 위 원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중 앙 대 학 교 대 학 원 (18p, 가운데 정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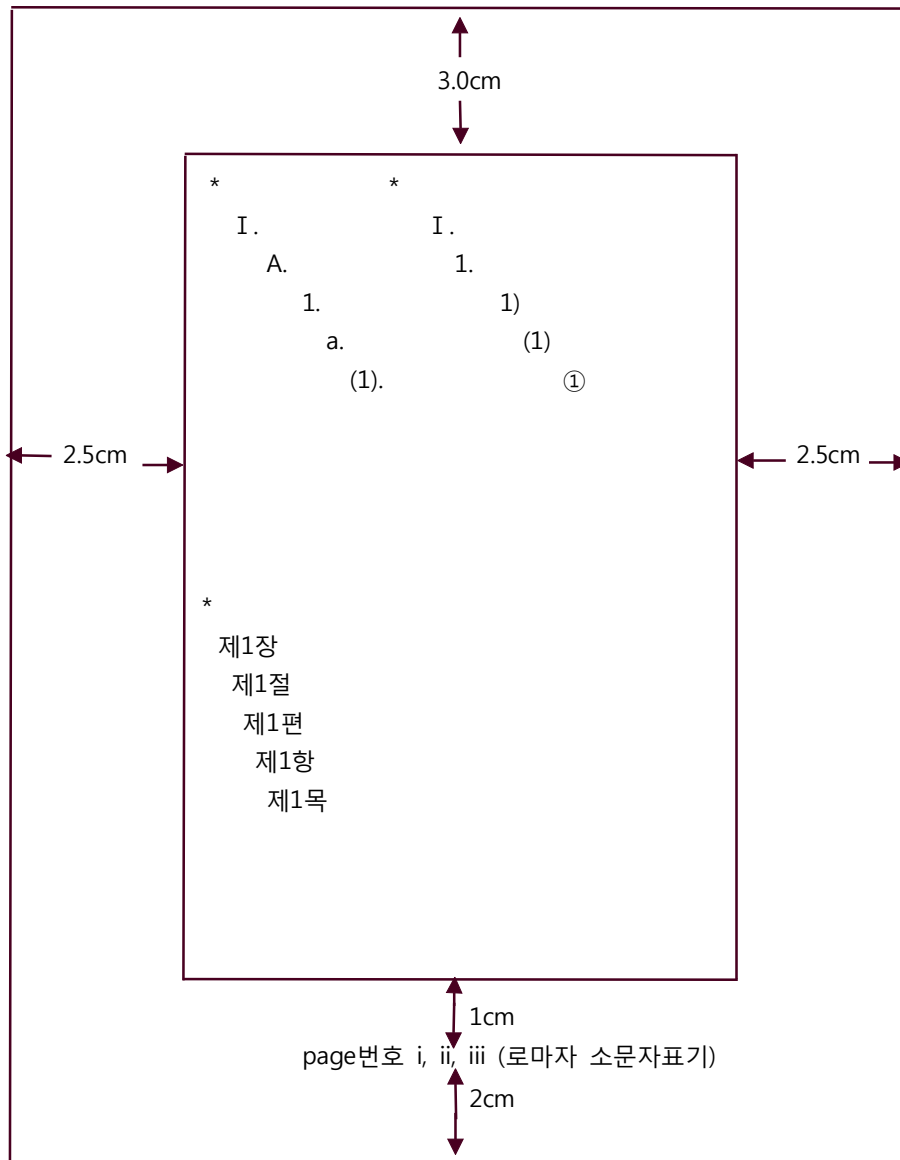
20 년 월 (14p, 가운데 정렬)

3cm

(별표5)

목 차 기 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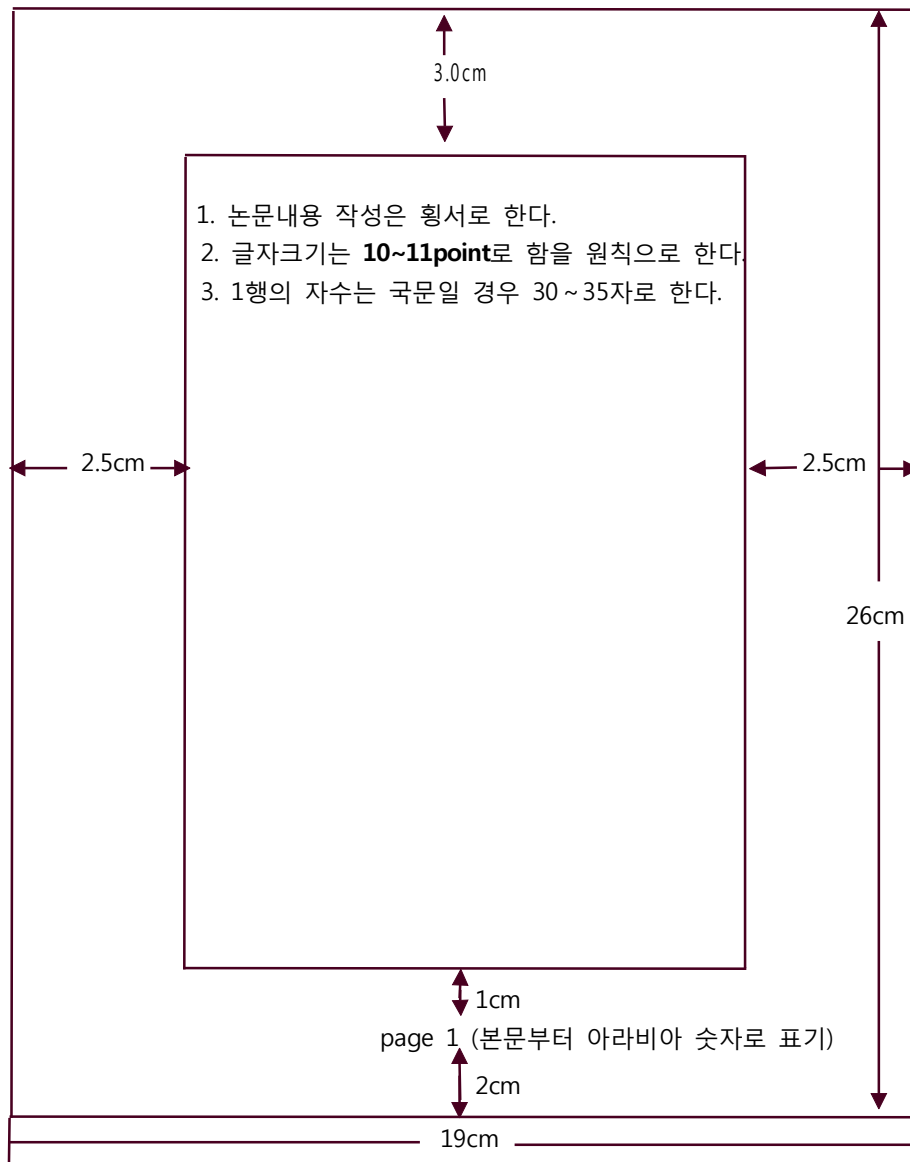
(목차기호는 아래와 같이 하며, page번호는 i, ii, iii 로마자 소문자로 표기)



(별표6)

본 문 규 격

(본문부터 page 번호를 매기며,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함)



(별 표 7)

국 문 초 록

제 목
(두 줄 띄고)

홍길동 (우측정렬)

심리학과 **임상심리학** (학과명, 전공명
우측정렬)

중앙대학교 대학원 (우측정렬)

(한 줄 띄고)

2 페이지 이내로 연구의 배경, 목적, 결과, 논의를 간결하게 요약한다.

핵심어 (또는 주요어) : (10단어 이내) (하단부 좌측정렬)

(별표8)

ABSTRACT (영문초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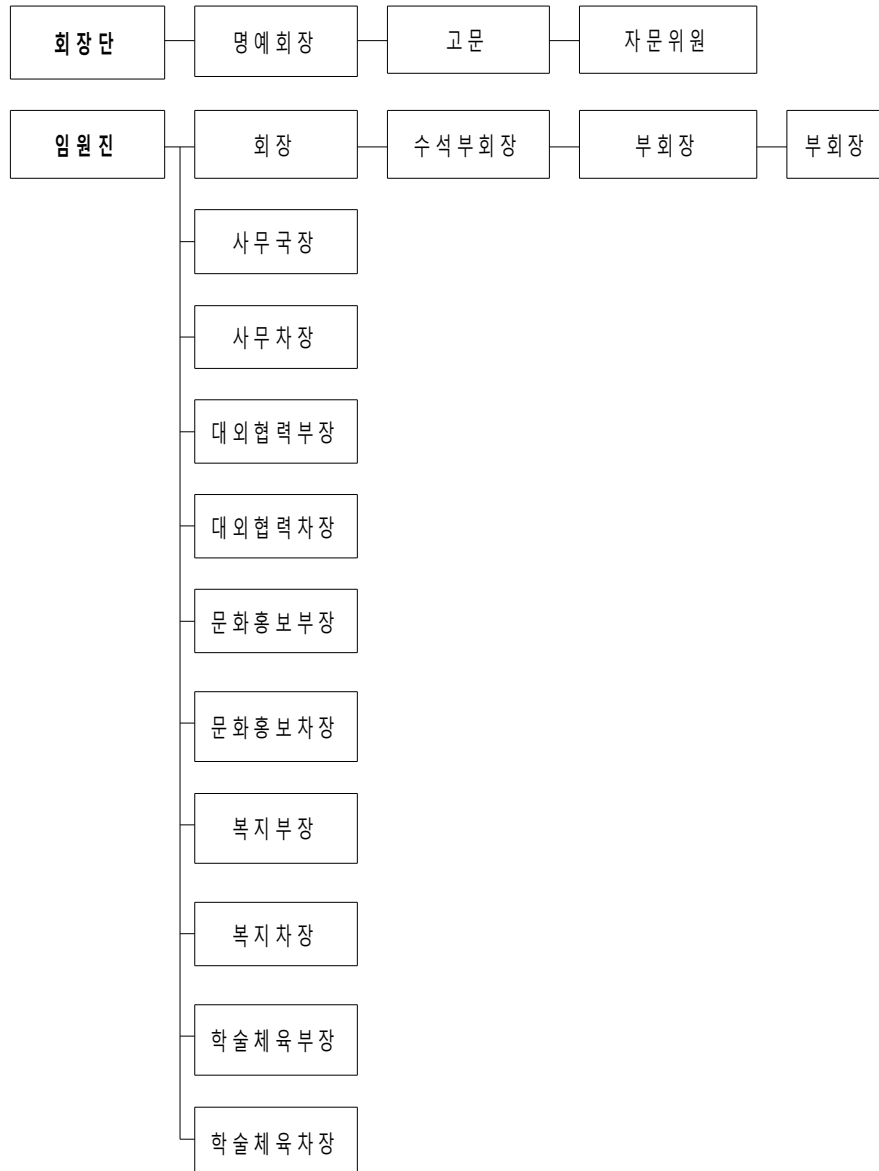
Title
(두 줄 띄고)

Name (우측정렬)
Department Major(학과명, 전공명 우측정렬)
The Graduate School (우측정렬)
Chung-Ang University (우측정렬)
(한 줄 띄고)

2 페이지 이내로 연구의 배경, 목적, 결과, 논의를 간결하게 요약한다.
반드시 영문 교정 및 감수를 받아야 한다.

Keywords: (10단어 이내) (하단부 좌측정렬)

원우회 구성



원우회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 칭) 본회는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원우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 2 조 (목 적) 본회는 회원 상호 간의 친목과 협동을 도모하고 행정대학원의 학문 전반에 관한 연구활동 진작과 본회 및 회원의 권익신장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행정대학원 내에 두며 필요할 때 별도의 연락사무실을 둘 수 있다.

제 4 조 (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 1) 세미나, 연구발표회등 학술활동
- 2) 친목도모를 위한 체육 문화 및 기타활동
- 3) 회보, 연구지 발간 등 출판활동
- 4) 본회 및 회원의 권익신장을 위한 대내외 활동
- 5) 기타 본회의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 5 조 (회 원) 본회의 회원은 본 대학원에 재학중인 자로 구성한다.

- 1)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 2) 회원은 본회가 주관하는 제반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 선거권 및 피선거권 등의 권리를 갖는다.

제 2 장 조 직

제 6 조 (임 원)

- 1) 본회는 회장 1명, 여학생 회장 1명, 각 차수별 수석 부회장 및 부회장 1명, 감사 2명, 사무국장 1명과 기획, 복지, 대외협력, 문화홍보, 학술체육 부장 및 차장의 임원을 둘 수 있다.
- 2)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가.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모든 회무를 총괄하고 총회를 비롯한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된다.
 - 나.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업무를 대행한다. 대행순서는 임원회

- 의에서 정한대로 한다. 부회장은 (수석)부회장, 부회장(차수 대표)으로 구분할 수 있다.
- 다. 회장은 임원 및 위원의 임명권을 가지며, 이들의 임무를 지명한다.
- 라. 감사는 본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하며 각종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또한, 총회 및 임원회의에서 감사결과를 보고 하여야 한다.
- 마. 사무국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본 회의 제반 업무를 진행하며 각 부서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 7조 (자문위원)

- 1) 회장은 본회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자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가. 자문위원은 4차 원우 중에서 연륜 및 경험을 고려하여 위원장 및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 나. 자문위원은 본회의 임원회의에 참석할 수 있고 본회에서 개최하는 모든 행사에 참여하여 본회와 뜻을 같이 할 수 있다.

제 8조 (명예회장)

- 1) 본 회의 명예회장은 원우회 전임회장을 임원회의에 제청에 의해 회장이 위촉할 수 있다.
- 2) 명예회장은 임원회의 참석 및 본회가 주관하는 각종행사에 참여할 수 있으며, 본회의의 발전을 꾀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 3) 명예회장의 임기는 본회 회장의 임기와 동일하다.

제 9조 (집행부) 본회는 사무국 산하에 기획부, 복지부, 대외협력부, 문화홍보부, 학술체육부로 구성한다.

제 10조 (조직 및 업무분담) 각 부서에는 부서를 관장하는 부장 및 이를 보좌하는 차장을 둘 수 있으며 그 업무는 다음과 같이 분담한다.

- 1) 사무국 : 회장을 보좌하며 본회의 예산관리를 포함한 수입 및 지출에 대한 모든 회무를 집행 관리하고 감사에게 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2) 기획부 : 본회의 사업계획 및 예산관리 업무를 지원한다.
- 3) 대외협력부 : 총회, 임원회의 개최 등 각종행사 진행을 준비하며, 회원들의 참석 및 섭외업무를 담당한다.
- 4) 복지부 : 원우들의 복지와 친목활동 및 복지욕구를 담당한다.
- 5) 문화홍보부 : 본회의와 각종행사 홍보 및 회원참석자들을 안내하며, 문화예술업무를 담당한다.
- 6) 학술체육부 : 본회의 학술지 발간 및 심포지엄 등 학술과 관련된 업무와 각종 야외행사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

제3장 회 의

제 11조 (의 결)

- 1) 각종 회의는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 의장이 결정한다.
- 2) 회원은 1인 1표의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있다.

제 12조 (총 회)

- 1) 총회는 재학중인 원우회원으로 구성한다.
- 2) 회장은 필요시 총회를 소집하되, 총회 개최 7일전 원우회 게시판에 회의일자 및 목적을 반드시 공고하여 전회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한다.
- 3) 총회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 가. 회칙의 변경
 - 나. 회장의 선출
 - 다. 사업계획, 예산의 책정 심의에 관한 사항.
 - 라. 결산승인에 관한 사항
- 4) 회무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3항의 의결사항을 임원회의에 위임할 수 있다.

제 13조 (임 원 회 의)

- 1) 본회는 총회에 갈음하는 임원회를 둘 수 있다.
- 2) 임원회의는 회장이 필요시 소집할 수 있다.
- 3) 임원회 구성은 제6조의 임원과 제7조의 고문 및 자문위원, 제8조 명예회장이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등 임원과 동등한 자격으로 임원회의의 의결권을 갖는다.
- 4) 임원회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 가. 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
 - 나. 본회의 각종행사 등 사업진행에 관한 사항
 - 다. 대내외적으로 행해지는 각종사업 및 활동
 - 라. 본회의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 마. 기타 학습 및 복지 관련 건의사항 및 회원의 권리 추구에 관련한 안건

제 14조 (자 문 회 의)

- 1) 자문위원장은 필요시 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2) 자문회의는 7조 가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하며 임원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 3) 자문회의의 구성은 고문 및 자문위원으로 구성하며, 임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
- 4) 자문위원회에서는 본회의 발전을 위한 사항을 협의한다.

제 15조 (의사록) 각종회의의 의사록은 학술체육부장이 작성하여 사무국장 및 회장의 확인을 거친 후 사무국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 4장 선 거

제 16조 (입 후보 자격) 본 대학원에 3학기 이상 등록하여 재학중인 자로서 회원 20인 이상의 서명추천을 받아 본회에 후보자 등록을 필한 자로 한다.

제 17조 (입 후보 등록) 후보 등록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하며, 후보자는 등록 마감일 오후 10시까지 소정의 서류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18조 (선거) 원우회장 선거는 학기 종강일 2주내에 실시하며, 선거일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로부터 최소한 7일 이후로 한다.

제 19조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

- 1) 본회는 선거시 별도의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 2)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출 한다.
- 3) 선거관리위원은 원우회 집행위원 중에서 5인 이내로 구성한다.
- 4) 선거관리위원회는 원우회장 선출에 관련된 제반업무를 수행하고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제반 사항은 회의를 통하여 결정, 집행한다.

제 20조 (참 관 인)

- 1) 후보자는 등록시 2명의 선거참관인을 지정한다.
- 2) 참관인은 선거의 진행, 운영 등 선거에 관련된 사항을 확인 감독한다.

제 21조 (선 출)

- 1) 당선자는 총회에서 다수 득표자로 선출한다. 동수일 경우 연장자로 한다.
- 2) 단독 후보일 경우에는 찬반투표를 실시하며, 참석회원 과반수이상의 득표로 선출한다.
- 3) 회장을 제외한 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 22조 (재 선거)

- 1) 단독 후보가 과반수이상의 득표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10인 이상으로 재선거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 2) 비상대책위원회는 종강 전일까지 재선거를 실시하여야 하며, 신임원우회장 선출과 더불어 자동 해산한다.

- 3) 재선거 방법은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 23조 (임기) 회장 및 임원의 임기는 6개월로 한다.

제 5장 재 정

제 24조 (재정) 본회의 재정수입은 다음과 같은 수입으로 충당한다.

- 1) 학기별 원우회비(1인 180,000원)
- 2) 특별회비(임원분담금)
- 3) 특별찬조금
- 4) 대학원의 보조금
- 5) 기타 수입금

제 25조 (관리 및 지출)

- 1) 본회의 재정은 회장의 책임하에 사무국장이 관리한다.
- 2) 지출은 사업계획서에 의하며 사무국장이 회장의 결재를 득한 후 집행한다. 단 상조금의 지출은 별도로 정하는 "지급규정"에 의한다.

제 26조 (결산보고)

- 1) 결산보고는 회계기간 종료일 전후 15일 이내에 사무국장이 회장의 확인 후 제반서류와 함께 감사에게 제출한다.
- 2) 결산보고서는 감사의견서와 함께 총회·임원회의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제 1조 본 회칙은 결의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1984.4.제정)

- 1차 개정: 1992.3.1
- 2차 개정: 1993.3.1
- 3차 개정: 2000.9.1
- 4차 개정: 2001.3.15
- 5차 개정: 2001.9.1
- 6차 개정: 2002.3.1
- 7차 개정: 2003.3.1
- 8차 개정: 2004.9.1
- 9차 개정: 2006.3.1

- 10차 개정: 2006.7.24 (2006.8.16 시행)
- 11차 개정: 2007.2.1 (2007.3.6 시행)
- 12차 개정: 2007.8. (2007.8.9 시행)
- 13차 개정: 2008.3.4 시행
- 14차 개정: 2008.9.16. 시행

제 2조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적 관례에 의한다.

중앙도서관 이용안내

1. 도서관 현황

가. 서울캠퍼스 중앙도서관

1949년 중앙보육학교 인수와 더불어 '중앙도서관'으로 역사를 시작한 서울캠퍼스 중앙도서관은 1956년 희락관으로 이전하였고, 1960년 2월에 현 중앙도서관 건물로 자리를 옮겨 11,570.3㎡(3,500여 평)으로 개관하여 교수와 학생들의 학문 연구 및 학습을 지원해 오고 있다.

1994년 12월에 도서관 전산화 시스템(CALIS)을 오픈하였고, 지속적으로 도서관 정보화에 힘써 2003년 2월에는 서지, 원문 정보를 비롯하여 강의·연구 정보, 인터넷 정보 등을 제공하는 통합형 디지털 도서관 시스템(CoDL)을 개발하였다.

2009년 3월에는 캠퍼스간 분산되어 있는 학술정보시스템의 통합 운영이 가능하고, 유니코드를 기반으로 한 다국어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며, 디지털 콘텐츠 연계 기능이 강화된 차세대 유비쿼터스형 전자도서관시스템(DLiⅡ)과 함께 이용자 중심의 도서관 홈페이지를 오픈하였다.

2009년 8월에 14,258.2㎡(4,320평)으로 리모델링 및 증축을 완료하여 3,400여 석의 열람석, 스터디룸, 튜터링룸, E-Lounge, CAU-Garden, CAU-Lounge, 전자신문 및 전자게시판, 전자메모보드 등 다양한 이용자 편의시설을 갖추고, 국회 전자도서관 원문 DB와 본교 소장자료 등 다양한 자료를 검색할 수 있는 인터넷 복합공간인 Information Commons도 오픈하였다. 또한 One-Stop 서비스, 찾아가는 대출서비스, 상호대차 Moving 서비스, 회원제 서비스 등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와 맞춤형 이용 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60년간 교수와 학생들의 연구 및 학습을 지원하는 중앙 학문의 요람으로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온 중앙도서관은 현재 100만여 권의 장서와 각종 비도서 자료를 보유하고 있으며, 2,500여 종의 연속간행물과 8만여 titles의 전자저널, 120여 종의 Web DB, 그리고 본교 학위논문 27,000여 권의 원문 DB, E-Book 4만여 권을 서비스하고 있다.

중앙도서관은 세계적 수준의 지식창조 및 학습역량 보유대학으로 도약하려는 'CAU 2018+' 비전 달성을 지원하고, 더불어 교수와 학생들의 학문 연구 및 학습을 지원하여 '배움과 지식의 보고'로서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나갈 것이다.

1949. 3	중앙보육학교 장서(5만여 권) 인수 개관(흑석동 173-9호)
1960. 2	신축 도서관으로 이전(참고도서실, 정기간행물실, 일반열람실로 구분) 개관
1994.12	도서관 전산화 시스템(CALIS) 설치
1998. 1	해외온라인 원문(Full-Text) DB정보 서비스 실시
1999.11	도서관 학술정보 유통시스템 구축 및 학위논문 업로딩 시스템 개통
2000.10	국회도서관과 자료공유 상호협력 체결
2002.12	일반열람실 자리배석시스템 도입
2003. 2	통합형 전자도서관시스템(CoDL) 구축 및 개통
2003. 4	중앙대-KISTI 상호협력 체제 구축 협정 체결
2003. 5	K-Protocol 분산통합검색시스템 개통
2003. 9	도서관 교외접속 프로그램 도입
2004. 3	KTF 모바일 서비스 개통
2004. 9	전자저널 통합검색 프로그램(A to Z) OPEN
2004.11	상호대차(단행본도서) 서비스 협약체결 - 중앙대, 숙명여대, 숭실대간
2005. 4	도서관 이용안내 시스템 OPEN
2005. 8	대학 학술정보화사업관련 「소장부문」1위 수상 - 한국학술정보원 원장 표창 수상
2006. 7	열람실 도난방지용 CCTV 설치
2007. 6	법학전문도서관 개관
2007. 7	한국도서관상 수상/한국도서관협회 주체
2008. 2	중앙대학교 도서관사(1기) 출간
2008.12	중앙도서관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 시작
2008.12	중앙도서관 이전 및 임시개관 (법학관 지하3층)
2009. 3	차세대 유비쿼터스형 전자도서관 오픈
2009. 9	중앙도서관 증축 및 리모델링 완료후 재개관
2010. 2	한국도서관상(단체상)수상/한국도서관협회 주체
2011. 3	도서관 모바일웹 서비스 OPEN
2012.11	독서프로그램 사업추진 - 밤샘독서행사, 저자와의 대화 행사 개최
2013.11	국회의장 공로상 수상/한국학술정보협의회주체
2014. 1	"학술정보원"으로 도서관 명칭 변경

나. 안성캠퍼스 중앙도서관

1980년에 147평, 204석의 열람석으로 역사를 시작한 안성캠퍼스 중앙도서관은 현재 연건평 5,150평에 1,700여 석의 열람석 및 40만여 권의 장서와 2,000여 종의 정기간행물 35,000여 Title의 원문(Full text)Web DB, E-Book 34,000여 권을 소장하고 있다. 1996년부터 지역사회봉사 차원에서 「열린 도서관」제도를 시행하여, 지역주민에 대한 정보봉사와 지역 기업에 대한 정보제공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1980. 3	제2캠퍼스 중앙도서관 개관 (11개학과, 학생 1,100명, 장서 4,859책/시설면적 147평, 열람석 204석)
1988. 3	도서관 명칭 변경(제2캠퍼스 도서관 → 제2캠퍼스 중앙도서관)
1988. 3	제2캠퍼스 중앙도서관 준공 개관
1995.10	도서관 정보시스템 CALIS 개통
1996. 7	열린도서관 서비스 시행
1997. 9	전자정보실 개설
2001. 1	KTF, 초고속정보통신 시설 "CAMPUS#" 도서관내 구축 설치
2003. 2	통합형 전자도서관시스템(CoDL) 구축 및 개통
2003. 5	K-Protocol 분산통합검색시스템 개통
2004. 5	도서관 교외접속 프로그램 도입
2004.11	안성지역 학술정보 네트워크 협약 체결(6개 기관)
2005. 3	학술DB 메타서치 프로그램 OPEN
2005. 4	도서관 이용안내 시스템 OPEN
2007. 3	도서 자동반납 시스템 도입
2007. 4	전자저널 통합검색 프로그램(A to Z) OPEN
2009. 3	차세대 유비쿼터스형 전자도서관 오픈
2010.10	네이버 전문정보 검색 제휴
2011. 1	도서관 조직개편 : 정보처리2팀과 정보운영2팀 → 학술정보팀(안성)으로 통합
2011. 3	도서관 모바일 웹서비스 OPEN
2013. 2	도서관 환경개선 : 개인별열람실, 미디어실, 참고자료실 리모델링

다. 서울캠퍼스 법학도서관

법학관 1층과 2층에 위치한 국내 최대 규모의 법학도서관은 전체 면적 2,699㎡으로, 총 400여 석의 열람석이 마련되어 있고, 현재 7만여 권의 법학 관련 서적이 비치되어 있다. 향후 장서는 15만권 수준까지 꾸준히 늘어날 것이며, 1층에는 대출이 가능한 단행본, 2층에는 참고도서와 정기간행물이 준비되어 있다.

1997. 9	(구)법과대학 4층 125평 규모의 법학도서관 개관
2001. 5	(구)법과대학 증축 건물 6층 90평 규모의 법학도서관으로 이전
2005. 4	법학도서관 대출/반납 시스템 가동
2005. 4	기존 법학도서관에서 법학도서관으로 분관 인준
2007. 4.29	신축 법학관으로 법학도서관 이전
2007. 5.10	법학전문도서관장 임명 및 법학정보팀 신설
2007. 6.30	연면적 2,699㎡ 규모의 법학전문도서관 개관
2009. 3	차세대 전자도서관 시스템 (PYXIS) 오픈

2. 도서관 이용

가. 개관 시간 및 휴관일

(1) 서울캠퍼스 중앙도서관

실 별	구 분	요 일	개 관 시 간			휴 관 일
			학 기	방 학	시 험 기 간	
자 료 실	참 고 자 료 실, 대 출 자 료 실	평 일	9:00-21:00	하 계 9:00-17:00	9:00-21:00	국 정 공 휴 일, 개 교 기 념 일, 임 시 휴 관 일
				동 계 9:00-17:00		
		토 요 일	9:00-15:00	9:00-15:00	9:00-17:00	
	미 디 어 실	평 일	9:00-21:00	하 계 9:00-17:00	9:00-21:00	
				동 계 9:00-17:00		
		토 요 일	09:00-15:00			

실 별	구 분		요 일	개 관 시 간			휴 관 일
				학 기	방 학	시 험 기 간	
열람실	1층	제1열람실 (노트북1 포함)		24시 간		24시 간	연 중 무 휴 개 관
		제2열람실 (노트북2 포함)		05:00-23:00			
	4층	제3열람실 제4열람실 제5열람실 노트북열람실(3)		05:00-23:00		24시 간	
		대학원열람실(1~2) 노트북열람실 (대학원전용)					

※ 제2열람실은 이용자 수에 따라 탄력적으로 24시간 운영

(2) 서울캠퍼스 법학도서관

실 별	구 분	요 일	개 관 시 간			휴 관 일
			학 기	방 학	시 험 기 간	
자 료 실	법학도서실 법학참고실	평 일	9:00-21:00	하 계 9:00-18:00	9:00-21:00	법정공휴일, 개교기념일, 임시휴관일(임시일 등)
				동 계 9:00-17:00		
		토 요 일	9:00-15:00	하 계 9:00-15:00	9:00-17:00	
				동 계 9:00-15:00		
열람실	일반열람실		05:00-23:00			연중무휴 개관

나. 시설 안내

건물명	층별	시설현황
중앙도서관 (서울캠퍼스)	7층	CAU-Lounge
	6층	CAU-Lounge
	5층	CAU-Lounge
	4층	미디어실(A.room, L.room, C.room) 일반열람실(3~5), 노트북열람실(3,4) 대학원열람실, 학위논문연구실
	3층	참고자료실(국내외정간물, 대학간행물, 학위논문, 참고도서), 주제정보서비스팀, 특수자료실, Information Commons, 복사실, Study Room(1~5), 커뮤니티룸
	2층	대출자료실, One-Stop 서비스 센터, OPAC(정보검색대), 팀플 Room(1~3), Tutoring Room, E-Lounge
	1층	제1~2열람실, 고시열람실(1~2), 노트북열람실(1~2)
	지하	학술정보원장실, 학술정보팀, 인재개발센터, 장애학생지원센터, 장애인 전용 엘리베이터, 보존서고
	외부1층	중앙도서관장실, 정보처리1팀, 전자정보팀, 종합인력개발센터, 학생생활상담센터, 장애인 전용 엘리베이터
법학도서관 (서울캠퍼스 법학관)	1층	법학도서실, 일반열람실, 스터디룸, 복사실, 법학전문도서관장실
	2층	법학참고실, 멀티미디어자료실, 영상세미나실, 일반열람실

다. 정보검색 및 도서관 홈페이지 이용

도서관 홈페이지는 Web2.0 트렌드인 “공개, 참여, 공유”의 개념을 기반으로 학술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Library2.0을 실현하고 있다. 본교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국내·외 도서, 학위논문, 학술지, 국내·외 학술DB 뿐만 아니라, Naver, Daum, YouTube, Flickr, Amazon 등과 같은 외부의 다양하고 방대한 학술 정보를 한꺼번에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도서관 위젯을 기반으로 자신의 대출성향이나 대출도서, 예약도서와 같은 개인정보를 선택적으로 등록하여 개인 취향에 따라 화면을 구성할 수 있으며, RSS 피드를 통한 다양한 웹자원 구독이 가능하다.

서울캠퍼스 중앙도서관
http://library.cau.ac.kr



서울캠퍼스 법학도서관
http://lawlibrary.cau.ac.kr



라. 자료 안내

구 분	제 공 자 료
중 앙 대 학 원 서 관	일반도서 : 학문연구에 필요한 전공도서와 교양도서를 비치하고 있으며, 모든 이용자가 자료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열람과 대출·반납을 할 수 있다. 참고도서 : 사전류, 백과사전류, 주제별사전류, 연감류, 편람류, 도감류, 사료, 법규, 인명사전류, 서지·색인·초록집 등의 참고도서를 비치하고 있다. 정기간행물 : 국내·외 학술잡지, 교양잡지, 대학 및 연구단체의 논문집, 연구보고서, 팜플렛, 사보, 신문 등을 비치하고 있다 학위논문 : 본 대학의 석·박사 학위논문을 소장하고 있으며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원문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국회 전자도서관(국내 석·박사 학위논문 및 기사색인)을 통해 타 대학도서관의 학위논문 원문을 이용할 수 있다. 전자자료 : Web DB, 전자저널, E-book 서비스를 통해 국내·외 학회지 및 학술저널, 전자책, 통계자료 등의 원문 및 서지·초록을 웹상에서 이용할 수 있다. 미디어자료 : 교양, 영화, 음악, 학술과 관련된 자료를 CD, DVD, Video Tape와 같은 멀티미디어 형태로 이용할 수 있다.
법 학 도 서관	법학자료 : 법학관련 국내외 도서, 정기간행물, 비도서, Web DB등을 이용할 수 있다.

마. 자료 대출 및 반납

(1) 대출권수 및 대출/반납 기간

구 분			대출권수	대출기간	연 장	
					회수	기간
학 부 생			7책	14일	1회	7일
대 학 원 생 / 연 구 등 록 생			15책	30일	1회	15일
휴 학 생			5책	10일	1회	5일
시 간 강 사, 조 교			15책	30일	1회	15일
직 원			20책	60일	1회	30일
교 원			30책	90일	1회	45일
도서관장이 특별히 허락한 자	수료생	학부	5책	10일	1회	5일
		대학원	7책	14일	1회	7일
	교육원생		3책	10일	불가	불가

(2) 대출 방법

- ① 도서 대출은 교직원 신분증 및 학생증(모바일 학생증 포함)으로만 가능하다.
- ② 도서 대출은 대출자료실의 “일반도서 즉, 청구기호 위에 별치기호(R, P, T)가 없는 도서”만 가능하며, 이용자가 서가 상에서 직접 도서를 선택하여 신분증과 함께 대출대에 제시, 대출 절차를 밟으면 된다. (대출시 종합정보시스템 비밀번호 입력)
- ③ 대출한 도서는 1회에 한하여 대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반납 3일 전부터 연장 가능하다. (연장할 도서가 예약 중일 경우 연장 불가)
- ④ 미디어실 자료는 관내대출을 통해 미디어실안에서 이용이 가능하며, 교강사의 수업, 연구 등의 목적에 한해 관외대출을 허용하고 있다.

(3) 반납 방법

- ① 도서 반납은 대출기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 ② 대출한 도서를 대출기간 내에 반납하지 않을 경우 도서관 규정에 의거하여 1일 1권당 100원의 연체료가 부과된다.
- ③ 대출한 도서를 분실했을 경우 즉시 도서관에 통보하지 않으면 연체료가 누적되니 통보 후 조치를 받아야 한다.
- ④ 대출자료실 폐관 이후 1층 로비 무인도서반납기를 통하여 반납이 가능하다.
(단, 예약 및 연체된 도서, CD와 함께 대출된 도서는 반납 불가)

바. 기타 서비스

국회 전자도서관 원문 DB 검색 서비스	국회도서관이 구축한 학위논문, 정부 간행물, 학술지, 법령자료 등의 원문 자료를 국회도서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이용할 수 있도록 교내 지정된 PC에서 서비스 제공
원문복사 서비스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자료가 도서관에 없을 경우, 국내/외 다른 기관에 해당 자료를 복사 의뢰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로,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하거나, 해당 SITE(KERIS, NDSL 등)에 접속하여 신청 가능 (유료 서비스)
상호대차 서비스	이용자(대학원생 및 교수)가 필요로 하는 본교 미소장 단행본이 상호대차 협정대학(가톨릭대학교, 건국대학교, 동국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숭실대학교, 아주대학교, 인하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에 소장되어 있을 경우 상호대차 서비스 제공
외부기관 도서관 이용의뢰 서비스	본 도서관에 필요로 하는 자료가 없거나 기타 목적으로 타대학 및 기관의 도서관을 방문하고자 할 경우, 도서관 홈페이지 로그인 후 「외부기관이용의뢰서」를 출력하여 외부기관 도서관 이용 가능
전자자료 외부 이용 서비스	Web DB, E-Journal 등 구독 전자정보원들을 자택, 사무실 등 교외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도서관 이용안내 서비스	도서관 구독자원 검색 및 활용능력향상, 도서관 서비스 홍보 등의 목적으로 수준별 도서관 이용교육(대학원생 및 학부생, 외국인 유학생) 및 학과별 이용교육, Web DB 교육을 연중 수시로 실시. 정보검색과 활용, 도서관 이용안내, 원문복사서비스, 희망도서 신청 등 도서관 제공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제공

3. 도서관 서비스

가. 교수 추천도서 신청 서비스

- 1) 개요 : 도서관의 기능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강의 및 연구에 필요한 양질의 자료를 추천 받아 구입하는 서비스
- 2) 신청금액 : 매년 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책정된 교수 1인당 연간 추천도서비 (2009학년도 : 전임강사 이상 1인당 1,000,000원 한도 이내)
- 3) 신청방법
 - ① 도서 신청전 도서관 홈페이지 '소장자료 통합검색'을 이용하여 도서의 소장 여부 파악
 - ▶ 서울캠퍼스 중앙도서관 : <http://library.cau.ac.kr>

- ▶ 안성캠퍼스 중앙도서관 : <http://alibrary.cau.ac.kr>
- ② 도서관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교수 본인 ID, PW) → '도서관 서비스'내 '희망 도서신청' 접속 → 도서 신청
- ③ 도서 신청시 서명, 저자, 출판사, 출판년도, ISBN 등을 정확히 입력 (정확한 도서 정보는 Amazon등 인터넷 서점 참조하되 해외도서 신청시 정확한 주문을 위하여 반드시 ISBN 입력)
- 4) 유의사항
 - ① 반드시 본인 ID를 이용한 온라인 신청만 가능(문서 추천 불가)
 - ※ 본인 ID로 신청해야 도서 열람비치시 SMS 및 메일로 도착 알림 서비스 가능
 - ② 연간 수시로 신청 가능
 - ③ 교수 1인당 연간 추천도서비 한도를 준수해야 함.

나. 찾아가는 대출서비스

- 1) 개요 : 교원이 교수·연구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도서관에 신청하면, 신청 자료를 도서관에서 신청 교원에게 직접 배송해 주는 서비스
- 2) 서비스 대상 : 서울캠퍼스/안성캠퍼스 전임교원 및 직원
- 3) 서비스 자료 : 도서관에 소장중인 대출이 가능한 단행본 자료
- 4) 시행 도서관 : 서울캠퍼스 중앙도서관, 안성캠퍼스 중앙도서관, 법학도서관
- 5) 서비스 방법
 - ① 신청자가 도서관 홈페이지에 로그인 한 후 원하는 자료를 검색
 - ② 소장정보 - 부가기능의 '찾아가는 대출서비스' 아이콘 클릭
 - ③ 근로학생이 신청 자료를 배송함
 - ④ 신청자는 대출 자료 확인 후, 신청서에 사인함
- 6) 문의
 - ▶ 서울캠퍼스 중앙도서관 2층 대출자료실 (☎ 02-820-6196)
 - ▶ 서울캠퍼스 법학도서관 1층 법학도서실 (☎ 02-820-6563)
 - ▶ 안성캠퍼스 중앙도서관 3층 대출자료실 (☎ 031-670-3460)

다. 상호대차(원문복사) Moving(배달) 서비스

- 1) 목적 : 교원의 교수·연구 활동에 필요한 학술정보 자료 상호대차(원문복사) 서비스를 보다 신속하게 제공하고자 함
- 2) 서비스 대상 : 서울캠퍼스/안성캠퍼스 전임교원
- 3) 서비스 자료 : 교내에 소장되어 있지 않은 협약기관 자료(NDSL, KERIS, KISTI)

- 4) 시행 도서관 : 서울캠퍼스 중앙도서관, 안성캠퍼스 중앙도서관
- 5) 운영방법
 - ① 자료가 도착하면 담당자가 사전에 신청자에게 전화하여 확인 후 근로학생을 통해 배송하고 전달 확인서를 받아옴
 - ② 신청자료가 유료인 경우는 전화로 공지한 후 배송
 - ③ 신청자료의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그 사유를 유선 혹은 이메일로 즉시 통보
 - ④ 신청자료의 수령은 신청자 본인 혹은 대리(조교) 수령 가능
- 6) 문의
 - ▶ 서울캠퍼스 중앙도서관 3층 참고자료실 (☎ 02-820-6191)
 - ▶ 안성캠퍼스 중앙도서관 2층 참고자료실 (☎ 031-670-3453)

라. 국회도서관 원문DB 검색 서비스

- 1) 개요 : 국회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서지정보 및 다양한 형태의 원문자료를 교내 지정된 PC에서 웹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 2) 제공분야 : 국내 석·박사 학위논문의 목록 및 원문, 정부간행물, 학술지, 법령자료 등
- 3) DB 검색장소
 - ▶ 서울캠퍼스 : 중앙도서관(Information Commons), 대학원전산실, 법학도서관의 지정된 PC
 - ▶ 안성캠퍼스 : 중앙도서관 2층 전자정보실, 정보검색실, 참고자료실의 지정된 PC

마. 도서관 이용 교육 서비스

- 1) 개요 : 도서관에서는 매월 이용자 교육을 마련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받아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2) 대상 : 신입생, 재학생, 대학원생, 교수, 직원
- 3) 기간 : 매월 및 수시로 시행
- 4) 장소 : 중앙도서관 미디어실 L.Room(서울캠퍼스) 혹은 각 단과대학
- 5) 교육내용
 - ▶ 도서관 소장자료 검색방법 및 검색시스템 활용방법
 - ▶ 이용자서비스 안내 : 원문복사서비스, 희망도서신청, 상호대차신청
 - ▶ 홈페이지 활용방법
 - ▶ Web DB, 전자저널 이용방법
- 6) 문의

- ▶ 서울캠퍼스 중앙도서관 3층 참고자료실 (☎ 02-820-6194)
- ▶ 안성캠퍼스 중앙도서관 2층 참고자료실 (☎ 031-670-3453)

바. 전자자료 검색 서비스

1) 개요 : 중앙도서관에서 서비스 하고 있는 8만여 종의 전자저널과 120여 종의 Web DB를 검색할 수 있도록 메타검색과 전자저널 검색서비스 제공 (교외접속 서비스를 통해 교외에서도 이용 가능)

2) 내용

- ▶ 메타검색 : 여러 데이터베이스를 대상으로 자료를 검색하는 서비스
- ▶ 전자저널검색
 - 'Find e-journal' 메뉴를 통해 구독저널 검색
 - PubMed, 구글, 네이버, Web DB 등에서 자료 검색 후, 중앙도서관 구독자원일 경우 원문자료로 연결됨
- ▶ 교외접속 서비스 : 교외에서 전자자료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도서관 홈페이지 로그인 후 전자자료 검색 메뉴의 '교외접속하기'를 클릭하여 전자자료 이용(단, 일부 DB는 교외접속이 제한됨)

※ Windows XP, Vista, Firefox 등 운영환경에 따라 설정방법이 다르므로 도서관 홈페이지의 '교외 접속 안내' 참조

사. Web-DB 안내

(계약기간 만료 및 새로운 Contents 구독으로 인한 추가/삭제가 있을 수 있음)

국외 전자저널 DB	
ABI/INFORM	경제, 경영 관련 4,300여 건의 저널을 비롯하여 Wall Street Journal, New York Times, Financial Times 등 주요 신문의 최신원문 제공
ACM Portal	컴퓨터공학협회(Association for Computing Machinery)에서 제공하는 컴퓨터공학분야 전자저널과 프로시딩 등의 원문제공
ACS(American Chemical Society)*	미국화학학회에서 제공하는 화학 및 관련분야저널 원문 34종 제공
AIP/APS*	미국물리학회(American Institute of Physics & American Physical Society)에서 제공하는 22종의 저널과 550건의 프로시딩 원문 제공
AMS(American Mathematical Society)*	수학분야 전자저널 8종 제공
ArtFull text	예술, 건축, 패션, 사진 등 예체능 분야의 원문 제공

ASCE(American Society of Civil Engineering)*	토목, 환경공학관련 기술자료 및 연구정보 30여종 제공
ASM(American Society for Microbiology)	미생물학, 약학 분야 11종 저널 제공
ASP(Academic Search Premier)	전학문분야에 대한 학술저널의 원문제공
BeckOnline	독일법률, 판례 등 법률자료와 Fach-News의 원문 제공
BioOne	Bioscience분야의 저널 제공
BSP(Business Source Premier)	비즈니스 전 분야의 해외 학술저널 원문제공, 국가보고서, 산업보고서, 시장보고서, 기업정보 등 제공
Cell press**	Cell Press Journal 7종 (Science Direct 플랫폼에서 제공)
D1-law*	제일법규법률정보데이터베이스로 1903년부터 축적한 일본법률정보DB
DDOD(Digital Dissertations On Demand)	북미 및 일부 유럽지역 상위권 대학의 1999년이후 박사 학위논문 원문 제공
EJS (EBSCO electronic Journal Service)	EBSCO Publishing을 통해 개별 구독하는 전자저널 제공 (서울안성캠퍼스별 구독저널리스트 다름)
Emerald	Emerald의 비즈니스 및 경영, 정보과학, 공학 분야 저널 원문 제공
HeinOnline*	1,300여 종의 영미법률 저널 원문, Federal Register 및 법률 자료 등 제공
IEL(IEEE/IET Electronic Library)	IEEE가 저작권을 가진 전기, 전자, 정보, 기술 분야의 저널, 프로시딩, IEEE Active Standards 등의 원문제공
IIPA	행위예술분야 저널의 서지정보와 원문제공
IoP(Institute of Physics)*	물리분야의 최신 연구동향 및 저널 원문 제공
J-Stage	일본 과학기술 관련 저널 247종 제공 (무료링크)
JSTOR	철학, 사회과학, 비즈니스분야 주요핵심저널의 Backissues(창간호-최근3~5년전)원문 제공
Lecture Notes in Computer Science*	Computer Science 관련 Proceedings 정보와 비공식적으로 발표되는 수준 높은 강의내용 제공
Lextenso*	프랑스 법률 자료 제공, 13개의 법률 리뷰와 판례법으로 구성되어 78,400여개에 달하는 잡지와 신문에 실린 정책과 판결기록 검색 가능

LION	영문학 분야 Web DB로 350,000편에 달하는 시, 소설, 희곡, 에세이(AD 600년~현재)의 전문(Full-text)과 영문학 관련 비평, 전기, 작가정보 등을 제공
MIT press**	MITpress에서 출판된 전학문분야 저널의 원문을 30여종제공
Nature*	과학, 생물학, 신경과학 분야 등 Nature publishing의 저널 9종 제공
Newspaper Source Plus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각 나라에서 발행되는 다양한 종류의 신문, TV 뉴스, 라디오 뉴스 기사 등의 원문을 제공하는 신문 데이터베이스
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University Press에서 출판된 학문 전주제분야의 저널 130여종 제공
PAO(Periodicals Archive Online)	인문사회과학분야의 400여종저널의 창간호부터 원문을 제공하는 아카이브DB
국외 전자저널 DB	
Project MUSE	순수예술, 문화, 언어, 문학, 역사, 사회과학 분야 저널 389종의 원문제공
ProQuest Nursing & Allied Health Source	MEDLINE에 있는 저널들 중 간호학 및 임상학 관련 분야에 대한 100여종의 원문을 포함한 900여종 저널 제공
ProQuest Medical Library	Proquest에서 제공하는 의학데이터베이스로 800여종의 저널원문제공
PQDT(ProQuest Dissertation & Theses)	북미, 유럽, 아시아 일부 지역 1,440여 대학의 석박사 학위논문 서지초록 및 원문 제공 (유료임, 일부논문은 무료)
PsycArticles*	심리학 분야 저널 90여종의 원문 제공
Regional Business News	미국지역의 75종 저널과 뉴스 등을 제공
RSC(Royal Society of Chemistry)	유럽의 화학학회에서 제공하는 30종 저널 제공
Sage*	경영, 경제, 교육, 역사, 의학, 사회과학, 기술 분야 저널의 원문 제공
Science	AAAS에서 출판하는 Science 저널의 온라인판(ScienceOnline)과 ScienceNow (뉴스레터)이용가능
ScienceDirect	Elsevier Science에서 제공하는 저널 1900여종 제공 (1995년 이후만 이용가능)
SocIndex with Fulltext	사회학 및 사회복지학 전반에 관한 연구정보원
SourceOECD*	Periodicals 20종, Statistics 22종제공
SPORTDiscus with fulltext	스포츠 관련분야 데이터베이스로 460 여종의 저널제공

Springer	1,500여 저널의 원문을 창간호부터 현재까지 제공
Springer KLOS*	ISI에 등재되고 영어로 출판되는 국내 메이저 학회의 17종 저널 제공
Swisslex	스위스 법률 자료와 연방과 주(州) 판례, 40종 저널의 원문 제공
Taylor and Francis*	전주제분야에 대한 1,000종 이상의 학술저널 제공
WestLaw	WestGroup의 법률 및 비즈니스정보 데이터베이스
WileyInterscience(Blackwell 포함)	Wiley, Blackwell 등의 출판사에서 전분야 저널의 원문 제공
WSPC(World Scientific Publishing Company)*	공학, 수학, 컴퓨터공학 등의 분야 26종의 저널 제공
국외 서지초록 DB	
Agricola	농업관련분야에 대한 서지초록정보 제공
BIOSIS-Previews	생명공학분야 서지초록정보 제공
Books In Print	최신 서지정보(6개월 이후에 출판될 출판물 정보), 단행본 및 절판본 정보, 출판사 정보, 단행본 서평, 작가정보 등 제공
Britannica Online	영어판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을 온라인으로 이용
CCC(Current Contents Connect)	저널 및 단행본 수록 자료, 학술 웹사이트 등의 서지정보 제공
CINAHL	간호학, 보건학, 의학 분야의 학술지, 도서, 학위논문 등에 대한 서지정보 제공
COS(Community of Scholars)	전문 연구자 정보 DB로, 전 주제 분야에 걸친 연구자 정보와 연구 공동체 정보를 수록
CSA ANTE(Abstracts in New Technologies and Engineering)	공학분야 신기술 관련 자료에 대한 서지정보 제공
CSA Civil Engineering Abstracts	토목공학분야 문헌에 대한 색인 및 초록정보 제공
CSA Earthquake Engineering Abstracts	California, Berkeley 대학교와 National Information Service for Earthquake Engineering 에서 제공하는 지진관련 기계학과 지진위험 완화에 관한 연구정보의 서지초록 제공
CSA Environmental Engineering Abstracts	환경공학분야 서지초록 정보 제공

CSA Mechanical & Transportation Engineering Abstracts	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의 운송학 및 기계이론, 공학교육, 동역학 등 기계학 분야의 색인초록 정보 제공
EconLit	미국경제학회(AEA)에서 제공하는 서지초록 DB
ERIC	교육학분야 서지 DB, 1966년 이후 ERIC 전체 색인, 초록 정보 검색 가능하며 1993년부터 현재까지의 ERIC 문헌 중 약 85%의 PDF 원문제공
국외 서지초록 DB	
ICPSR	ICPSR(The Inter-University Consortium for Political and Social Research)은 미국최대사회과학데이터보관소, 세계각국에서 수집된 여론조사자료 및 통계자료의 원자료, 설문지, 보고서 등을 제공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에서 출판하는 IFS(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를 온라인상에서 제공
JCR Web	SCIE, SSCI에 등재된 저널들을 대상으로 Impact Factor 및 저널 분석정보 제공
LISA	문헌정보학 및 관련 분야 자료에 대한 서지정보 제공
LISTA	문헌정보학 및 관련분야 저널 및 관련자료에 대한 서지정보제공
MathSciNet	미국수학회(American Mathematical Society)에서 발행하는 Mathematical Review 및 Current Mathematical Publication의 1940년부터 현재까지 자료에 대한 서지초록 제공
MEDLINE (EBSCOhost)	NLM(미국의학도서관협회)에서 제공하는 서지DB, 엠스코 검색사이트를 통해 자관구독자료의 원문제공
MLA International Bibliography	현대 언어, 문학, 민속학, 언어학과 관련 문헌에 대한 서지 제공
Molecular Conceptor*	의약화학, 신약개발, 분자설계, cheminformatics 분야의 기본 지식 및 개념에서 응용까지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든 computer-based courseware (Window전용)
NAXOS Music Library	클래식음악 온라인서비스로 클래식음악, 재즈, 세계민속음악과 중국음악 제공
Naxos Spokenword Library	소설, 연극, 시, 세계문학, 어린이고전 등의 오디오북서비스
OED(Oxford English Dictionary)	Oxford english dictionary를 웹상에서 이용 가능
Pathway Studio**	연구자가 pathway, gene regulation network, protein interaction maps 같은 실험결과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pathway 분석 tool

PILOTS*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및 외상 관련 정신건강에 대한 자료의 색인, 초록제공
PQDT UK & Irland	영국 및 아일랜드 지역(England, Ireland, Northern Ireland, Scotland, United Kingdom, Wales)의 900여 대학교에서 출판된 석박사 논문의 서지초록 제공
PubMed	NLM(미국의학도서관협회)의 서지DB, 의학전분야 및 관련 분야의 정보를 제공 (중앙도서관 구독논문의 원문연결)
SciFinder*	CAS에서 제공하는 화학 및 관련분야 문헌의 서지초록, 특허정보 등 서비스 (4 user)
Scopus*	학문 전분야를 포함하는 인용색인DB, 학술정보의 서지검색 및 인용색인, 분석기능 제공
Ulrich's Periodicals Directory	연속간행물, 연감 및 학위논문에 관한 서지정보 수록
Web of Science	SCIE, SSCI, A&HCI에 등재된 논문의 서지정보, 저자정보, 초록 및 인용정보를 웹으로 제공
중국기본고적고*	중국의 고문헌의 원문이용
국내 학회지 및 매거진 DB	
과학기술학회마을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에서 제공하는 과학기술 분야 900여종 저널 서비스
교보문고 스콜라(교보문고)	국내 학회 및 학술 단체에서 발행하는 390종 학회지 및 학술지, 연구기관지의 원문 제공
모아진 전자잡지 서비스	시사, 경제, 외국어, 문학 등 시사상식과 교양, 취미를 위한 194종의 잡지(Magazine) 원문 제공
DBpia(누리미디어)	국내 학회 및 학술 단체에서 발행하는 1,000여종 학회지 및 학술지, 연구기관지의 원문 제공
E-article(학술정보원)	국내 학회 및 학술 단체에서 발행하는 500여종 학회지 및 학술지, 연구기관지의 원문 제공
KISS (한국학술정보)	국내 학회 및 학술 단체에서 발행하는 1,300여종 학회지 및 학술지, 연구기관지의 원문 제공
국내 웹 DB	
경성일보	경성일보 기사와 지면의 PDF 제공 서비스
대한민국 영문법령*	대한민국의 현행법령중 주요한 헌법 · 법률 · 시행령 등 약 800건의 자료를 서비스하는 국내 유일의 영문법령DB서비스

동아일보 아카이브 서비스	동아일보의 모든 기사와 지면의 PDF 제공 서비스(창간호 ~ 현재)
브리태니커 온라인(한글)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을 Web에서 이용
복다이제스트(도서요약전 자도서관)*	국내 신간도서의 핵심내용을 요약한 도서요약본, 오디오북 등 제공
삼일세무회계	세무/회계 전문 포털사이트로 삼일회계법인에서 제공
상장협 Databse	주권상장법인, 코스닥상장법인(외부감사대상법인은 불포함)이 제출하는 사업보고서내용을 정리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기업정보제공시스템
조선일보 아카이브 서비스	조선일보의 모든 기사와 지면의 PDF 제공 서비스(창간호 ~ 현재)
한국무역협회	중합무역정보 및 무역실무에 필요한 자료 제공
한국문화사대계/한국현대 문화사대계	한국사 전분야를 조지훈, 김원룡, 조기준 등 한국의 석학 140여명이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정리한 분류사적 연구의 집대성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한국관련 모든 주제를 심도 있게 다루어 수록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을 Web에서 이용가능
DataGuiede Pro	주식, 재무, 채권, 경제 등의 자료들과 투자모델을 DB화하여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투자분석 시스템
LeCS - 로앤비(LAWnB)	판례, 최신 법령, 생활법률, 기업법무에서 e-Book 형식의 주석서, 일본 판례 및 법령 등 법률분야 정보제공
KIS-Line*	기업금융 관련 콘텐츠, 뉴스, 인물, 산업분석리포트, 신용등급 등의 조회 및 개별자료추출
KIS-Value*	전용프로그램을 통해 상장, 코스닥, 외감기업의 재무 및 주식관련 Excel 기반 데이터 일괄 추출가능
Korea A2Z	한국학 분야 다양한 자료 제공, 삼국사기, 고려사, 대전회통, 경국대전, 사마방목, 사서, 삼경, 소학, 창작과 비평, 사상계, 씨알의 소리, 기타 한국학 분야 (그림, 춤, 부적, 한의학, 식물, 조류, 민물고기 등)
KOSSDA(한국사회과학자료원)	한국과 한국관련 사회과학 분야에 대한 양적, 질적, 문헌자료를 제공하며 사회과학분야 RowData 온라인 이용 가능
KRpia	한국학 DB, 한국학 관련 사전 시리즈, 한국학 도감시리즈, 한국 문학시리즈, 한국학 자료집 시리즈, 한국학 고전시리즈, 한의학 시리즈, 동양 고전시리즈 등으로 구성
KS 규격 웹 서비스	국내 산업 전 분야의 제품 및 시험제작 방법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16개 부문, 1만 여종, 15만여쪽에 이르는 방대한 내용 포함

KSDC(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	사회과학 연구에 필수적인 국내외의 각종 통계 자료들과 유용한 정보 제공
NSI Vision	국가경영전략연구원(NSI)이 매주 주최하는 "수요정책포럼"강연내용 중 우수한 콘텐츠를 선별하여 제공하는 디지털동영상콘텐츠
WIPS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독일, 영국, 프랑스, 스위스 등의 공개등록특허, 실용 등을 검색가능
E-Book(국외)	
OCLCnetLibrary	전 주제분야를 대상으로 약 21,720종 45,300권의 해외학술 전자책 제공 (다운로드나 온라인상 대출이 안되며, 웹상에서 열람 및 부분출력만 가능)
SafariTechBooksOnline서비스	IT 분야 최신 서적들로 구성
E-Book(국내)	
중앙대 E-BOOK 도서관	문학, 에세이, 학술, 어학 등 국내 단행본 7,200여 종 제공 (우리전자책)
누리 E-Library	학문 전분야 단행본 2,500여종 제공 (누리미디어)
한국학술정보E-BOOK	학문 전분야 단행본 3,500여종 제공 (한국학술정보)
오디오북**	디지털오디오 콘텐츠, PC, MP3, PMP로 다운받아 이용가능
기타	
RefWorks	개인의 연구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웹기반 서지관리툴
	(*서울캠만 서비스, **안성캠만 서비스)

행정부서 및 교내복지시설 이용안내

부서	위치	상대	주요서비스	연락처
구내서점	102관 지하1층	중앙대학교 구내서점	각종 교재 및 서적	820-6345 826-0779
문구점	102관 지하1층	모닝글로리	문구	820-6646 3280-2400
기념품	102관 지하1층	LOGO SHOP	기념품	820-6645 812-8222
복사	102관 지하1층	래진출판사	복사, 제본 등	820-6644
여행사	102관 지하1층	일동여행사	여행알선	820-6458 827-0984~6
편의점	102관 지하1층	코리아세븐	편의점	812-4637
커피전문점	102관 지하1층	컴오브커피	식품종합소매(커피)	820-6647 816-6771
음식점	102관 지하1층	한솔도시락	도시락	820-6648 812-2005
음식점	102관 지하1층	맥도날드	각종 스낵, 음료수	820-6651 070-7017-1417
은행	102관 지하1층	우리은행	은행	820-6457 817-6444
제과점	102관 지하1층	뚜레쥬르	제과점	822-2524
음식점	102관 11층	UNIVERSITY CLUB	음식점	815-0052~4
커피전문점	106관 2층	그라찌에	식품종합소매(커피)	824-7440
복사	203관 2층 207관 3층	일광사무기상사	복사, 제본 등	814-6515 812-3931
편의점	204관 5~7층	코리아세븐	편의점	811-7747
식당	205관 1층	솔기마루	식사	820-6350
식당	205관 지하1층	참마루	식사	820-6342
식당	205관 1층	카우버거	각종 스낵, 음료수	820-6343
구두수선소	205관 옥외	구두수선소	구두	820-6448

우편	206관 1층	중앙대학교 우편취급국	우편업무	820-6344 812-3455
편의점	206관 1층	코리아세븐	편의점	820-6347
복사	206관 1층	학생문화관복사실	복사,제본등	825-7637
음식점	206관 1층	맛드림푸드	과일	820-6439
휴대폰 옹품	206관 1층	자이온소프트	휴대폰,심카드	3487-8245 802-6453
안경점	206관 1층	중대 교내안경점	안경	820-6440 817-1194
여행사	206관 1층	해피카우	여행	820-6445
스포츠센터	206관 1층	스포츠기념품센터	각종 스포츠의류,잡화	820-6346 813-5656
커피전문점	301관 3층	카페드림	커피	820-6460 3280-6452
복사	302관 1층	대학원복사실	복사, 제본 등	822-4074 010-2995-4074
복사	204관 3층 303 1층	청산시스템	복사, 제본 등	010-2587-3573 010-6325-6398
커피전문점	303관 6층	코리아나호텔캐터링 지점 법학관점	커피, 음료	815-0058 820-6462
식당	303관 지하1층	법학관식당	식사	820-6335
식당	308관 지하1층	블루미르(기숙사식당)	식사	821-0983 820-7043
커피점	308관 지하1층	웰스토리카페	식품종합소매(커피)	811-1711
편의점	308관 지하1층	CU편의점	편의점	812-4262
꽃방	206관 1층	파머스플라워	꽃다발, 화학, 식물	02-3280-7188 02-820-6451

■ 중앙대학교 배치도(서울캠퍼스) ■

중앙대학교 캠퍼스투어 | 서울캠퍼스

101 영신관	102 약학대학 및 R&D센터	103 파이퍼홀	104 수림과학관
105 제1의학관	106 제2의학관	107 교양학관	201 분관
202 전산정보관	203 서라벌홀	204 중앙도서관	205 학생회관
206 학생문화관	207 북스트림홀	208 제2공학관	209 창업보육관
210 다목적관	301 중앙문화예술관	302 대학원	303 법학관
304 미디어공연영상관	305 교수연구동 및 체육관	306 구 남자기숙사	307 구 여자기숙사
308 블루미르홀	309 제2기숙사	A 중앙대학교병원 중앙관	A-1 중앙대학교병원 다정관
A-2 중앙대학교병원 주차타워	B 송당관	C 부속중학교	D 부속초등학교
E 공연영상예술원	F 부속유치원	G 청룡연못	H 대운동장
I 자이언트구장	J 중앙미루	K 중앙광장	L 의열탑
M 부속고등학교			

[캠퍼스투어 인쇄하기](#)
[취소하기](#)

COPYRIGHT(C)2011 CHUNG-ANG UNIVERSITY ALL RIGHTS RESERVED.

* 행정실 위치 : 303동(법학관) 7층

* 문의처 : 02-820-5066~67